

월간  
**재정포럼 9**  
월호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 2010년 9월호 제171호

- 현안분석** •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원 분석 / 고 선
- 중고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식에 대한 소고/ 박명호
  - 해외부동산투자와 조세정책적 시사점: 상하이시 주택투자사례/ 노영훈

**특집** • 2010년 세제개편안

**주요국의 조세동향** • 미국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FTC) 개정 외

**정책흐름** • OECD국가의 국가채무 건전성 비교분석 결과 발표 외

CONTENTS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p><b>권두칼럼</b></p> <p><b>현안분석</b></p> <hr/> <p><b>특집 · 2010 세계개편안</b></p> <p><b>공공정책포럼</b></p> <p><b>주요국의 조세동향</b></p> <p><b>정책흐름</b></p> <p><b>재정통계</b></p> <p><b>이슈 &amp; 포커스</b></p>	<p>02 개구리에 관한 단상 · 임주영</p> <p>06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원 분석 · 고 선</p> <p>28 중고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식에 대한 소고 · 박명호</p> <p>42 해외부동산투자와 조세정책적 시사점: 상하이시 주택투자사례 · 노영훈</p> <hr/> <p>71 2010년 세계개편(안)의 기본방향 및 주요 내용 · 안택순</p> <p>77 2010년 세계개편안 평가 · 조명환</p> <p>84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와 정부의 역할</p> <p>89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효과적인 도입 방안</p> <p>95 미국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FTC) 개정 외</p> <p>105 일자리 창출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0년 세계개편(안)</p> <p>117 OECD국가의 국가채무 건전성 비교분석 결과 발표</p> <p>119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 ·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p> <p>125 한-파나마 조세조약 체결 협상 타결</p> <p>128 태풍 “곤파스”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p> <p>130 약성 지방세 체납, 「전자공매시스템」 도입으로 징수 강화</p> <p>138 GDP 대비 총조세 비중</p> <p>142 조세연구 “복지지출 적정수준으로 억제해야” 외</p>
---	--



## 개구리에 관한 단상



**임주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원장

요즘 세태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 웬지 개구리에 관한 일화들이 떠오른다. 그리고 보면 개구리만큼 우리나라에서 비유의 대상이 많이 되었던 양서류도 드문 것 같다. ‘개구리처럼 배 볼록한 사람’, ‘청개구리처럼 말 안 듣는 사람’, ‘개구리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 등등. 사람들의 유전자 속에 개구리와 비슷한 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유의 대상과 내용도 다양하다.

그 중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른다’는 일화는 경제 현안들과 관련해서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세계 7위의 교역대국, 10위권의 경제대국,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의 재진입. 겉으로 드러난 우리 경제성적은 화려하다. 이러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후의 폐허에서 일어나, 월남의 정글에서 피 흘리고, 열사의 태양 아래 땀을 흘리던 때가 있었다. 지구 정반대편 낯선 나라에 돈을 벌기 위해서 광부로, 간호사로 가는 것도 서슴지 않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 어려웠던 과거 시절 잊지 말아야

그러나 오늘날 젊은 세대들에게 그때 그 사람들은 이미 잊어버린 올챙이 시절이 아닐까. 풍요로운 물질과 범람하는 유행 속에서 청년실업은 흘러넘치고 고시준비생들은 나날이 늘고 있다. 기피업종이니 3D업종이니 하는 중소기업체들은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인데도 젊은 세대들은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에 들어가려고 실업을 마다하지 않는다. 이런 현상을 보면 실업이란 본질적으로 자발적인 것이며 실업의 고통은 극대화하고 편익은 없애야 실업이 없어진다는 프리드먼의 탐색적 실업이론에 한표 던지고 싶은 심정도 든다.

그렇다고 국가가 이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서 중소기업체에 자발적으로 찾아가게끔 할 수는 없다. 국가가 나아가야 할正道(正道)는 성장과 투자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다양한 교육과 재교육을

제공하는 것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올챙이 시절이 있었다’고 외치며 젊은 개구리들의 해이해진 정신을 나무랄 수 있는 사회의 원로와 국가의 권위가 아쉬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우리가 몸담고 사는 작은 공동체들도 마찬가지다. 항상 창업의 간난(艱難)이 있고 위기와 시련을 이겨내는 신고(辛苦)의 시절이 있는 후에야 안정이 온다. 그러나 조직이 안정되고 커지기 시작하면 어렵고 힘들었던 기억은 잊혀지고 삼폐인을 터트리는 분위기가 만연한다. 올챙이 시절을 이겨낸 세대들은 구세대로 치부되고 올챙이 시절을 모르는 개구리들이 축제의 밥상을 독차지하게 된다.

이럴 때 조직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전과 개혁에 나서야 한다. 이미 차려진 밥상 위에서 축제를 즐기기보다는 더 큰 세상과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미래의 다가올 어려움을 직시하고 현재의 누적된 문제점들을 고쳐 나가는 고민도 해야 한다.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인재 양성해야**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물 안 개구리’를 경계하여야 한다. 우물 안 개구리는 우물을 통해서 보이는 하늘의 크기가 세상의 전부다. 그 크기만큼으로 세상을 재단하기 때문에 우물 밖의 세상에 대해 공포심을 느낀다. 그래서 항상 우물 안에 자기끼리 싸우고 빼앗고 누리는 것만으로 만족한다.

새로운 도전과 개혁은 그들의 관심분야가 아니다. 남을 나와 같은 수준으로 낮추어놓아야 언제나 마음이 편안해진다. 따라서 ‘우물 밖을 동경하는 개구리’, ‘우물 밖으로 나가본 개구리’는 항상 배척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우물을 구하는 것은 이들 ‘우물 밖을 향한 개구리’이다. 우물 안 개구리들로부터 배척받고 배신당하는 환경에서도 우물 안이 아닌 바깥 세상을 지향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어떤 공동체인건 이들을 기르고 키우는 것만이 공동체의 미래를 보장받는 길이 된다. 조금 마음에 들지 않고 조금 엉뚱한 짓을 하더라도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소중히 대접하고 보호해야 하는 이유이다.

국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10여 년째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지만 실상을 아는 사람들에게 우린 아직 선진국에서 멀다. 일정수준에 이르지 못한 질서, 상대를 인정 못하는 낡은 이념, 내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한 공동체 의식 등은 차치하고 경제만 생각해도 그렇다.

.....  
 조직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전과  
 개혁에 나서야 한다.  
 이미 차려진 밥상 위에서  
 축제를 즐기기보다는  
 더 큰 세상과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도록  
 해야 한다.  
 .....

.....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새로운 세계로  
 뛰어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인재야말로  
 우리를 선발주자로  
 이끌어줄 것이다.  
 .....

일본을 모방해서 시작했고 이제는 일본을 추월하는 실적을 올린 삼성 등 우리 주력기업들이 세계자본시장에서 걸맞는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창의성의 결여에 있다. 후발주자로서 모방한 제품을 더 나은 제품으로 개선하는 것까지는 성공했지만 창조를 통해 선발주자가 되어 본 적은 없다. 이미 선발주자들이 만들어 놓은 시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노력해 따라잡았을 뿐이다. 그러나 이제는 아이폰 하나로 세계의 열광을 받고 있는 애플이 창조한 시장에 또다시 후발주자로 참여하여야 한다.

#### 새로운 도전과 미래 개척에 나서야

결국 대한민국에서 제일이라고 혹은 세계시장에서 현재 일등이라고 우물 안 개구리마냥 우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기존의 패러다임(paradigm) 속에서 일등을 해봤자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창조 앞에서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부터 삼성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은 개방성과 창의성을 가진 인재들을 길러내고 보호하는 것이다.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새로운 세계로 뛰어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인재야말로 우리를 선발주자로 이끌어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한국판 스티브 잡스를 길러내자는 주장들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주장 못지않게 우리 풍토에서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체념과 한탄의 소리도 들린다. 우리 사회 곳곳에 너무 많은 우물 안 개구리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일까. 그들이 스스로 우물 안 개구리임을 자각하고 공동체와 국가의 장래를 망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KIP**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 현안분석 |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원 분석  
고 선 ·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 중고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식에  
대한 소고  
박명호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해외부동산투자와 조세정책적 시사점: 상하이시  
주택투자사례  
노영훈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원 분석



고 선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sgo@kipf.re.kr)

최근 여러 해 동안  
비법정전입금과 교육경비보조금의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교육재정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 I. 서론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서 인적자원 육성, 성숙한 민주사회의 시민 양성, 개인의 발전과 성공을 위한 기회의 평등하고 보편적인 제공 등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은 다양하고 중요한 목표를 수행하고 있다.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초·중등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부 개발도상국을 제외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정부가 초·중등과정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상당 부분 부담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이런 점에서 예외가 아니며, 우리나라의 경우 초·중등 교육에 대한 투자는 주로 중앙정부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지방자치제도 및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정착해 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초·중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각급 정부별로 교육재원을 조달하는 비율은 국가에 따라 다양한 편차를 나타내는데, 미국 등 여러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투자를 통하여 교육재정을 확대해 온 바가 있다. 교육재원에 대한 투자가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때에는 지역의 다양한 정치경제적 요인들이 교육에 대한 투자규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여러 해 동안 교육비특별회계 비법정전입금과 학교회계 교육경비보조금의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교육재정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교육지원 확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편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현행 교육재정 지원에 대하여 분석한다. 우선 제Ⅱ절에서는 우리나라의 초·중·등 교육재정 체계를 보다 자세히 살펴봄에 현행 제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교육재정 투자에 기여하고 있는지 설명할 것이다. 제Ⅲ절에서는 최근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원 현황과 규모에 대해 소개한다. 제Ⅳ절에서는 단순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결정요인을 예비적인 수준에서 살펴본다. 마지막 절에서는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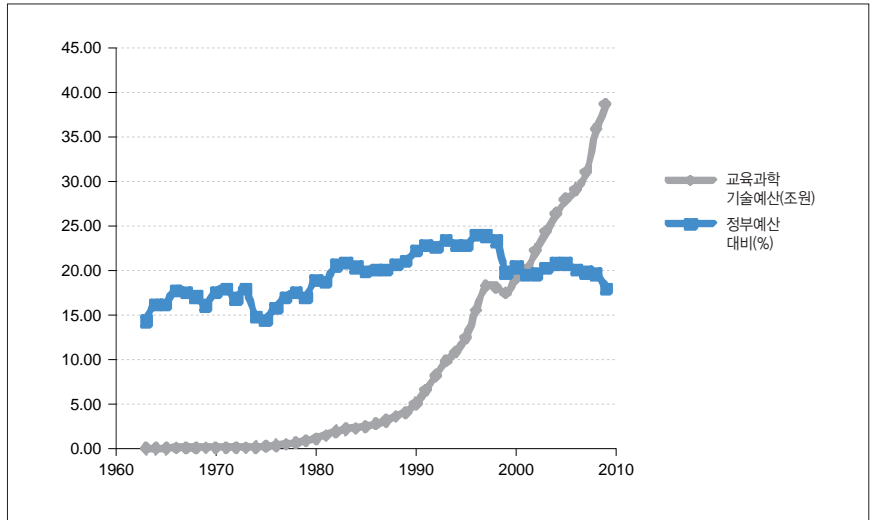
우리나라 정부는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를 중시해 왔다.

## Ⅱ. 우리나라의 교육재정

우리나라 정부는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를 중시해 왔다. 1963년 일반회계와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지방교육양여금관리 특별회계를 합친 우리나라 정부의 총예산은 763억 2,255만원이었는데, 교육과학분야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은 10억 9,161만원으로 총예산의 약 14.3%에 달하였다. 이후 정부예산 대비 교육과학기술분야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여 1982년에 처음으로 20%를 넘어섰으며, 이후 20%대 초반에서 다소 변화를 보이다가 2000년대 후반에 들어와 다시 20%대 아래로 약간 감소하였다. 2009년의 교육과학기술부 예산 총액은 38조 6,964억원으로 정부 총 예산인 214조 5,634억원의 18%에 해당하고 있다. 비율로는 최근 다소 감소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 액수의 증가는 상당하여 [그림 1]에 나타난 것처럼 1980년대 이후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재정의 구조는 크게 정부회계,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의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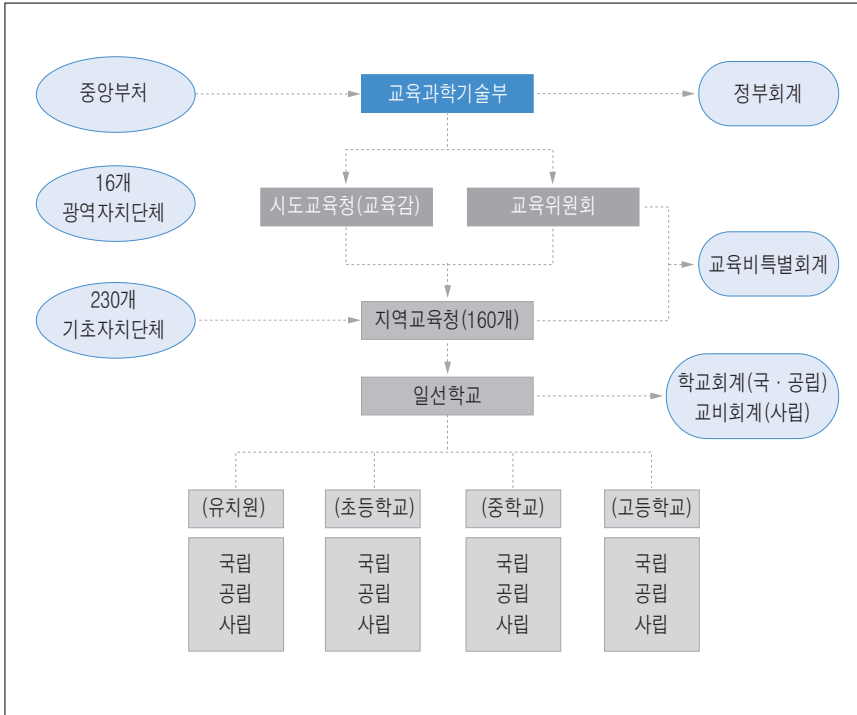
[그림 1] 우리나라 교육과학기술예산과 정부예산에서의 비중



자료: 교육통계연보 (2009)

이러한 우리나라 교육재정의 구조는 교육정책 및 행정집행 기관의 구조와 맞물려 크게 정부회계,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의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중앙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집행은 정부회계에서 이루어진다. 시도 단위로 이루어진 16개 광역교육청 단위 예산집행은 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16개 광역교육청 산하의 180개 지역교육청이 집행 및 실행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한편 일선 초·중·고등학교 단위에서도 교육재원의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학교회계에 해당한다.

[그림 2] 우리나라 유·초·중등교육 행정 및 재정 체계



2009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과학기술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약 85.87%인 32조 6,511억원에 달하였다.

정부회계에서 집행되는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은 비중이 그리 크지 않은 특별회계를 제외하면 부처 및 기관운영경비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나누어진다. 2009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예산 38조 6,964억원 중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는 38조 223억원이었고, 이 중 대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약 85.87%인 32조 6,511억원에 달하였다. 이외의 예산은 교육과학기술부 본부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출연기관 예산, 국사편찬위원회 등 교육지원기관 예산, 교육대학 등 국립교육기관 예산, 기타 소관 병원관리 예산으로 집행되었다.

한편 학교회계는 일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세입과 세출을 의미한다. 일선 학교의 학교회계에서는 교직원 인건비를 제외한 기타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수익자부담경비 및 예비비 등의 집행이 이루어지고, 소요 경비는 국가의 일반회계 전입금, 교육비특별회계, 학부모 부담수입, 자체수입, 학교발전기금, 보조금 및 지원금 등의 수입으로 조달된다. 2009년도 초·중·고등교육기관 학교회계 세입

2009년도  
초·중등교육기관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수익자부담경비  
지출예산은 전체의 48.88%인  
4조 715억원이었다.

세출예산은 총 8조 3,295억 원으로 이 중 수익자부담경비 지출을 위한 예산이 4조 715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8.88%에 달하였으며, 학교운영비가 3조 2,368억 원으로 38.86%, 인건비가 1조 49억원으로 12.06%, 기타 예비비가 162억원으로 0.19%에 해당하였다. 2009년도 학교회계의 각급학교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표 1>과 같다.

<표 1> 2009년도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 (초·중등교육기관)

(단위: 백만원)

구분	세입						
	합계	국가의 일반회계 전입금	교육비 특별회계	학부모 부담수입	학교발전 기금	보조금 및 지원금	기타
초등학교	4,254,073	6,091	2,038,314	2,038,037	538	64,015	107,077
중 학교	1,982,311	3,793	713,926	1,191,396	210	13,791	59,195
고등학교	2,023,313	10,733	532,889	1,375,807	800	22,173	80,910
특수학교	63,241	5,346	49,573	2,920	38	702	4,663
기타학교	6,565	-	4,467	1,368	0	3	726
계	8,329,503	25,964	3,339,170	4,609,528	1,586	100,684	252,571
	세출						
	합계	인건비	학교운영비	수익자 부담경비	예비비		
초등학교	4,254,073	487,494	1,700,714	2,057,905	7,959		
중 학교	1,982,311	300,781	774,991	902,301	4,238		
고등학교	2,023,313	197,168	715,223	1,107,076	3,846		
특수학교	63,241	18,527	41,395	3,144	174		
기타학교	6,565	965	4,504	1,086	11		
계	8,329,503	1,004,935	3,236,827	4,071,512	16,229		

자료: 교육통계연보(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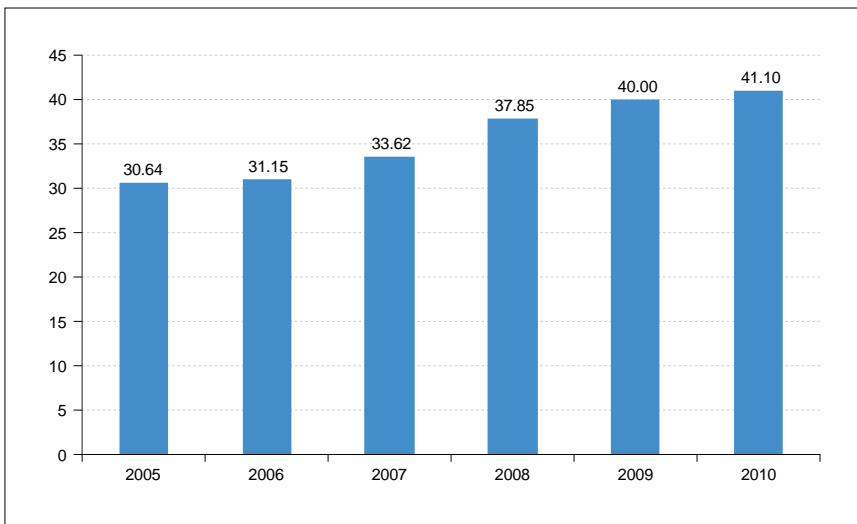
교육비특별회계는 곧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기관의 교육자원 조달 및 집행이 이루어지는 지방교육재정의 주를 이룬다. 지방교육재정은 통상 각 시도에 설치된 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우선 시·도 교육감이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 이후 각 시·도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각 시도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예산이 확정된다. 예산의 집행은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며, 180개 지역교육청이 집행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당초예산은 40조 31억원이었고, 2010년도에는 41

조 954억원으로 2.7% 증가하였다. [그림 3]에 나타난 것처럼,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교육비특별회계 당초예산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지방교육재정, 즉 교육비특별회계의 주 수입원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다.

[그림 3] 교육비특별회계 당초예산

(단위: 조원)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 즉 교육비특별회계의 주 수입원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다. <표 2>에 나타난 것처럼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당초예산 기준으로 2008년 교육비특별회계 전체예산의 76.5%, 2009년에는 76.5%, 2010년에는 70.9%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큰 비중을 나타내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2008년 18.7%, 2009년 18.5%, 2010년 18.5%였다. 이렇게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외에 지자체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이나 지방교육채 발행수입, 주민이나 기관의 부담 등 기타재원이 전체예산의 약 5~10%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으로 나누어진다.

〈표 2〉 교육비특별회계 자원별 세입 예산 (2008~2010)

(단위: 억원, %)

자원별	2008		2009		2010	
	당초예산	구성비	당초예산	구성비	당초예산	구성비
중앙정부이전수입	289,645	76.5	306,019	76.5	291,402	70.9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70,739	18.7	74,161	18.5	75,874	18.5
지자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16,189	4.3	19,613	4.9	24,082	5.9
지방교육채	1,815	0.5	116	0	18,615	4.5
주민(기관 등) 부담 등 기타	136	0.0	122	0.1	981	0.2
합 계	378,524	100.0	400,031	100	410,954	100

자료: 교육통계연보(2009) 및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으로 나누어진다. 원래 중앙정부의 이전수입에는 교육환경개선교부금과 지방교육양여금도 포함되었으나, 교육환경개선교부금은 2001년, 지방교육양여금은 2005년에 폐지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 및 경영하는 데에 국가가 지원하는 자금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은 당해 연도 내국세 수입 중 목적세, 종합부동산세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금액을 제외한 총액의 일정 비율과 당해 연도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세입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분 교부금 교부율은 꾸준히 인상되어 왔는데, 2008년에는 이전의 19.4%에서 20.0%로, 2010년부터는 다시 20.27%로 높아졌다.

교육세는 학교시설과 교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재원 조달을 목적으로 하여 1981년 12월에 제정되어 1982년부터 시행되었다. 처음에는 한시적인 목적세로 도입되었고, 지방교육양여금의 명목으로 각급 학교를 관장하는 교육청에 배분되었다. 하지만 이후 시한이 연장되다가, 1990년에 영구세로 전환되었고, 1995년에는 교육재정 규모를 국내총생산의 5% 수준으로 늘리기 위하여 세원을 확대하기에 이른다. 2001년부터는 교육세 중 지방세액에 추가하여 부과하던 항목을 중심으로 지방교육세가 분리되어 다시 규모가 줄어들었다. 현재에는 금융·보험업자 수입금액의 0.5%, 개별소비세액의 30% (등유, 중유, 수송용부탄의 경우에는 15%), 교통·에너지·환경세액(휘발류, 경유)의 15%, 주세액의 10% (주세율 70% 이상인 주류의 경우 30%)로 징수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다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된다. 보통교부금은 교육세 전액과 일반회계전입금의 96%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으로 구성되며, 재정 차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국가정책상 일정한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보통교부금 교부를 위하여 우선 각 지방교육자치단체별로 기준재정수요액이 산정된다. 그리고 해당 지방교육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보통교부금은 총액 교부되고 있다.

특별교부금은 일반회계전입금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특정한 목적에 한정하여 집행된다. 이는 다시 시책사업, 현안사업, 재해대책으로 나누어 사용된다. 시책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해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해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60%가 활용된다. 현안사업은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 현안수요가 발생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0%를 재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외에 보통교부금 산정기일 이후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 특별교부금 재원의 10%를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에 별도로 통지된 금액으로 지원되며, 사용이 특정되어 있다. 통상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응경비부담이 이루어진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자료에 따르면 2008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3조 2,234억원이었고, 국고보조금은 58억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의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33조 2,292억원이었다. 이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결산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7년 결산기준 70.4%보다 다소 상승한 수치이다.

교육비특별회계 중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으로 나누어진다. 법정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시·도의 교육과 학예 진흥을 위해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시도세,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나누어진다. 지방교육세는 등록세, 레저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및 담배소비세의 세액에 부가하여 부과되며, 과세표준 및 세율은 <표 3>과 같다. 한편 도를 제외한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45%를 다시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입금으로 부담한다. 이외에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특별시세 총액 중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목적세, 특별시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입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시·도의 교육과 학예 진흥을 위해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시도세,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나누어진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는 관할 지역 안의 특정한 목적 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비법정전입금을 전출할 수 있다.

액수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 중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액수의 5%를,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3.6%를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입금으로 부담한다. 한편 이와 별개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50%씩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취득한 학교용지는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므로 교육비특별회계 중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 해당하게 된다.

〈표 3〉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	표준세율
등록세액	20%
레저세액	40%
주민세 균등분 세액	10% (다만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에서는 25%)
재산세액	20%
자동차세액	30%
담배소비세액	50%

이와 별개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는 관할 지역 안의 특정한 목적 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비법정전입금을 전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하여 특정 사업별로 비법정전입금을 전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법정전입금이 지원되는 사업으로는 자기주도 학습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과 서울 영어마을 참가비 지원 등이 있다. 2007년과 2008년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결산 현황은 〈표 4〉와 같다.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세의 비중이 약 60% 이상으로 가장 컸고, 시도세는 약 20% 정도, 담배소비세는 약 7% 정도였다.

〈표 4〉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내역별 결산 현황 (2007~2008)

(단위: 억원, %)

	2007		2008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지방교육세	45,314	62.89	49,458	61.98
담배소비세	5,443	7.55	5,696	7.14
시도세	15,472	21.47	16,951	21.24
학교용지부담금	2,999	4.16	3,609	4.52
비법정수입 등	2,829	3.93	4,081	5.11
계	72,057	100.00	79,795	100.0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각종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이라고 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 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잡수입, 이월금 등으로 이루어진다. 2008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3조 9,735억원으로 전체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총액의 8.7%였다. 이 중 교수-학습활동수입이 가장 많아 1조 864억원이었고, 행정활동수입은 184억원, 자산수입 1,813억원, 이자수입 2,795억원, 잡수입 등 448억원, 이월금 2조 3,631억원이었다.

이외에도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으로는 지방교육채 발행에 따른 수입과 주민 및 기타 기관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대체적으로 이들의 규모는 크지 않다. 2008년 결산자료에 따르면 지방교육채를 통한 교육비특별회계 수입 총액은 2,657억 원으로 총결산수입의 0.6%였다. 주민부담금 등의 비중도 작아 2008년 결산총액의 경우 458억원으로 전체 결산총액의 0.1%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초·중등 교육재정은 크게 정부회계, 교육비특별회계, 학교회계 또는 교비회계의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지방교육재정인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에서 각각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교육재원은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시도세, 학교용지일반기부담금 등으로 이루어진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입금과 각 광역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비법정전입금이 있다. 한편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각종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이라고 한다. 다음 절에는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나누어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원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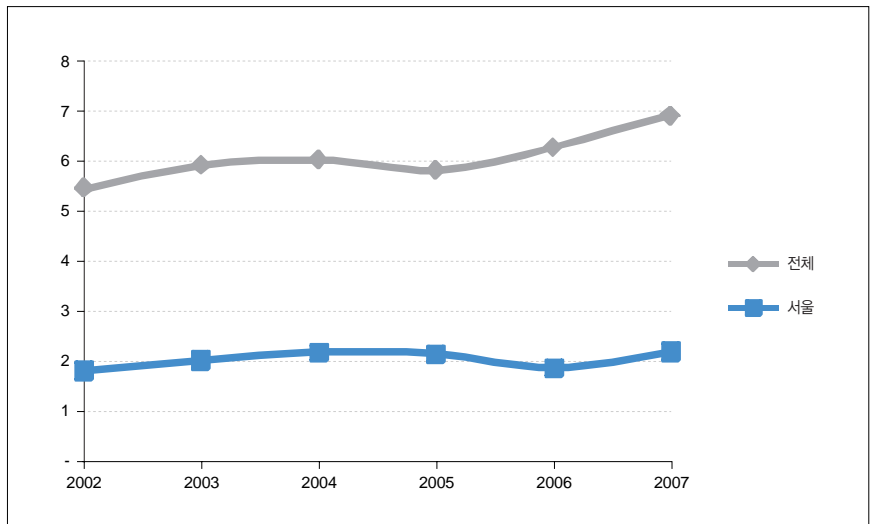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초·중등 교육재정에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 교육경비보조금의 형태로 재원 조달에 기여하고 있다.

### Ⅲ.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원 현황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초·중등 교육재정에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 교육경비보조금의 형태로 재원 조달에 기여하고 있다. 이 중 법정전입금은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시도세,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세 수입구조에 따라 그 규모가 시도별로 차이를 보이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차액은 이후 다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교부를 위한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된다. 따라서 법정전입금의 시도별 차이는 시도별 교육재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지방재정교부금에 의하여 우리나라 의무교육 소요경비는 시도별로 큰 차이가 없이 평준화되어 있다.

[그림 4] 교육비특별회계 법정교부금 (2002~2007)

(단위: 조원)



자료: 교육통계연보

[그림 4]에 나타난 것처럼 지방세 수입 증가에 따라 2000년대에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입금 규모는 다소 상승해 왔다. 2002년 5조 4,526억원이었던 전체 법정전입금 총액은 2007년에는 6조 9,227억원으로 증가하였다.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입금의 규모가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로 2002년에는 1조 8,186억원으로 전체 법정전입금 중 33.35%에 달하였으나, 2007년에는 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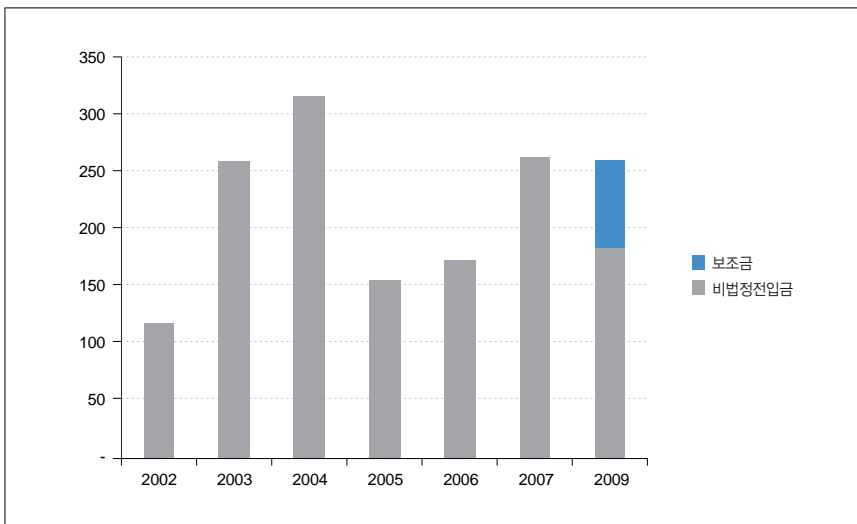
1,968억원으로 전체의 31.73%로 다소 비중이 감소하였다.

법정전입금은 법에 정해진 대로 의무적으로 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결정에 따른 교육재정 지원과 투자 수준은 비법정전입금 및 교육경비보조금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 [그림 5]는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비법정전입금 및 지원금 총액의 규모와 변화를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보여주고 있다. 우선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비법정전입금의 경우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5년에 큰 폭으로 줄어든다. 이는 서울과 전북, 전남에서는 비법정전입금이 2004년과 2005년 사이에 다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대구 등 다른 광역시도에서 큰 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후 비법정전입금 규모는 2006년과 2007년을 거치며 다시 상승하지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에는 이전보다 다시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가 부족하여 분석하기 어려우나, 이후 언급될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연간 변화추세에 미루어 짐작해 보면, 2000년대에 꾸준히 증가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2009년에 이르면 광역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전체 교육재정에 대한 자율적 지원금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결정에 따른 교육재정 지원과 투자 수준은 비법정전입금 및 교육경비보조금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

[그림 5]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비법정전입금 및 보조금

(단위: 십억원)



자료: 2002~2007년은 교육통계연보, 2009년은 교육과학기술부, 2008년은 자료 없음. 2002~2007년 광역자치단체의 보조금 자료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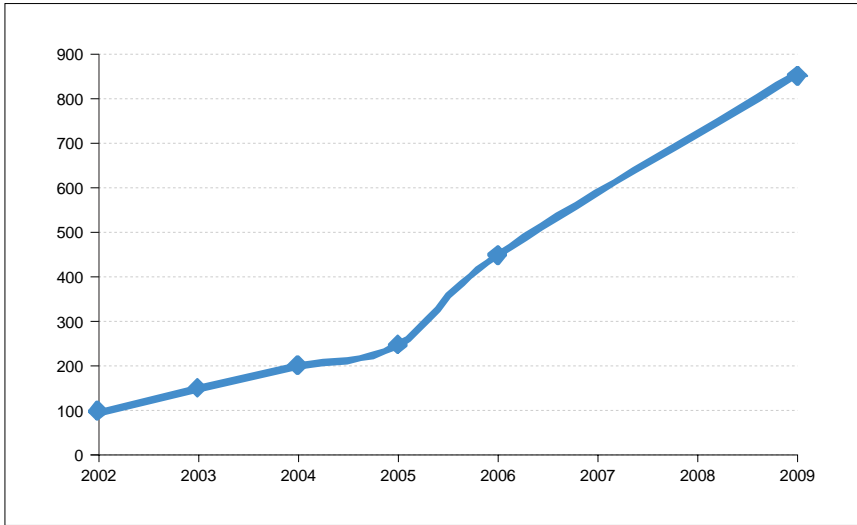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결정과정은  
상당히 복잡적이고,  
단순하게 설명되기 어렵다.

그렇다면 광역자치단체의 교육투자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일까? 실제 결정과정은 상당히 복잡적이고, 단순하게 설명되기 어려운 편이다. 우선 비법정전입금과 교육경비보조금 모두 특정한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각 연도별로 특정 사업의 유무에 따라 총지원금액의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 한편 비법정전입금의 경우 특정한 사업을 위한 예산이더라도 교육비특별회계에 포함되어 집행되어야 하는 반면, 교육경비보조금의 경우 학교에 직접 지원이 이루어져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회계에서,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비회계에서 집행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특성에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에 비법정전입금과 교육경비보조금 중 적절한 형태를 선택하여 교육재정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한 부분의 변화만으로 교육재정에 대한 지원의 증감을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기초자치단체 역시 각급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의 형태로 지방교육 재정지원을 실행하고 있다. [그림 6]에 나타난 것처럼 2002년부터 2009년까지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규모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5년 이후로 더욱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5>에서 살펴보면 2002년에는 학교당 평균 약 842만원이었던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은 2009년에는 약 7,673만원으로 7년간 무려 아홉 배가 넘게 증가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생당 지원금액 역시 2002년 약 1만 2천여원에서 2009년 11만 6천여원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경비보조금이 실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편이다. 2002년의 총교육경비보조금은 총기초자치단체 예산의 0.2%에 불과하였고, 2009년에도 전체 예산의 1.18%에 머물러 있다.

[그림 6]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추세

(단위: 십억원)



2002년부터 2009년까지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규모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주: 제주특별자치도의 옛 기초자치단체는 제외하였음.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표 5> 기초자치단체의 학교당·학생당 교육경비보조금

연 도	학교당(백만원)	학생당(천원)	지자체 예산 대비(%)
2002	8.42	12.37	0.20
2003	12.95	19.12	0.29
2004	17.18	25.64	0.39
2005	20.83	31.51	0.45
2006	37.64	57.58	0.73
2009	76.73	116.45	1.18

주: 제주특별자치도의 옛 기초자치단체는 계산에서 제외하였음. 2007년과 2008년은 자료 없음.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금은 학교의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지원금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기타 교육여건 개선사업 부문이다. 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과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이다.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으로 집행이 된다. 이 중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보조항목은 2006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각 항목별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학교당 및 학생당 지원금액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우선 지원금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기타 교육여건 개선사업 부문이다. 이는 급식설비지원이나 교육정보화 같은 규정된 항목들보다는 각 기초자치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사업에 많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과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이다. 특히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의 경우 단순히 학교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들에게 여가체육문화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이고, 시설환경개선 역시 이와 같은 맥락으로 살펴볼 수 있다.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의 경우 최근 급식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현대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늘어났다. 한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보조금 역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영어 원어민 교사 채용 보조금 등으로 활용되는 항목이다.

<표 6>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항목별 학교당·학생당 지원금액

(단위: 학교당·학생당, 천원)

연도	급식, 설비	교육정보화	시설환경개선	교육과정	지역주민	체육문화	기타
(학교당)							
2002	1,493	395		81	146	2,450	3,858
2003	1,547	957		83	136	4,725	5,503
2004	1,798	1,119		182	142	5,493	8,443
2005	2,177	1,182		250	178	5,309	11,739
2006	3,379	1,784		1,884	667	7,869	22,061
2009	6,840	2,254	19,102	18,533	384	10,022	19,593
(학생당)							
연도	급식, 설비	교육정보화	시설환경개선	교육과정	지역주민	체육문화	기타
2002	2.19	0.58		0.12	0.21	3.60	5.66
2003	2.28	1.41		0.12	0.20	6.97	8.12
2004	2.68	1.67		0.27	0.21	8.20	12.60
2005	3.29	1.79		0.38	0.27	8.03	17.75
2006	5.17	2.73		2.88	1.02	12.04	33.74
2009	10.38	3.42	28.99	28.13	0.58	15.21	29.74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IV. 교육경비보조금 결정요인 분석

이 절에서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예비적인 수준의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분석방법은 단순회귀분석이며, 종속변수는 학교당 보조금 액수, 학생당 보조금 액수, 보조금이 기초자치단체의 연간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사용하였고, 이후 각 여섯 개의 보조금 지출 항목별로 학교당 보조금과 학생당 보조금으로 나누어 다시 분석하였다. 모든 금액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2005년 원화가치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설명변수로는 자치단체 재정상태 관련 변수들과 기타 사회경제적 배경 관련 변수들을 사용하였다.

우선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설명하는 변수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통계자료에 바탕하여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각 연도 지방재정 중 지방세 수입의 비율, 세외수입의 비율, 지방교부세의 비율, 지방채로부터의 비율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이용하였다. 한편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출 결정요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수들로 e-지방지표 자료 중 다음 변수들을 추가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우선 재정자주도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참고자료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규모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조정교부금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나타낸 것이다. 노령인구비율은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백분율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자료에 기반하고 있다. 사설학원은 인구 천명당 사설학원수로 여기에서 사설학원이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기능,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의미한다. 사설학원 변수는 한국교육개발원 및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자료로 계산되었다. 종사자 수는 인구 대비 모든 산업의 종사자 수로서, 통계청 전국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나온 전 산업 종사자 수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의 연안인구로 나누어 계산된 수치이며 단위는 '명'이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는 자동차 천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로서 제1당사자 차종별 교통사고 발생건수이며,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에 한정된다. 자료는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경우 도로교통공단 자료, 자동차 등록대수는 시도 통계연보 및 옛 국토해양부 자료에 기초한다.

통상적인 정치경제학 문헌을 따른다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금 규모는 지역 유권자의 집합적 의사결정 과정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예비적인 수준의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통상적인 정치경제학 문헌을 따른다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금 규모는 지역 유권자의 집합적 의사결정 과정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라서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들을 통하여 어떠한 요인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규모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수 있다. 지방채 비율 및 재정자주도 등은 우선 각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보여준다. 노령인구비율은 한국에서 인구고령화가 교육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변수이다. Poterba (1997) 등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미국 등지에서는 보통 노령인구 비율의 증가는 교육에 대한 투자 감소로 연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설학원 변수는 각 기초자치단체 안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통한 공교육에 대한 지역 차원의 투자규모가 해당 지역의 사설학원 규모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분석에 추가하였다. 종사자 수는 지역의 특성 및 경제규모를 대리하는 변수이며, 자동차 천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인구 및 경제변수 등으로 포착되지 않는 지역의 여러 가지 특성을 대리하는 변수이다.

〈표 7〉은 기초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총액의 결정요인을 학교당 보조금, 학생당 보조금 및 예산 대비 보조금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각 보조금의 단위는 ‘천원’ 이고, 예산 대비 보조금의 단위는 백분율이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변수는 재정자주도이다. 재정자주도의 경우 세 가지 종속변수에 대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재정자주도가 큰 기초자치단체일수록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더 많았음을 나타낸다. 재정자주도를 구성하는 각 항목의 효과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각 지방재정 수입원의 구성비율을 다시 설명변수로 활용하여 분석해 보았는데, 세외수입 비율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세외수입비율의 경우 학교당 보조금 및 예산 대비 보조금 비율에 대하여 양(+)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인구비율은 학교당 보조금과 예산 대비 보조금 비율에 대하여 뚜렷이 음(-)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노령인구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령인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교육경비보조금 지출을 줄이고, 노령자들에게 보다 많은 편익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지출을 증가한다는 정치경제학 모형의 예상과 일치한다. 학생당 보조금의 경우에는 노령인구비율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이는 노령인구비율이 클수록 지역별 학생 수가 적어지는 사실과도 관련된다.

그 밖의 사회경제 변수들 중 인구 천명당 사설학원 수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구 대비 종사자 수는 상당히 큰 규모의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등록된 차량 천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역시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종사자

수 효과 및 교통사고의 효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7〉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결정요인 분석 (2003~2006)

	학교당보조금		학생당보조금		예산대비보조금	
지방세비율	4.06		0.07		0.014**	
	[268.99]		[0.39]		[0.003]	
세외수입비율	352.35**		0.98		0.004*	
	[128.70]		[0.68]		[0.002]	
교부세비율	117.03		0.83		-0.000	
	[228.64]		[0.72]		[0.003]	
지방채비율	-158.57	-265.60	0.03	-0.50	0.003	0.002
	[478.52]	[465.15]	[0.90]	[0.87]	[0.005]	[0.005]
재정자주도		852.01**		1.02*		0.004*
		[239.42]		[0.46]		[0.002]
노령인구비율	-856.86*	-535.62*	3.72**	4.46**	-0.005	-0.014**
	[340.77]	[223.03]	[1.39]	[0.85]	[0.005]	[0.003]
사설학원	-2,967.66	-3,464.59	-6.21	-5.87	-0.027	0.005
	[2,490.92]	[2,740.13]	[4.14]	[4.45]	[0.029]	[0.030]
종사자 수	25,421.06**	20,099.97**	38.44**	35.82**	0.152	0.328**
	[6,275.75]	[3,447.12]	[11.09]	[8.09]	[0.087]	[0.072]
교통사고	-1,071.62**	-785.29**	-1.74*	-1.43*	-0.008*	-0.011**
	[268.31]	[210.58]	[0.73]	[0.69]	[0.003]	[0.003]
상수	33,053.24**	-16,276.22	-11.50	-37.74	0.336*	0.406*
	[11,931.62]	[15,801.58]	[31.02]	[36.61]	[0.143]	[0.186]
R-squared	0.422	0.440	0.308	0.307	0.459	0.446

주: 1. 이외에도 연도 및 광역자치체 고정효과를 통제하였음. 표준오차는 White(1980) 방식으로 조정되었음.  
 2. \*\*p < 0.01, \*p < 0.05

재정자주도의 경우 세 가지 종속변수에 대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재정자주도가 큰 기초자치단체일수록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더 많았음을 나타낸다.

**〈표 8〉 각 항목별 학교당 보조료 결정요인 분석 (2003~2006)**

	급식	교육정보화	교육과정	지역주민	체육문화	기타
지방세비율	57.20 [68.77]	8.32 [45.68]	27.96 [23.55]	38.21 [40.02]	167.99 [89.93]	-295.63 [215.05]
세외수입비율	21.72 [19.65]	14.67 [17.48]	20.52* [8.83]	5.22 [4.46]	-2.40 [57.27]	292.63** [100.19]
교부세비율	-49.35 [56.69]	-21.09 [40.19]	47.55* [19.49]	-26.06 [27.21]	-93.45 [88.04]	259.42 [178.82]
지방채비율	-69.78 [108.88]	-124.83 [67.83]	-82.75* [32.93]	-58.83 [50.17]	787.22* [333.97]	-609.59 [350.12]
재정자주도	164.41** [60.29]	91.08* [39.14]	13.12 [14.35]	34.04 [31.38]	141.23* [65.69]	408.13* [190.23]
노령인구비율	-84.51 [65.70]	-107.65* [49.42]	-33.98 [25.78]	36.08 [21.82]	40.11 [137.84]	-706.91* [303.58]
사실학원	69.30 [389.53]	890.56* [398.04]	-78.41 [128.54]	3.60 [157.03]	196.64 [900.57]	-2,268.23 [1,702.61]
중사자수	605.59 [1,572.63]	2,532.26** [959.54]	-166.25 [254.65]	327.85 [905.06]	3,095.01 [2,274.87]	19,026.60** [4,765.97]
교통사고	-110.38 [57.24]	-29.54 [40.16]	-24.23 [21.40]	-29.85 [27.02]	-271.03** [79.19]	-606.60** [229.10]
상수	3,986.02 [2,834.38]	2,948.48 [1,920.49]	188.06 [504.99]	437.07 [1,652.46]	9,739.54* [4,447.76]	15,754.08 [8,340.58]
R-squared	0.236	0.218	0.178	0.041	0.357	0.231

주 1. 이오에프 연도 및 광역자치체 고정효과를 통제하였음. 표준오차는 White(1980) 방식으로 조정되었음.

2. \*\*p<0.01, \*p<0.05

〈표 9〉 각 항목별 학생당 보조금 결정요인

	급식	교육정보화	교육과정	지역주민	체육문화	기타
지방세비율	0.06 [0.07]	0.04 [0.05]	0.01 [0.03]	0.07 [0.04]	0.06 [0.19]	-0.17 [0.33]
세외수입비율	0.04 [0.04]	0.04 [0.03]	0.03 [0.02]	0.01 [0.01]	-0.08 [0.15]	0.93 [0.65]
교부세비율	0.17 [0.09]	0.04 [0.06]	0.10* [0.04]	-0.02 [0.03]	0.08 [0.25]	0.47 [0.64]
지방채비율	0.08 [0.16]	0.04 [0.07]	0.04 [0.07]	-0.04 [0.04]	0.40 [0.43]	-0.15 [0.73]
재정자주도	0.14* [0.07]	0.03 [0.04]	-0.02 [0.03]	0.02 [0.02]	-0.10 [0.17]	0.94* [0.38]
노령인구비율	-0.18 [0.11]	-0.11 [0.07]	0.03 [0.05]	0.07** [0.03]	0.41 [0.31]	3.50** [1.35]
사실학원	-0.45 [0.83]	-1.22** [0.43]	0.01 [0.26]	-0.10 [0.18]	-0.70 [1.70]	-3.74 [3.73]
증사자수	1.29 [1.45]	3.00** [0.94]	-0.21 [0.45]	-0.00 [0.72]	11.12 [6.17]	23.24** [8.62]
교통사고	-0.10 [0.11]	0.04 [0.05]	-0.02 [0.04]	-0.02 [0.03]	-0.38 [0.29]	-1.25 [0.67]
상수	-0.59 [3.14]	0.13 [2.30]	-0.94 [1.14]	-0.43 [1.43]	21.26 [12.87]	-30.92 [26.09]
R-squared	0.217	0.170	0.134	0.049	0.189	0.266

주: 1. 이외에도 연도 및 광역자치체 고정효과를 통제하였음. 표준오차는 White(1980) 방식으로 조정되었음.

2. \*\*p<0.01, \*p<0.05

노령인구 비율의 경우 급식, 교육정보화, 기타 교육사업 지원 등에서 뚜렷한 음(-)의 효과를 보여주었다.

〈표 8〉에서는 이러한 회귀분석 모형을 각 보조금 항목별 학교당 보조금 지출로 다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전반적인 결과는 앞서 보조금 총액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와 일관적으로 나타나지만, 세부적인 면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시사점을 새롭게 보여준다. 우선 재정자주도의 경우 꾸준히 양(+)의 효과를 보여주었으나, 그 효과는 급식, 교육정보화, 체육문화시설, 기타 교육사업 등에서 크게 나타난 반면 교육과정 지원금이나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한편 노령인구 비율의 경우 급식, 교육정보화, 기타 교육사업 지원 등에서 뚜렷한 음(-)의 효과를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분야들이 노령자를 제외한 채 학령기 아동에게 주로 배타적으로 편익이 돌아가는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앞서 정치경제학 모형을 통해 예측한 결과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노령인구 비율의 증가는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사업 지원이나 체육문화 시설확충 사업 보조 등에는 뚜렷한 효과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사업들의 경우 노령인구에게도 편익이 일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표 9〉에서는 각 항목별 보조금을 이제 학생당 보조금으로 환산하여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흥미롭게도 재정자주도의 경우 급식 분야 및 기타 교육사업 분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분석대상인 2003년부터 2006년까지는 다수의 기초자치단체에서 급식지원과 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지원을 시작한 시기였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 결과는 급식조례 제정을 통한 지원여부 및 정도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로 나타나는 지방재정의 특성과 상당히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지방세 비율이나 세외수입 비율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여주지 않으므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결정 내용과 지방재정 여건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더 상세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위의 분석결과에서 관찰되는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노령인구비율의 증가가 지역주민 교육프로그램 사업 보조, 체육문화시설 건립사업 보조, 기타 교육사업 보조 등에서 학생당 보조금 지출에 대하여 양(+)의 효과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야의 경우 앞서 언급한대로 그 편익이 노령인구에게도 돌아갈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상대적으로 노령인구에게 돌아가는 편익이 적고 주로 학령기 아동에게 배타적으로 편익이 돌아가는 교육정보화 사업 등에 대한 학생당 보조금의 경우 노령인구비율의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음(-)의 효과를 보여주었다.

## V. 결론

현재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의 재정구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 통하여 일정 정도 평준화되어 있다.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원은 의무교육제도 아래에서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교육을 보편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지역에서 초중등 교육에 대한 투자 규모가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지역별로 교육에 대한 투자수준을 높이는 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할 때에는 가용한 자원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초중등 교육재정 지원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 교육비특별회계 비법정전입금과 학교회계 교육경비보조금의 형태로 해당 지역의 초·중등교육 투자를 지원할 수 있다. 아직 상대적으로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제도의 활용도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2009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액은 광역자치단체 2,684억원, 기초자치단체 1조 1,212억원 등 총 1조 3,897억원에 달하였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지출자료를 토대로 회귀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교육경비보조금 지출이 더 컸다. 한편 노령인구의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학교당 교육경비보조금 지출 및 전체 지역예산 대비 교육경비보조금의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다만 노령인구에게도 일부 편익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은 다소 증가하기도 하였다. 이와 별개로 종사자 수가 많거나 교통사고가 적게 일어날수록 교육경비보조금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물론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아직 예비적인 수준으로 주의깊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더 자세히 분석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참고문헌>

- OECD, *Education at a Glance*, OECD, 2009.
- Poterba, James M., "Demographic Structure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Public Education,"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Vol. 16, No. 1, 1997, pp. 48~66.
- White, Halbert, "A Heteroskedasticity-Consistent Covariance Matrix Estimator and a Direct Test for Heteroskedasticity," *Econometrica*, Vol. 48, Issue 4, 1980, pp. 817~38.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결정 내용과 지방재정  
여건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더 상세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중고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식에 대한 소고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ecpmh@kipf.re.kr)

부가가치세의 과세방식으로  
전단계세입공제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구입한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여 이중과세 및 경쟁의  
왜곡 문제가 발생한다.

## I. 서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부가가치세를 운영중인 대부분의 국가들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단계세입공제방식(invoice method)을 활용하고 있다. 전단계세입공제방식이란 특정 과세기간 동안의 총매출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출세액에서 전단계매입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 즉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방식을 말한다<sup>1)</sup>. 동 방식은 각각의 거래단계에서 세금계산서라는 증명서를 매체로 활용하여 과세자료를 양성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전단계세입공제방식은 매입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매입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할 때 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한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유통되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다. 그러나 전단계세입공제방식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구입한 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다. 이는 과세된 금액이 다시 과세되어 이중과세의 문제를 초래한다. 또한 이러한 이중과세 문제는 중고상이 중고품을 누구로부터 구입하여 재판매하느냐에 따라 판매가격이 달라짐에 따라 경쟁의 왜곡문제를 유발한다. 그리고 이중과세 문제는 궁극적으로 폐자원 및 중고품의 재활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단계세입공제방식을 채택한 국가들은 세금계산서를 받

1) 일부 국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방식으로 전단계거래금액공제방식(account method)을 활용하기도 한다.

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품을 구입한 사업자가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과세방식을 제도화하고 있다.

중고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첫 번째 방식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간주매입세액공제방식이다. 두 번째 방식은 EU 국가들에서 사용하는 마진제도(margin scheme)방식이다. 간주매입세액공제방식은 중고품의 세전 매입가격에 일정비율(예를 들면, 부가가치세율/(1+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이에 반하여 마진제도는 중고품의 세전 매출가격에 세전 매입가격을 뺀 마진(일종의 부가가치)을 일정비율(예를 들면,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본고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방식인 간주매입세액공제제도와 마진제도를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최근 정부가 전 세계적인 자원·에너지문제에 대처하고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폐금속자원의 재활용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하고 가치가 있다고 본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절에서는 간주매입세액공제방식과 마진제도방식 간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도출을 위하여 간주매입세액공제방식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국가인 우리나라의 사례와 마진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EU의 사례를 살펴본다. 그런 다음, 두 방식을 소비자와 중개업자의 세부담 및 국가의 세수입 측면에서 비교·분석한다. 제Ⅲ절에서는 그 결과를 요약하여 시사점을 제시한다.

## Ⅱ. 중고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식 비교분석

### 1. 간주매입세액공제 방식: 한국의 사례

우리나라는 1993년도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여 재판매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간주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며 중고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 동 제도의 도입목적<sup>2)</sup>은 고철·폐지 등의 폐자원 수집상과 중고자동차 수집상이 개인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비사업자(면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 포함)로부터 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여 재생업체 등에 판매하는 경우 매입세

본고에서는 중고품 등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때 발생하는 이중과제 및 경쟁의 왜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식인 간주매입세액공제제도와 마진제도를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1992년 12월 8일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할 때 그 이유로 다음을 제시하였음.

“재활용이 가능한 폐지·고철등의 폐자원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가계등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폐자원을 매입하여 재생업체에 판매하는 경우 현재는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매입가격 중 일정 금액을 부가가치세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이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폐자원의 수집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우리나라는 1993년부터  
중고상의 세 부담 완화 및  
환경보전 지원 목적으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하여  
간주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데 따른 높은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폐자원·중고품의 수집 및 재활용을 촉진시키고, 궁극적으로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전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동 제도가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간주매입세액공제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입하는 사업자 중에서 간주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 ①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 ②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 ③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④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sup>3)</sup>
- ⑤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둘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간주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품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① 재활용폐자원 : 고철·폐지·폐유리·폐합성수지·폐합성고무·폐금속 캔·폐건전지·폐비철금속류·페타이어·폐섬유·폐유
- ② 중고자동차

다만, 2010년부터 수출되는 중고자동차 중에서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로부터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적용대상 품목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출고 후 1년 이내에 수출되는 중고자동차를 적용대상 품목에서 제외한 이유는 신차를 중고차로 위장·수출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셋째, 간주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야 한다.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② 개인, 면세사업자, 법인격 없는 사단·법인 등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포함)
- ③ 간이과세자

3)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중고자동차(중고이륜자동차 포함)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수출하는 자에 포함된다.

넷째, 공제할 간주매입세액을 계산 시 적용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2010년 현재 재활용폐자원의 경우 취득가액의 106분의 6을 적용하고, 중고자동차의 경우 110분의 10을 적용한다. 다만 2011년부터는 중고자동차에 적용되는 비율이 109분의 9로 낮아질 예정이다<sup>4)</sup>.

다섯째, 우리나라의 경우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간주매입세액공제에 다음과 같은 한도가 존재한다. 2010년 현재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는 자신이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0.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간주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간주매입세액공제제도의 도입 목적 및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동 제도를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의 한계로 인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인 장치, 즉 기준조세체계의 일부로 인식하기보다는 특정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혜적인 규정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간주매입세액공제제도의 적용비율을 낮춤으로써 '세금감면 혜택'의 규모를 축소하는 법개정과 일몰규정 및 조세지출보고서상 조세지출항목으로 간주되고 있는 점들로부터 추론할 수 있다. 둘째, 동 제도에 내재된 과세행정상의 한계로 인해 탈세에 취약하며, 이는 많은 규제 및 세법의 복잡성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당매입세액공제를 축소하고자 적용대상 물품을 제한하고 있고, 탈세로 인한 세수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적용비율을 지속적으로 낮추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간주매입세액공제제도는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의 한계인 이중과세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인 장치, 즉 기준조세체계의 일부로 인식하기보다는 특정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례규정으로 도입된 특징이 있다.

4) 현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간주매입세액공제제도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나 일몰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표 1〉 우리나라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간주매입세액공제제도의 변천**

시행	'93년	'95년	'96년	'97년	'98년	'00년	'02년	'04년	'06년	'07년	'10년	
적용대상 사업자	1. 고물상의 영업을 받은 자 2. 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한 자 3. 중고자동차매입허가를 받은 자 4. 한국자원재생공사 5.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sup>1)</sup>											
적용대상 물품	고철·폐지·폐유리·폐합성수지·폐합성고무·폐금속캔·폐건전지·중고자동차, 폐비철금속류 <sup>1)</sup> 페타이어·폐섬유·폐유 추가 <sup>2)</sup> (총 12 물품)											
적격 공급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포함)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과세특례자 추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과세사업 영위하지 않는 자)											
적용비용	10/110											
한도	8/108 중고차: 10/110 <sup>7)</sup> 기타: 8/108 재활용폐자원 공제한도 <sup>9)</sup>											

주: 1) 1994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적용, 2) 1996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 3) 2번, 1998년에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받은 자 또는 폐기물재생처리업 신고자로 수정되었고, 2003년부터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재활용품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 및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수정됨, 3번: 중고자동차매입 등록자, 4) 1998년 9월 31일 이후 최초로 중고자동차를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2001년부터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로 수정, 5) 1999년 12월 28일 법개정을 통해 과세특례자란 명칭을 간이과세자로 변경하고, 기존의 간이과세자 규정은 삭제, 6) 2004년 7월 1일부터 한국환경자원공사로 변경, 2010년부터는 한국환경공단으로 변경, 7) 2004년 제1기부터 적용하고, 2005년 7월 13일 법 개정시 시행령에 규정되었던 적용비용을 법에서 규정, 8) 2006년 제1기부터 적용대상 물품을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으로 구분한 후 기존 12/100 물품 중 중고자동차만(중고품이 아닌)으로 분류, 또한 2010년부터는 중고품이라는 구분명 삭제, 9) 재활용폐자원에 한하여 매출액의 80%에서 세금액산사가 있는 매출액을 차감한 금액을 간주매입세액공제의 한도로 설정

## 2. 마진제도방식: EU의 사례

EU의 경우 회원국 간 부가가치세의 틀을 일치시키기 위해 1977년 5월 17일 소위 '6차 부가가치세 지침(the Sixth VAT Directive)' 이라 불리는 Directive 77/388/EEC를 제정하였다. 동 지침의 제32조에서는 EU 각료이사회(Council of Ministers)로 하여금 1977년 12월 말까지 중고품·예술품 등에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과세체계를 마련하여 이중과세 및 경쟁의 왜곡 문제를 해소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1994년에야 비로소 중고품(second-hand goods)·예술품(works of art)·골동품(antiques)·수집품(collectors' item)에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과세방식을 구축하게 된다<sup>5)</sup>.

EU가 중고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식으로 채택한 것은 마진제도방식이다. 마진제이란 적용대상 사업자의 판매가격(selling price)과 구입가격(purchase price)의 차이로 정의된 마진(margin)<sup>6)</sup>에서 그 마진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제한 과세대상 금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한 것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때 마진에서 그 마진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제한한다는 의미는 판매가격과 구입가격이 세포함가격이기 때문에 마진을 (1+부가가치세율)로 나누는 것으로 사실상 적용대상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나타낸다.

- 납부세액=마진× $\frac{1}{1+부가가치세율}$ ×부가가치세율
- 마진=(판매가격-구입가격)

EU의 부가가치세 지침에서는 판매가격을 적용대상 사업자가 고객이나 제3자로부터 받은 대가(consideration)가 되는 모든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거래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보조금, 세금, 관세, 부담금 및 수수료·포장비·운송비·보험료 등 고객이 부담하는 부수적인 비용을 포함한다. 그러나 조기 지불금에 대한 할인 성격의 가격인하 금액, 공급시점에 고객에게 주어진 가격할인 및 리베이트 금액 등은 판매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부가가치세 지침에서는 구입가격을 적용대상 사업자가 그의 공급자에 대가로 준 모든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때 구입가격에서 대가로 간주하는 것은 판매가격에서 정의한 대가의 범위와 동일하다.

EU에서는

전단계세액공제방식 하에서  
중고품·예술품 등의 과세시  
나타나는 이중과세 및 경쟁의  
왜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5) EU 각료이사회는 1994년 2월 14일 본문에서 언급한 특별한 과세방식을 규정한 Directive 94/5/EC를 채택하여 기존 부가가치세 지침(Directive 77/388/EEC)을 보완시켰다.

6) EU의 부가가치세 지침에서는 판매가격에서 구입가격을 뺀 것을 이윤마진(profit margin)란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

중고자동차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가상적인 상황을 통해 통상적인 과세방식, 간주매입세액공제 방식 및 마진제도방식 간의 세부담 및 세수입 측면에서의 비교 분석을 수행한다.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으로 전단계세입공제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EU가 마진 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이중과세 문제 및 이로 인한 경쟁의 왜곡 문제를 완화하기 위함이다. 통상의 부가가치세 과세방식하에서는 세금이 부과되었던 재화를 소비자로부터 중고 수집상이 구입한 후 다른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런 문제는 전단계세입공제방식하에서 중고 수집상이 비사업자로부터 중고품을 구입할 때 지불한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또한 이러한 이중과세의 문제는 중고품 부문에서 공급자가 사업자인 경우와 비사업자인 경우에 따라 판매가격이 달라지는 경쟁의 왜곡 문제도 유발한다.

EU의 최근 부가가치세 지침<sup>7)</sup>에 따르면, 마진제도의 적용대상 사업자(taxable dealer)는 자신의 경제적 활동 과정에서 재판매를 목적으로 적격 공급자로부터 적용대상 물품을 구입하거나 수입하는 과세사업자를 가리킨다. 적격 공급자는 비사업자,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및 마진제도를 적용하는 다른 중개사업자이다. 그리고 적용대상 물품은 중고품, 예술품, 수집품 및 골동품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중고품(second-hand goods)이란 현재 상태 그대로 또는 수리한 후에 추가적인 사용(further use)이 가능한 유형의 동산(tangible movable property)을 뜻한다. 이때 예술품, 수집품, 골동품 및 회원국에서 정한 귀금속과 보석은 중고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한편 예술품과 수집품의 경우 부가가치세 지침상 부록 9에서 해당 품목을 열거하고 있다<sup>8)</sup>. 골동품의 경우 예술품과 수집품에 속하지 않고 100년이 넘는 재화를 가리킨다.

한편 EU에서는 이상에서 설명한 마진제도를 중고품 등의 공급시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에게 통상적인 부가가치세 과세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 3. 비교분석

본항에서는 중고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식으로서 적용되는 있는 간주매입세액공제 방식과 마진제도방식을 소비자와 중개업자의 세부담 측면 및 과세당국의 세수 측면에서 비교분석을 행하고자 한다.

먼저, 간주매입세액공제방식과 마진제도방식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상정한다.

7) 여기서 최근 지침이란 2006년 11월 28일 제정된 '개편 부가가치세 지침(the recast VAT Directive, RVD)' 이라고 불리는 VAT Directive 2006/112/EC(2006년 12월 19일 Directive 2006/138/EC로 수정)를 가리킨다.

8) 예를 들면, 예술품은 예술가가 직접 손으로 작업한 사진(pictures), 콜라주(collages), 그림(paintings), 소묘(drawings) 등이며, 수집품은 우표(postage), 인지(revenue stamps), 소인(postmarks), 첫날 커버(first-day covers) 등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VAT Directive 2006/112/EC의 부록 9장(Annex IX)을 참조하기 바란다.

- A는 새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구입가격으로 1,000만원과 부가가치세 (단일세율 10% 가정) 100만원을 지불하였다.
- A는 일정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한 후 110만원에 B라는 중고차 중개업자에게 매각하였다.
- B는 동 자동차를 수리하여 200만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후 C라는 최종 소비자에게 재판매하였다.

#### 사례 2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방식으로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사용하는 통상적인 상황 하에서 재판매가 가능한 중고자동차를 비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로서 이중과세의 문제 및 경쟁의 왜곡 문제가 발생함을 보여주고 있다.

전단계세액공제방식하에서 이중과세의 문제가 존재함을 보이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하자. 사례 1은 A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고 가정하여 중개업자 B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이다. 사례 2는 비사업자 A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개업자 B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는 간주매입세액공제방식 또는 마진제도방식과 같은 중고품 등에 대한 특별한 과세방식을 도입하기 전의 경우에 해당한다.

아래의 <표 4>의 상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례 1의 경우 중개업자 B의 매입액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0만원이고, 부가가치는 가정에 따라 200만원이며, 매입액과 부가가치의 합인 매출액은 300만원이 된다. 이 경우 중개업자 B의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30만원에서 매입세액 10만원을 공제한 20만원이 된다. 그리고 최종 소비자 C가 지불하는 가격은 부가가치세 30만원을 포함 330만원이 된다. 한편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은 신차 구입 시 거둬들인 100만원과 중고차 판매 시 거둬들인 20만원을 합하여 총 120만원이 된다.

이에 반하여 <표 4>의 하단에서 제시한 경우인 사례 2는 중개업자 B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보여준다. 이런 상황하에서 중개업자 B의 매입액은 110만원이 된다. 따라서 매출액은 310만원이고 최종 소비자 C가 지불하는 가격은 부가가치세 31만원 포함 341만원이 된다. 따라서 사례 2의 경우 최종 소비자 C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액에는 과거 비사업자 A에게 과세되었던 세금 10만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 결과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은 신차 구입 시 거둬들인 100만원과 중고차 판매 시 거둬들인 31만원을 합하여 총 131만원이 된다.

본절에서 상정한 가상 상황의 경우 총 경제적 부가가치는 새 자동차 구입까지의 부가가치 1,000만원과 중개업자 B의 부가가치 200만원의 합인 1,200만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간주매입세액공제방식을  
도입한 경우(사례 3) 세제상  
혜택은 중개상에게 귀속되어  
최종소비자의 세부담은 여전히  
정상적인 상황(사례 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중과세 및 경쟁의  
왜곡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원이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최종 거래단계까지 창출된 경  
제적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따라서 통상적인 경우  
국가가 부가가치세로 징수하는 세금은 120만원이어야 한다. 그러나 부가가치  
세의 과세방식으로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취함에 따라 재판매가 가능한 중고  
품을 비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총 131만원의 세금을 징수하여 이중과세의  
문제를 야기한다.

〈표 2〉 전단계세액공제방식하의 이중과세 문제: 중고품의 경우

(단위: 만원)

거래 단계	매입액 ①	부가가치 ②	매출액 ③ = ① + ②	명목세율 ④	매출세액 ⑤ = ③ × ④	매입세액 ⑥	납부세액 ⑦ = ⑤ - ⑥	공급대가 ⑧ = ③ + ⑤	세부담 및 세수비교
사례 1. A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서 B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									
A	-	100	-	10%	10	-	-	110	A = 90 B = 0 C = 30 국 = 120
B	100	200	300	10%	30	10	20	330	
계	-	300	-	-	-	-	20	-	
사례 2. A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간주매입세액공제 방식이나 마진제도방식이 도입되지 않은 경우									
A	-	-	-	-	-	-	-	110	A = 90 B = 0 C = 41 국 = 131
B	110	200	310	10%	31	-	31	341	
계	-	300	-	-	-	-	31	-	

주: 세부담 및 세수 비교에서 '국'은 국세청을 의미하며 수치는 국가의 세수입을 나타낸다. 국가의 세수입은 A가 처음 자동차를 살 때 부담한 세금인 100만원을 포함한다.

아래의 〈표 5〉는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들 간의 세부담 및 세수입의 차이를 나타낸다. 먼저, 〈표 5〉의 상단은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간주매입세액 공제방식을 도입한 경우(사례 3)를 나타낸다. 간주매입세액공제방식하에서 중개업자 B의 매입액은 110만원이 된다. 따라서 매출액은 310만원이고 최종 소비자 C가 지불하는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 31만원 포함 총 341만원이 된다. 따라서 최종 소비자 C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액은 41만원이 되어 앞의 사례 2와 동일하다. 반면 중개업자 B는 간주매입세액으로 10만원(=110만 ×  $\frac{1}{110}$ )을 공제받아 사실상 그 금액만큼 세제지원을 받는 효과가 존재한다. 국가가 징수한 총세금은 세제지원 금액만큼 감소한 121만원이 된다.

간주매입세액공제방식의 한계는 여전히 국가가 마땅히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야 할 금액인 120만원보다 1만원 더 징수한다는 점이다. 이는 중개업자 B

의 매출액에 포함된 세금(10만원)에 붙었던 부가가치세(1만원)가 여전히 환급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중개업자 B가 국가로 환급받은 간주매입세액공제 금액(10만원)은 궁극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귀착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 결과 중개업자 B의 이윤은 자신이 창출한 부가가치 200만원과 간주매입세액공제 금액 10만원을 합한 210만원이 된다. 더 나아가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의 한계로 중고품 부문에 존재하는 경쟁의 왜곡 문제는 조금도 완화되지 않았다. 중고품을 중개업자에게 공급하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 동일한 조건하에서 공급대가가 330만원인 반면 간주매입세액공제방식을 도입하더라도 중개업자가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경우에는 여전히 공급대가가 341만원이 되기 때문이다.

〈표 5〉의 하단은 EU처럼 마진제도방식을 도입한 경우(사례 4)에 발생하는 세부담 및 세수 결과를 보여준다. 중개업자 B의 구입가격은 이전의 사례 2와 3의 경우처럼 110만원이다. 그리고 중개업자 B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200만원이다. 중개업자 B가 공급하는 중고차의 판매가격은 구입가격(110만원), 부가가치(200만원) 및 부가가치세의 합이다. 이때 부가가치세는 판매가격에서 구입가격을 뺀 마진에  $\frac{t}{1+t}$ 를 곱한 것이다. 여기서  $t$ 는 부가가치세율을 의미한다. 이 두 관계식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S = P + V + T \quad (1)$$

$$T = (S - P) \times \frac{t}{1+t} \quad (2)$$

여기서 S는 판매가격, P는 구입가격, V는 부가가치, T는 부가가치세액을 나타낸다. 이 두 관계식을 풀면 부가가치세액(T)은 부가가치(V)와 부가가치세율(t)의 곱과 같다. 따라서 중개업자 B가 공급하는 중고차의 판매가격은 330만원이고, 부가가치세액은 20만원(=200만원×10%)이 된다. 마진제도방식이 도입되면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은 총부가가치 1,200만원에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한 120만원과 동일해진다. 또한 최종 소비자 C가 부담하는 세금은 30만원이다. 그리고 중개업자 B의 이윤은 국가로부터의 지원금이 없으므로 자신이 창출한 부가가치 200만원이 된다. 이러한 결과는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사례 1의 결과와 동일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U처럼 마진제도방식을 도입한 경우(사례 4) 세제 혜택이 최종소비자에게 귀착되어 정상적인 상황(사례 1)과 동일한 세부담 및 세수 결과를 낳고 있다.

간주매입세액공제방식과  
 마진제도방식 간의 세부담  
 및 세수 측면의 비교 분석은  
 마진제도방식이 중고품 등의  
 거래에서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더욱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표 3〉 간주매입세액공제 방식과 마진제도방식의 비교

(단위: 만원)

사례 3: 간주매입세액공제방식(적용비율 10/110 가정)을 도입한 경우

거래 단계	매입액 ①	부가가치 ②	매출액 ③ =①+②	명목세율 ④	매출세액 ⑤ =③+④	매입세액 ⑥ =①× $\frac{1}{110}$	납부세액 ⑦ =⑤-⑥	공급대가 ⑧ =③+⑤	세부담 및 세수 비교
A	-	-	-	-	-	-	-	110	A = 90
B	110	200	310	10%	31	10	21	341	B = -10
계	-	300	-	-	-	-	21	-	C = 41 국 = 121

사례 4: 마진제도방식을 도입한 경우

거래 단계	구입가격 ①	부가가치 ②	매출액 ③ =①+②	세액 ④	판매가격 ⑤ =③+④	마진 ⑥ =⑤-①	납부세액 ⑦ =⑥× $\frac{1}{110}$	세부담 및 세수 비교
A	-	-	-	-	110	-	-	A = 90
B	110	200	310	20	330	220	20	B = 0
계	-	300	-	-	-	-	20	C = 30 국 = 120

주: 세부담 및 세수 비교에서 '국'은 국세청을 의미하며 국가의 세수입을 나타낸다. 국가의 세수입은 A가 처음 자동차를 살 때 부담한 세금인 100만원을 포함한다.

간주매입세액공제방식과 마진제도방식 간의 세부담 및 세수 측면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마진제도방식이 중고품 등의 거래에서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더욱 효과적인 방식이라는 점이다. 간주매입세액공제방식의 경우 최종 소비자의 세부담은 통상적인 경우보다 커지는 반면, 중개업자는 통상적인 이윤보다 더 많은 이윤을 누릴 수 있는 왜곡이 존재한다<sup>9)</sup>. 또한 중개업자의 매출액에 포함된 세금을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민간경제로 환급되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 특히 간주매입세액공제방식하에서는 최종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이 중고품을 누구로부터 구입했는가에 따라 상이해져서 경쟁의 왜곡이 여전히 존재한다.

### III. 결론

본고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방식으로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한 나라들이 중고품 등에 대한 과세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는 간주매입세액공제방식과 마

9) 여기서 '통상적인'의 의미는 중고품을 중개상에 공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

진제도방식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간주매입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하는 대표적인 나라인 우리나라와 마진제도방식을 적용하는 대표적인 사례인 EU의 경우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전단계세입공제방식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두 방식을 적용한 결과를 소비자와 중개업자의 세부담 측면 및 과세당국의 세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소비자와 중개업자의 세부담 측면 및 과세당국의 세수 측면에서 간주매입세액공제방식과 마진제도방식을 비교·분석한 결과, 중고품 등의 거래에서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의 미비점을 가장 잘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마진제도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주매입세액공제방식의 경우도 이중과세의 문제를 일정 수준 완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다음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중개업자는 세제상 지원을 통해 통상적인 이윤보다 더 많은 이윤을 누릴 수 있다. 둘째, 최종 소비자의 세부담은 중개업자에 대한 지원금이 전가됨에 따라 전단계세입공제방식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보다 높아진다. 셋째, 중개업자의 매출액에 포함된 세금에 붙여진 부가가치세는 민간경제로 환급되지 못하여 이중과세의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되지만 여전히 존재한다. 넷째, 중개업자가 중고품을 누구로부터 구입했는가에 따라 상이한 세금으로 인해 중개업자가 재판매하는 물품의 공급대가 달라짐에 따라 경쟁의 왜곡은 여전히 존재한다.

한편 EU와 우리나라의 제도상 차이를 통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간주매입세액공제제도의 도입목적이 중개업자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함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부가가치세의 세부담이 궁극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귀착됨을 고려할 때 중개업자에게 세제를 통하여 보조금을 제공하는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해석은 간주매입세액공제방식의 적용비율 축소, 일몰규정 설치, 적용대상 제한 등과 같이 간주매입세액공제의 혜택을 축소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된 최근 정부의 세법개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간주매입세액공제제도를 폐지 가능한 보조금제도, 즉 조세지출항목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대상축소·일몰규정 설치 등 혜택을 축소하는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폐자원의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sup>10)</sup>. 따라서 세계 측면에서도 중고품 부문에 존재하는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최종 소비자 가격의 인상 효과를 완화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물론 간주매입세액공제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중개업자 지원이라는 기능뿐만 아니라 이중과세의 문제를 완화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 그렇지만 전단계세액

간주매입세액공제방식의 경우도 이중과세의 문제를 일정 수준 완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경쟁의 왜곡 문제는 계속 존재하며 세제지원 혜택이 최종소비자가 아닌 중개업자에게 귀착되는 한계가 있다.

10) 이명박정부에서는 2009년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2010년 3월 22일 국내 폐금속 자원의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전 세계적인 자원·에너지문제에 대처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발표하였다.

최근 정부가 폐자원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의 한계로 인한 최종 소비자 가격의 상승 문제를 해소하는데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제도인 마진제도로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도 전환과 더불어 적용대상 물품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공제방식의 미비점으로 인한 최종 소비자 가격의 상승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EU에서 실시하고 있는 마진제도가 훨씬 효과적인 방식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점진적으로 전단계세액공제방식에서 마진제도방식으로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제도를 전환함에 따라 징세행정비용 및 납세협력비용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고, 기존에 이득을 누렸던 계층의 이익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계적인 전환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면, 향후 일정기간(예, 3년간)은 마진제도와 간주매입세액공제제도를 병행·실시하고, 상대적으로 간주매입세액공제제도의 혜택을 축소하여 마진제도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 적용대상 물품이 중고자동차를 포함하여 12품목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세제를 통한 지원금 지급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좁게 설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EU처럼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의 미비점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소하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적용대상 물품의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적용대상 물품을 확대하는 것은 자원·에너지 문제 및 녹색성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시대상황에 적합하다고 본다.

셋째, 우리나라의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간주매입세액공제방식의 적용과 관련된 탈세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적용대상 물품의 범위를 축소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올해부터는 신차를 중고차로 위장해 수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고된 지 1년 미만의 중고차는 적용대상 물품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성실한 중개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등 형평성의 문제를 유발한다. 또한 이런 조치는 간주매입세액공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 차량 보유기간을 억지로 늘리는 등의 효율성 측면에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 탈세문제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성실한 사업자도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조치보다는 세무조사 등 행정력 강화와 탈세예방 인프라 구축 등의 방안들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IP**

### <참고문헌>

김영환, 『부가가치세 실무해설』, 세경사, 2007.  
 박명호·홍범교·김승래, 『금융·보험 및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면세제도 개선 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7.  
 EU, VAT Directive 2006/112.

Pearce, S., and S. Taylor, *British Tax Guide: Value Added Tax 2006-7*, CCH, 2006.

Terra, B., and J. Kajus, *A Guide to the European VAT Directives: Introduction to European VAT 2009*, Volumn 1, IBFD, 2009.

# 해외부동산투자와 조세정책적 시사점: 상하이시 주택투자사례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yhrut@kipf.re.kr)

부동산의 시장가격 변동의 국가 간 상관관계수가 낮다는 사실은 다른 한편으로는 해외부동산에 대한 직·간접투자를 통해 자산구성위험도를 낮추는 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 I. 서론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는 2007년 미국 주택금융시장의 서브프라임론(Sub-prime Loan)과 이에 기초한 파생금융상품의 부실에서 촉발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따라 각국의 거시경제 통화당국은 자국의 경기회복 시점 파악을 위해 주택시장 동향에 대한 관심이 급등하였지만, 주택 등 부동산시장 가격동향을 국제 비교해보면 국가 간 동조화(coupling)의 경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sup>1)</sup>. 이는 부동산이 ‘위치고정적 특성(locational attributes)’을 갖고 있어서 비교역재(home goods)적 성격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금융자산과 비교해서 부동산의 시장가격 변동의 국가 간 상관관계수가 낮다는 사실은 다른 한편으로는 해외부동산에 대한 직·간접투자를 통해 자산구성 위험도(portfolio risk)를 낮추는 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sup>2)</sup>.

즉, 단일국가·단일통화 표시 자산에 집중하여 투자하는 행위는 위험성을 높이므로, 우리나라와 같은 개방소국의 경제주체들은 글로벌경제 체계로의 편입이 가속화될수록 자산 구성의 국제적 분산이 필요하며, 정부는 이러한 개별 경제주체들의 행위를 뒷받침할 외환 및 조세제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부동산에 대한 국가 간 분산투자행위는 해외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보취득 및 거래비용 등 비용 측면과 위험분산이라는 변익 간에 상충관계가 존재하므로, 영국과 네덜란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자국의

1) 노영훈(2009) 참조.  
2) Eichholtz, P.M.A., Koedijk, C.G., and M. Schweitzer (2001)

내국거주인에 의한 해외부동산 투자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sup>3)</sup>.

본고는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한 국내의 조세정책문제’라는 연구를 위해 중국 상하이시에 체류하면서 부동산시장 및 관련 각종 규제와 금융 및 세제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1년여 이상의 시간 및 비용을 지불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주택이라는 가장 단순한 유형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내국거주인이 취득한 사례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해외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는 2010년 말까지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유예조치 연장 여부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글로벌경제시대에 투자목적용 해외부동산 취득도 이미 허용한 상황에서 내국거주인에 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임시방편적)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제도를 어떻게 개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정책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한편 금년에 남유럽국가들의 재정위기 사태가 대두된 이후 세계경제의 회복 징후를 기늠하는 데 있어서 세계 제2위 경제국인 8~10%대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경제에 대한 기대가 높으면서 위안화 절상의 시기와 폭을 둘러싸고 국제적 대립이 첨예한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중국경제 내에서의 부동산시장, 특히 주택부문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위안화 절상은 주요 선진국들이 중국정부를 상대로 인플레이 억제와 출구전략수단으로서 위안화 절상을 권고하면서 시기를 놓칠 경우 대규모 핫머니가 유입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는 등 국제적인 관심사안이다. 즉, 2010년 2사분기까지 중국경제는 견조한 회복국면(Solidly based rebound)을 보이다가 6월 18일 위안화 변동폭 확대 결정발표(yuan flexibility decision: 위안화·달러간 1일 0.5% 범위내 관리변동환율제로의 개선 발표)를 하게 되고, 그 이후 국제적 불균형 회복 문제에서 중국 부동산시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등 전 세계의 이목이 중국 경기회복 및 부동산시장 문제에 쏠려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중국정부는 민간내수분야 중 주택 등 고정자산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2010년 1/4분기까지 과열현상을 보였던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유동성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긴축적 거시경제정책을 운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부동산부문에 기인한 거시경제지표의 둔화현상은 최근에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해 주식시장은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sup>4)</sup>.

본고는 글로벌 주택자산 투자가 현행의 중국 및 우리나라 제도하에서 어느 정도나 가능한가를 상하이시를 대상으로 (미시적) 개인의 주택투자 사례연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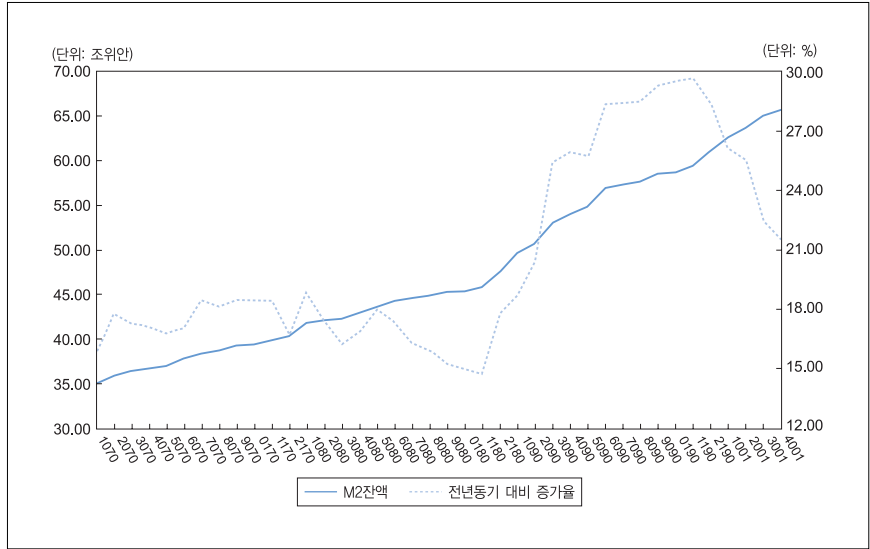
글로벌 주택자산 투자가 현행의 중국 및 우리나라 제도하에서 어느 정도나 가능한가를 상하이시를 대상으로 (미시적) 개인의 주택투자 사례연구를 통해 가능해 보고자 한다.

3) 노영훈(2009) '외환폭탄'의 학습효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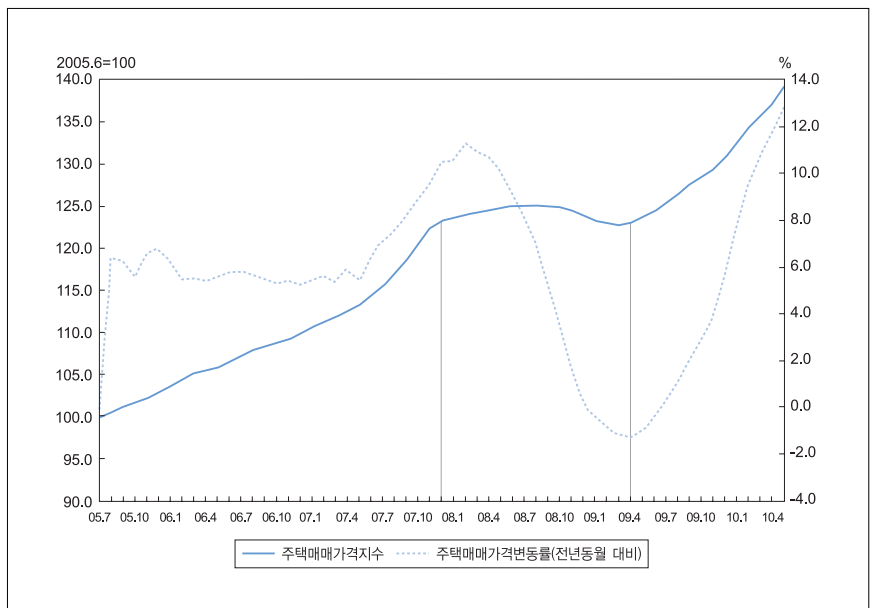
4) 2010. 6. 29일 상하이종합지수는 2,500선을 지지하다가 4.27% 급락한 2,427.05로 마감하여 연중 최저점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 배경에는 중국경기선행지수를 조사하는 Conference Board가 중국의 건물착공 면적을 계산할 때 오류가 있었음을 시인하면서 4월 경기선행지수 증가율을 기존 발표치인 1.7%에서 0.3%로 하향조정한다는 발표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여, 부동산분야가 향후 경기회복 둔화의 선행지표로 사용하는 중요성을 반영하기 때문임.

통해 가늠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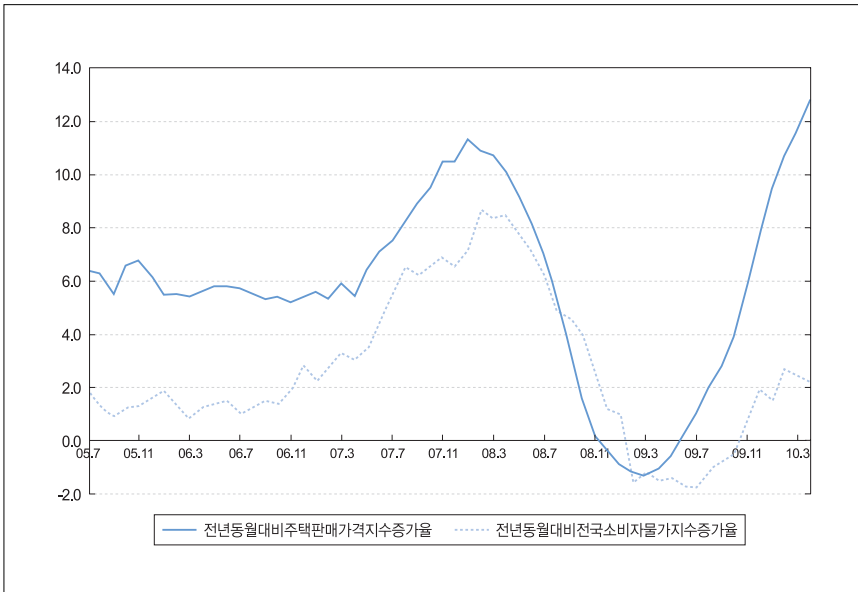
[그림 1] 중국의 통화량 공급



[그림 2] 중국 주택가격지수와 변동률



[그림 3] 주택매매가격과 소비자물가 변동률



세계 금융위기 발발 이후 2009년 2월부터 중국정부는 21~30%라는 엄청난 통화증가율을 통해 경기회복에 나서게 되고 2008년 하반기 이후 안정적이었던 주택가격은 그 영향으로 2009년 4월 이후 폭등하게 되어 전년동기 대비 13% 증가율을 보이게 된다.

## II. 중국 대도시 부동산시장

중국의 대도시 부동산시장은 높은 경제성장과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초과수요적 특성을 1990년대 말부터 보이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주요 다국적 부동산 투자(자문)회사들은 이미 1990년대부터 중국 대도시에 진출하여 시장조사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국가통계국의 공식적인 시장지표들과 함께 이들 민간조사업체들의 자료들도 병행하여 시장동향을 분석해야 한다<sup>5)</sup>.

먼저 국가통계국의 중국 주요도시 주택가격지수는 2006년 이후 70개 중소 및 대도시들에서 10,000 단위 정도의 표본을 대상으로 매월 주택 매매, 임대, 토지거래 등의 거래량 및 가격을 수집하여 상향(bottom-up)식으로 전국 지수화하였는데, [그림 2]는 도시지역 주택가격지수와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 금융위기 발발 이후 2009년 2월부터 중국정부는 21~30%라는 엄청난 통화증가율을 통해 경기회복에 나서게 되고 2008년 하반기 이후 안정적이었던 주택가격은 그 영향으로 2009년 4월 이후 폭등하게 되어 전년동기 대비 13% 증가율을 보이게 된다([그림 2] 참조).

5) 외국계 부동산판매관리회사들로 Century21, CB Richard Ellis, Cushman & Wakefield, DTZ 등이 있는데, 중국내 개발업자들은 선진화된 부동산판매관리 및 컨설팅을 위탁하고 있으며, 그 결과 화위안(華遠) 부동산그룹 같이 중국계 부동산컨설팅업체들도 시장조사활동을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통해 발표하고 있음. 외국계투자자들은 상하이시의 경우 도심으로부터의 원근을 기준으로 내환선, 중환선, 외환선 구간으로 나누어 단위면적당(per square meter) 매매시세 및 임대료를 시장지표로 삼는데, 고급주택의 경우 3~4만 위안/m<sup>2</sup> 이상을 말하며, 최근 신축한 상하이국제금융센터의 경우 업무용 임대료는 33 USD/m<sup>2</sup>로 상하이 최고 오피스임대료 수준은 평당 월 40만원임. CBRE\_MktView(2010-1Q).pdf 참조

중국도 주요 도시  
주택매매가격의 시간적  
변화를 살펴보면 상하이시와  
그 외 대도시들 간에는  
지역적인 차이를 크게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 중국 대도시 주택시장의 이해

외관상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부동산 모두 물리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시장내 수요와 공급을 구성하는 각종 법·제도적 그리고 그에 따른 경제학적 구성 내용은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하므로, 제도적 요인들(institutional factors)의 차이에 기초한 경제학적 분석이 병행되어야 한다. 즉, 중국의 토지는 모두 원칙적으로 국가가 소유하므로 중국 대도시 내 주택이 들어서는 주택용지는 주택개발시 지방정부로부터 장기(70년) 임대료(토지출양금)를 지불하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우리나라에서와 같은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시장요인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중국에서도 공동주택 노후화 후 재건축 필요에 따라 건물멸실이 발생하는데, 개별 공동주택소유자에 대한 개발업자의 건물보상은 있어도 기존 소유자의 대지권지분 변동에 따른 관리청산계획 등은 있을 수 없어서 개발이익의 사유화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상하이시 푸둥지역 루지아취 지역은 1990년대 초 푸둥 개발 당시 지어졌던 아파트들이 노후화하여 금융중심지로 재개발되면서 재건축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지만 건물소유자에 대한 보상만 이루어질 뿐이다.

신축분양의 경우 기본은 내부장식이 없는 상태(毛胚: 마오페이<sup>6)</sup>)가 원칙이었으나 2004년 이후 착공 아파트부터는 기본 실내장식을 의무화 하는 등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고, (구분)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대금결제가 종료되어 인도리스크를 구매자 및 은행이 지며 아파트 완성 전에도 예고등기를 통해 전매가 가능하였었다. 또 주택은 보통주택과 상품주택으로 구분하는데, 전자는 과거 정부나 공공부문으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거나 소규모인 주택을 말하며 일정규모 이상으로 시장에서 구입한 주택은 상품주택이라고 한다.

일본 및 한국에서의 대도시 주거용 부동산시장 발전과정에서 나타났던 경험들을 참고하면 향후 중국의 국제화된 연안 대도시 내 주거용부동산 발전 양태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주거서비스의 편의를 강조한 호화 고층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수요 및 공급도 조망(River or Ocean view), 도심공공시설 및 지하철 등 편의시설(urban public facilities etc, amenities)과 같은 위치적 특성(locational attributes)에 대한 수요자의 지불 용의가 높아져 이러한 지역의 주택가격의 상승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동호인 집단문화(Community oriented trend)에 따른 고급 타운하우스(town house)나 별장형 주택(villa) 등 다양한 주택유형들이 형성되고 있다.

중국도 주요도시 주택매매가격의 시간적 변화를 살펴보면 상하이시와 그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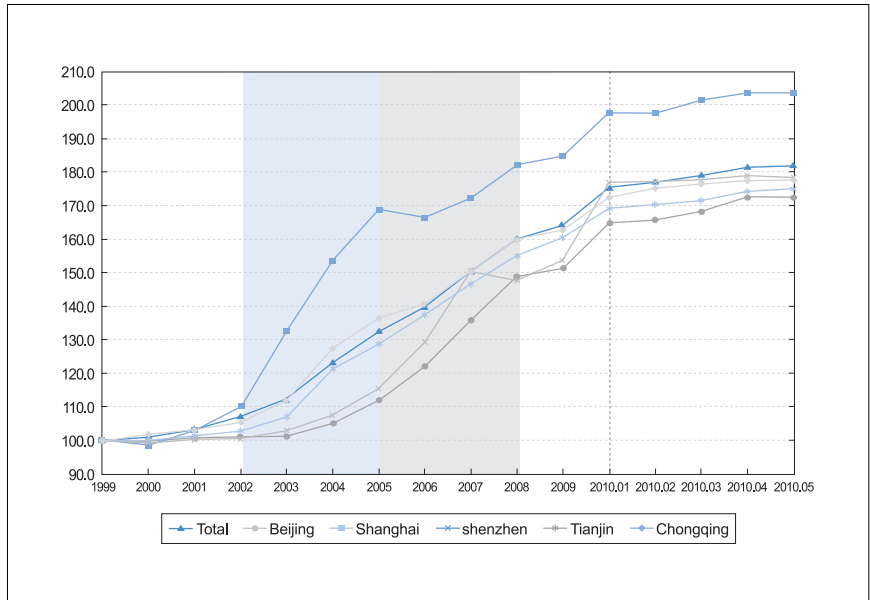
6) 아파트건물의 경우 콘크리트 외부 골조에 내부에는 전원콘센트, 배관 이외에는 전혀 없는 상태임.

대도시들 간에는 지역적인 차이를 크게 보이고 있음을 [그림 4]를 통해 알 수 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상하이시 주택가격은 평균 55% 상승한 반면 베이징, 충칭, 톈진, 선전 등은 모두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26% 이하 수준이었다. 반면 2006년부터 2008년 말까지의 3년간은 베이징올림픽의 영향으로 베이징이 33% 상승하는 반면 상하이는 7% 상승으로 침체하다가, 그 이후 2009년 1년 동안은 모든 지역이 급등한 후 올해 2월 이후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이다. 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1년여 간의 직할시 이상 주요 도시 주택가격 상승은 중국의 거시경제정책 변화에 기인하는데, 중국 중앙정부는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대의 통화공급을 하면서도 지급준비율 조절을 통해 민간부문에 신용공급을 하면서 인위적인 저이자율정책을 추구한 결과 자산수요가 급증하였고 2009년 1년에 한해 거래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가 취한 한시적인 주택영업세 감세조치의 영향을 받아 거래가 폭등하였다.

중국정부는 대규모 통화공급에 따른 인플레이 우려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저소득층 대상 생필품 등 코어소비자물가지수(core CPI) 중심으로 물가 관리에 치중하며, 자산가격 특히 대도시 주택시장가격 급등과 핫머니 유입가능성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 성향을 보였다. 그러다가, [그림 3]에서 나타나듯이 확장적 통화정책이 소비자물가 상승보다는 대표적 자산인 주택의 가격 상승으로 나타나 중앙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금융을 제한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화정책을 펼치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은 도시인구 유입에 따라 여전히 대규모 신규주택공급이 이루어지는 국가이므로 다른 나라에 비해 신규주택분양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고, 재건축을 기대한 아파트가격 상승 요인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 중국 주요 도시의 주택매매가격 변동 추이



### Ⅲ. 중국 부동산거래시장과 관련 법적

#### 1. 부동산시장의 제도적 특이성들

주택시장을 중고주택시장(二手房, second-hand housing market)과 신규주택분양시장(new home sales market)으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 중국은 도시인구 유입에 따라 여전히 대규모 신규주택공급이 이루어지는 국가이므로 다른 나라에 비해 신규주택분양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고, 재건축을 기대한 아파트가격 상승 요인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규주택분양보다 중고주택매매 시에 위험부담이 커지는 요인들을 살펴보자. 매매계약 체결 시 매도자가 진정한 소유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집문서라고 할 수 있는 권리증(房產證)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 작성 전 등기소(房地產交易中心)에서 등기부등본(登記信息)을 발급받아 계약당사자가 소유자인지, 공유소유자 없는지, 저당 및 압류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공유자가 계약 당시 불참할 경우에는 불참석 공유자가 거래업무를 위탁한다(代爲 交房)는 내용의 '공증된 위탁서'

를 지참한 대리인을 포함하여 전 소유자들이 참석하여 자필사인하는 방식으로 계약서가 작성되며, 매도인의 신분확인 시 호구주소가 동 부동산에 있을 경우 계약서에 호구주소 이전의 시간을 명확히 해야 하며, 저당 및 압류가 있을 경우, 계약 체결 후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으로 동 저당을 변제하거나 동 압류를 해지한다는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제3의 임차인에게 임대되어 있는 중고주택의 매매거래시에는 임차인의 동 부동산에 대한 구입의사가 없음을 확인하는 증명도 있어야 하는데, 중국에서는 부동산 매매시 동 부동산을 점유하는 임차인에게 같은 조건의 매매가에 우선 매수권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등기제도는 '토지관리법'에서 토지등기를, '도시의 사유건물관리조례'에서 도시사유주택의 등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거래 및 등기 관련제도를 살펴보자. 중국의 등기제도는 '토지관리법'에서 토지등기를, '도시의 사유건물관리조례'에서 도시사유주택의 등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거래는 토지사용권거래와 지상물거래 즉, 토지는 사용권을 거래하고, 건물은 소유권을 거래하는 것이다. 부동산등기증은 분양 후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길게는 1년 가까이 걸릴 수 있다.

과거 중고주택 구입 시 같은 날 등기, 결제를 할 수 없었으나, 상하이시는 2008년 6월 23일 이후 "중고주택 거래 자금 관리감독" 시스템을 시범 실시하여 은행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중고주택 매매 수속을 밟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즉, 과거에는 중개회사가 중고주택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개, 조정, 자금관리감독 등 제반 업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으나, 새 제도는 은행이 자금안전과 자금이체를, 중개회사는 소개 업무와 제반 수속 업무를 책임지는 것으로 책임을 구분하여, 자금 관리감독 시스템은 상하이 부동산교역센터가 중고주택의 이전등기를 책임지고, 상하이 부동산국과 상하이 부동산교역센터가 설립한 상하이 부동산교역자금관리회사가 은행과 중개회사, 중고주택 매매 쌍방간의 관계를 조정하도록 하였다.

좨안제(轉安揭)란 은행의 승낙을 전제로 하여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대출 채무를 이전하는 것으로 한국 법률에는 없는 개념이다. 중국의 은행은 무담보의 부동산용자는 법률로 금지되어 있으며 <저당권설정등기>(등기가 담보설정의 효력요건)나 <보증회사로부터의 보증>이 확인되지 않으면 용자를 실행할 수가 없으며, 부동산 거래센터도 양도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저당채무가 완료되어 저당권이 말소되든가 좨안제(轉安揭)가 되지 않으면 소유자 명의의 이전등기 절차를 수리하지 않는다. 띠야(抵押)란, 한국의 저당권에 해당하는 권리로 '채무자가 재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당해 재산을 채권의

2007년 3월 8일  
 전국인민대회  
 5차회의에서 초안이  
 발표된 후 16일 물권법이  
 통과되어 대도시소재  
 주택(대지+주거용건물)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 채무불이행시 채권자는 당해 재산을 금전평가하거나 경매 또는 환금한 대금에서 우선 변제받는 권리를 갖는다. 다만, 토지소유권, 집단소유의 토지사용권, 사회공익시설은 저당물이 될 수 없다<sup>7)</sup>.

주택 공급에 필수적인 대지는 공개입찰을 통해 정부로부터 토지사용권을 획득하여 확보하는데, 토지사용기간은 주택은 70년, 문화상업용지는 40년, 사무용지는 50년, 공업용지는 30~40년이며, 해당 기간 중에는 개발부동산을 거래하거나 담보로 활용할 수 있다. 토지사용기간의 만료 후 부동산처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었으며, 중국정부는 토지사용세나 토지출량금 납부를 통해 사용권리를 연장한다는 입장을 취했었다. 그러나 2007년 3월 8일 전국인민대회 5차회의에서 초안이 발표된 후 16일 물권법이 통과되어 대도시소재 주택(대지+주거용건물)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결국 사용권 연장보다는 재산세(property tax) 등 부동산보유세 부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2007년부터 물업세 논의가 본격화되어 베이징, 선전, 장쑤 등 7~10개 도시/성에서 시범 실시 및 징수 모의프로그램 운영 등 형식적으로 존재하나 국가세무총국이 의견수집 및 평가 단계중에 있다. 중국도 향후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안정화정책으로 보유세제를 활용할 수 있는 법률적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 2. 해외부동산 직접투자의 수익률 구조

해외부동산 취득은 외화표시자산(foreign-currency denominated asset)에 대한 직접투자이다. 따라서, 세전 투자수익률은 이론적으로는 아래의 3가지 구성요소들을 통해 극대화시킬 수 있다. <표 1>은 상하이시 소재 상품주택을 취득 및 양도시점에서 위안화 환율, 주택가격, 주택대출통화로서의 달러환율을 예시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표 1> 중국주택투자 수익률 분해

	취득시점	양도시점	변동률 (rate of change % △)
위안화	7.35rmb/\$	6.82rmb/\$	7.77
주택가격	¥500만	¥750만	50
달러화	930원/\$	1,250원/\$	-25.6

7) 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 제33조

먼저, 투자자가 한국인이라고 가정할 경우 투자대상국 통화인 위안화의 원화(KRW) 대비 환율변동 예상폭은 126.5원/rmb(=930/7.35)에서 양도시점의 183.3원/rmb로 45%에 달한다. 또한 해당국 주택가격이 취득시점의 500만 rmb에서 양도시점에는 750만 rmb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면 주택가격 상승률은 50%이다. 마지막으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는 통화를 미 달러화로 선택하고 구입가액의 50%를 대출받으면서 15년 만기의 연 4.5% 변동금리모기지를 상정한다면 취득시점에는 32만 미달러화에 해당하는 저당대출잔고가 원리금 상환부분을 제외하고도 부채가치가 하락한다.

수익률 계산의 기준통화(baseline currency)를 원화(KRW)로 잡을 경우, 중국 부동산에 대한 직접투자는 rmb/W 환율에 영향을 받는데, 매수와 매도 양시점에서  $(\$/rmb)/(\$/W)=(W/rmb)$  관계가 중국의 경우 관리변동환율제(managed floating systme)에서 2007년 8월 이후 사실상 6.82rmb/\$ 수준의 고정환율(pegged rate)로 바뀌어 매도시점 수익률 변화는  $\$/W$ 에 달려 있게 되어 가치절하 통화로 대출받아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은 기대할 수 없었다. 그러나, 2010년 6월 18일 이후 양도시점을 고려하는 상황에서는 값어치 떨어지는 통화로 빚을 얻어 절상하는 통화로 표시된 자산을 구매하면서 자산가격상승을 노리는 전략은 과거 2007년 8월 시점까지와 2010년 6월 이후 모두 유효하게 된다.

한편 세후수익률은 중국의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단계에서의 각종 세금과 한국에서의 해외부동산 보유 및 양도단계 세금들이 감안되어 결정되며, 기본과 세제도 이외에 양국의 시장대책적 한시적 비과세·감면조치에도 영향을 받는다. <부록 II>에는 2009년 유효한 상하이시 부동산거래센터 우혜조치 명세표를 참고로 수록하였는데, 2009년 한 해에 한하여 주택영업세의 감세조치 등을 활용하면 세후수익률은 더욱 높일 수 있다.

값어치 떨어지는 통화로  
빚을 얻어 절상하는 통화로  
표시된 자산을 구매하면서  
자산가격상승을 노리는 전략은  
과거 2007년 8월 시점까지와  
2010년 6월 이후 모두  
유효하게 된다.

### 3. 중국의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 및 외환관리 규제

우리나라 내국인투자자 입장에서 중국소재 주택은 외화(위안화)표시 자산이므로 투자를 위해 외환수요가 발생하며 중국과 한국의 조세제도가 모두 관련되는 사안이므로, 부동산시장 및 외환거래에 대한 법률 및 행정규제 등 제도적 요인(institutional factor) 들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부동산관련 세법규정, 구입자금 대출관련 규제, 交房규제 등 부동산시장대책으로 활용되는 법률 개정 사항들을 상시 모니터링(monitoring)해야 하는데, 부록에는 상하이시에서 적용되

중국이 금융기관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해 규제를 하는 목적은 시장안정을 위한 수요관리 목적과 부실대출 억제를 위해서이며, 그 규제내용은 원리금 상환 능력에 대한 대출기관의 판단이다.

있던 2009년 부동산거래 관련 각종 조세 및 비용들의 일람표를 정리하였다.

중국이 금융기관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해 규제를 하는 목적은 시장안정을 위한 수요관리 목적과 부실대출 억제를 위해서이며, 그 규제내용은 원리금 상환(debt servicing) 능력에 대한 대출기관의 판단이다(〈표 2〉 참조). 흥미로운 것은, 타 위안화 자산(예: 예금, 국채, 주식 등) 구입시에는 외국인이 전액 자기 자금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주택과 같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담보대출형식의 구입자금 대출이 허용되어 수익률 극대화를 위한 레버리지효과를 추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내 내자 및 외자은행들은 개인소득에 대한 심사 시 우리나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인정하므로 원본 그대로 또는 국제공증을 통해 제출 가능하다.

〈표 2〉 대출규제 주요내용

		자기자금부담률	기타
거주용 부동산	90㎡ 이하	20% 이상	-
	90㎡ 이상	30% 이상	-
	2주택 이상	40% 이상	금리는 대출기준금리의 1.1배 이상
	상환능력평가	월 상환금액(원금, 이자)이 월 수입의 50% 이하	
	기준 변경	부동산 보유 기준 개인 → 가구	
상업용 부동산 (거주겸용)		50% 이상 (45% 이상)	대출기간 10년 이하, 금리는 대출기준금리의 1.1배 이상

자료: 關於加強商業性房地產信貸管理的通知(07. 9. 27) 및 補充通知(07. 10. 5) 자료 정리, 中國人民銀行

최근의 부동산 관련 중국세제 변화 내용을 국무원 國辦發 발표를 통해 정리해 보면, 2005년 6월 1일 부동산시장 과열 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책이 시행되었는데, 주택영업세 보유기간을 2년 기준으로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토지증치세도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1년 후인 2006년 6월 1일 주택영업세를 강화하여 영업세 감면을 위한 보유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강화(보통주방 면세, 비보통주방 양도차익에 대해 5.5%)하면서, 보유기간 5년 미만은 양도가액 금액에 대해 5.5% 단일세율을 부과하였다. 2008년 12월 20일 '부동산시장건전발전대책' 발표를 통해 2009년 1년간만 한시적으로 5년 보유요건을 2년 보유요건으로 완화한 주택영업세를 시행하면서 외국인 주택 매입에 대한 도시부동산세 경감조치로 매도자에 대한 세부담을 대폭 경감해 주었다.

부동산 투자 관련 양국의 외환관리(forex control) 관련 규정들도 투자금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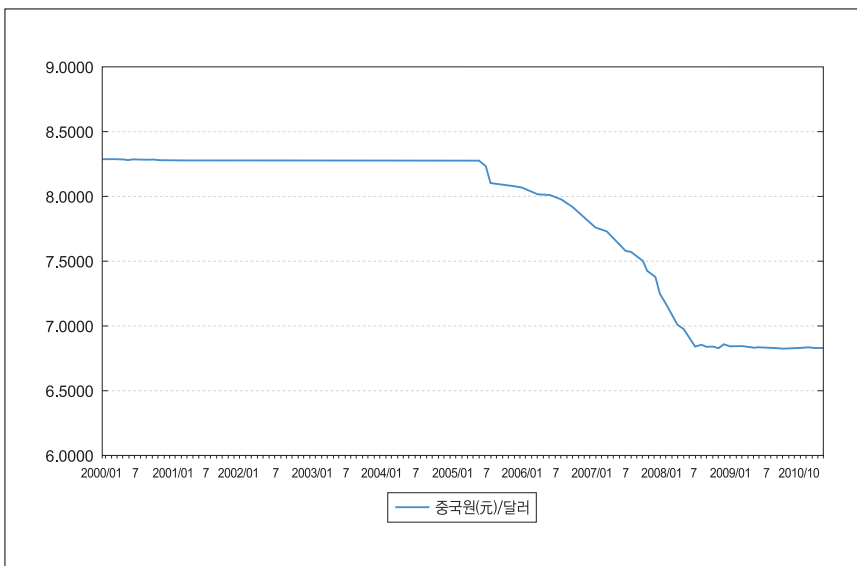
최종 회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표 3>은 중국의 환율관련 주요 변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3> 환율 개혁 이후 주요사건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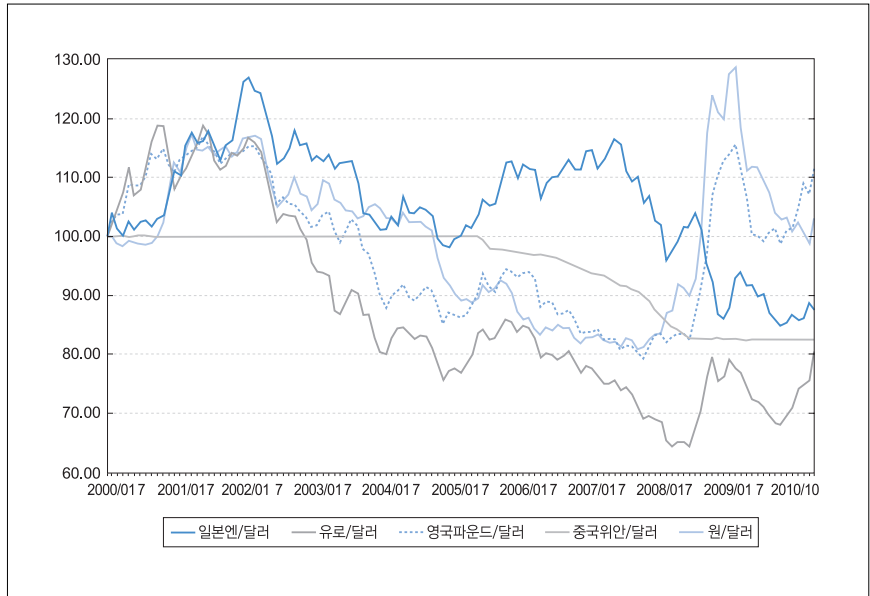
일 시	내 용
2005. 7. 21	바스켓통화제 채택, 시장수급에 기반한 관리변동환율제도 실시 당일 달러에 대한 위안화 환율 2% 절상
2005. 9. 23	위안화에 대한 비달러화의 거래변동폭이 3%로 확대
2006. 1. 4	은행간 현물환거래시장에 장외거래방식을 도입
2006. 5. 15	위안화/달러 기준환율이 8.00위안을 돌파, 달러당 7.9982위안
2007. 5. 21	은행간 시장의 달러에 대한 위안화 환율 1일 변동폭을 ±0.3%에서 ±0.5%로 확대
2007. 10. 24	G7 재무장관회의 개최 이후 위안화 7.50위안 돌파
2008. 4. 10	위안화 환율이 7.00위안 돌파
2008. 6. 17	위안화 환율이 6.90위안 돌파, 6.8위안 시대 진입
2008. 7. 14	외환관리국, 상무부, 해관(세관)에서 수출대금 결제현황을 공동조사, 자본의 역외유동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
2010. 6. 18	위안화 · 달러간 1일 0.5% 범위내 관리변동환율제로의 개선발표

자료: 삼성경제연구원 자료 재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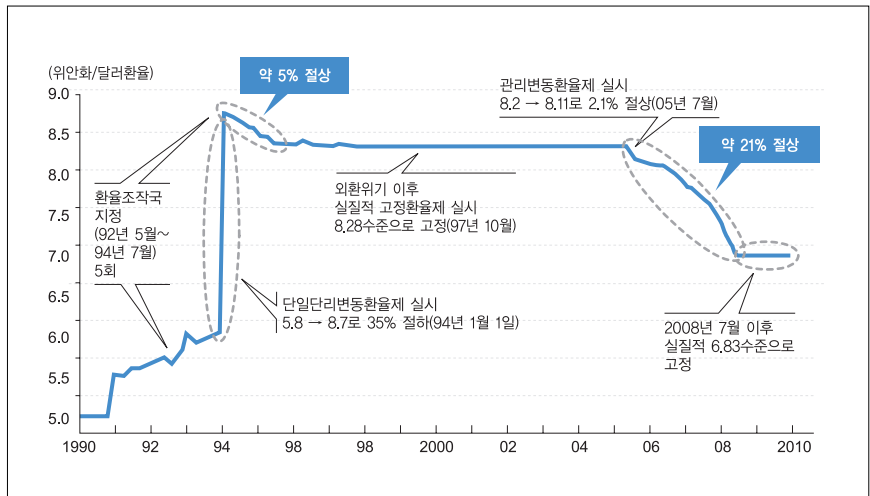
[그림 5] 중국 위안/달러 변동 추이 (2000=100)



[그림 6] 주요국의 환율(달러기준)



[그림 7] 중국 위안화 환율의 변동 추이



주: 1990년~현재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규정 및 실무행정업무처리에 따라 환차익 및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는 국무원(the State Council) 상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공포되는데, 외환정책을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업무부서는 중국인민은행 내 지역외환관리사무소(State Administration of Foreign Exchange)들이다. 외환관리조례 제3장 자본항목 외환관리규정에는 ‘경내개인’의 외환수입과 지출을 규정한 제21조와 제22조가 있는데, 국무원 외환관리부서의 비준을 받은 후 금융기구(은행)을 통해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경내개인<sup>8)</sup>은 원래 주택투자자자금이 외화 송금에 의한 것이라는 이력이 있고, 최종적으로 부동산을 매각해서 얻은 위안화 수입이라는 사실이 국가세무총국 및 외환관리국에 의해 증명되어 인가를 받으면 국외로 송금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송금의 최고한도액 및 송금회수와 송금 시기 측면에서 행정적 지체가 발생할 경우 환손익에 노출될 수 있다. 또한 규정을 위반하여 외화로 경내에서 계상하여 결제하거나, 외화이체 등 불법으로 외환을 사용하거나, 외환 또는 외화매각자금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외환관리기관은 개정을 명하고 위법소득은 몰수되며, 위법금액의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매각대금의 국내송금시점을 결정하기 위해 외환시세를 모니터링할 때에는 중국인민은행의 [www.pbc.gov.cn](http://www.pbc.gov.cn) 人民幣匯率 페이지에 공표된 공식적 환율을 참조하면 된다. 2010년 6월 18일 위안화 유연성 확대 발표 이후 2010년 6월 21일과 22일의 변화 내용을 살펴보면 1위안화가 0.14647달러에서 0.14710달러로 변경되어 정확히 0.43% 절상되어 확대된 변동폭 0.5% 범위 내에서 미달러 대비 위안화 절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초 위안화 절상 및 자산가격 상승을 노리고 무역 및 투자를 가장한 핫머니가 유입되는 크기에 대해 중국과 선진국들은 큰 이견을 보여 왔었다. 큰 폭의 그리고 빠른 위안화 절상을 바라는 선진국들의 전문가들은 2009년 외환보유액 증가분인 4,531억달러에서 무역흑자 1,900억달러와 외국인투자 900억달러를 뺀 나머지인 1,670억달러로 추산되는 핫머니가 유입되어 자산가격버블을 야기하므로 조속한 위안화 절상을 요구한 반면, 중국의 외환관리국(SAFE)은 외환보유액 투자수익, 통화조정, 증시투자 등의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은 계산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2010년 2월 투기적 자본거래를 직접 실지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13개 성·시에 걸친 해외로부터의 자본거래 347만건 4,400억달러 중 불법 핫머니 유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190건 73.5억달러에 불과하다고 발표하였다.

경내개인은 원래 주택투자자금이 외화 송금에 의한 것이라는 이력이 있고, 최종적으로 부동산을 매각해서 얻은 위안화 수입이라는 사실이 국가세무총국 및 외환관리국에 의해 증명되어 인가를 받으면 국외로 송금을 할 수 있다.

8) 경내개인이란 중국 공민과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연속 거주 만 1년 이상인 외국인을 말하며, 외교관 및 국제조직 주중국대표는 제외됨. 자본항목이란 국제수지 중에서 대외자산과 부채기준에 변화를 발생시키는 거래 항목을 말하며, 자본이전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상품과 대출 등을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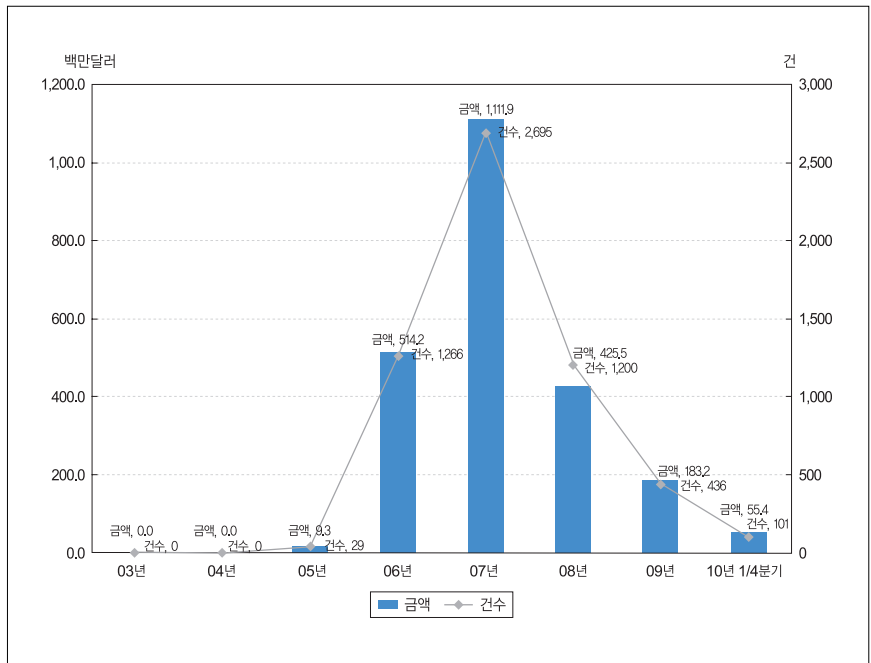
미국내 서브프라임  
모기지문제가 노출된  
2007년 하반기 이후 감소하여  
월평균 4천만~5천만달러 수준에  
있다가 국내에도 그 여파가  
본격화한 2008월 9월  
이후 2천만달러대로  
급격히 감소한다.

#### IV. 우리나라의 해외부동산 취득 관련 조세 및 외환규제

##### 1. 우리나라의 해외부동산 취득 현황

2006년 3월 주거목적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폐지하고 동년 5월 22일 100만달러 이하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을 허용한 이후 취득실적을 보면 금액기준으로 월평균 5,000만달러 정도였다가, 2007년 2월 투자한도를 300만달러로 상향조정하자 2/4분기와 7월에 월평균 1억달러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다 (그림 8) 참조). 이는 미국내 서브프라임모기지 문제가 노출된 2007년 하반기 이후 감소하여 월평균 4천만~5천만달러 수준에 있다가 국내에도 그 여파가 본격화한 2008년 9월 이후 2천만달러대로 급격히 감소한다. 취득부동산 소재지역별 분포는 미국 등 북미에 편중되어 있다가 동남아시아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으며 유형은 주택이 대부분이었으나 상가·리조트·토지 등으로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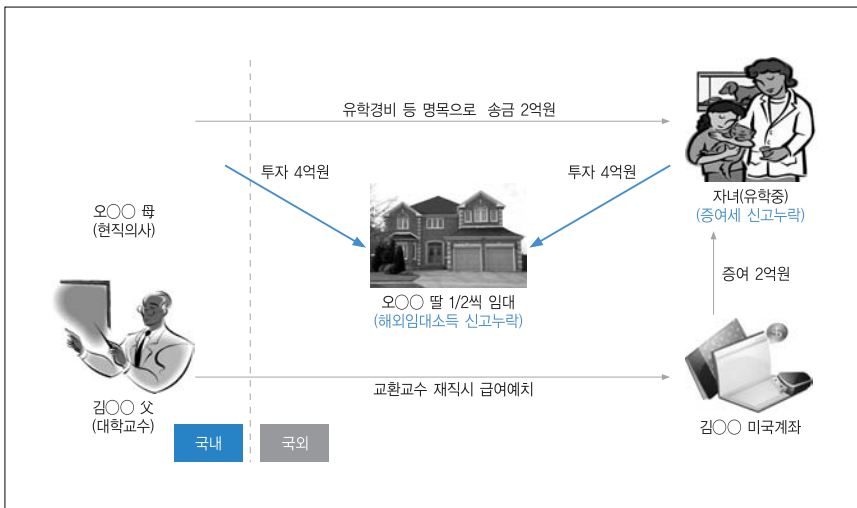
[그림 8] 연도별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현황(개인)



한편 국세청은 2010년 5월 7일 세무조사 결과 역외탈세행위의 한 유형으로 개인의 해외주택 취득 및 보유단계에서 발생한 외화자금문제와 증여세 및 임대소득세 무신고 무납부행위를 발표하였는데, 투자목적용 해외부동산 취득이 허용된 2006년 이후에는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은 및 지정외국환은행을 통해 수집한 해외부동산 취득자료에 기초하여 해외부동산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자료 안내문'의 형식으로 납세자에게 보내고 있는데, 신고납부주의 과세방식의 성격상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불필요한 안내행위라는 판단이다. 세무정보에 익숙하지 못한 납세자의 경우 해외부동산의 '편법취득자', '국부유출자'로 손쉽게 매도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세제 및 세정을 투명하게 정비해야 할 것이다.

국세청은 2010년 5월 7일 세무조사 결과 역외탈세행위의 한 유형으로 개인의 해외주택 취득 및 보유단계에서 발생한 외화자금문제와 증여세 및 임대소득세 무신고 무납부행위를 발표하였는데, 투자목적용 해외부동산 취득이 허용된 2006년 이후에는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례 : 대학교수·의사 부부가 유학중인 자녀에게 하와이 소재 고급 콘도를 취득하도록 현금증여<sup>9)</sup>〉



위의 사례에서 의사 오○○과 그의 자녀는 미국 하와이 소재 호화콘도(8억원)를 1/2씩 취득하여 현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한 경우로 언론보도되었다. 유학 중인 자녀의 주택취득 자금원은 유학경비 등의 명목으로 오○○(母)로부터 수취한 2억원과 김○○(父)가 수년 전 미국 교환교수로 재직 시 현지은행에 예치했다가 인출·증여한 2억원으로 확인(증여세 신고누락)되어,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등 3억원이 추징 조치되었다고 한다.

9) 국세청 보도자료 2010년 5월 7일 참조

세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외에 거주하다가 귀국 후 국내에 주소 거소를 두게 된 시점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기만 하면 국외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세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소재지국의 납세의무에 따라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는다.

## 2. 우리나라의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한 세법규정

우리나라는 국내에 거주하면서 투자목적용으로 취득한 해외부동산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소유 중과규정 적용대상으로 삼지 않으며 서울도 양도소득세 일반세율이 적용되어 해외부동산 투자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 한편 해외근무발령으로 세대 전원이거나 일부가 수년간 해외로 이주하여 거주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녀의 해외유학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세대 일부가 해외에 체류하게 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전 세계라는 지리적 범위 내에서 다주택자가 되는 상황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세대원 일부가 해외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권을 축소하는 규정이 적용되는데, 이때의 양도소득세 문제를 살펴보자<sup>10)</sup>.

세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외에 거주하다가 귀국 후 국내에 주소 거소를 두게 된 시점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기만 하면 국외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세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소재지국의 납세의무에 따라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는다. 이는 소득세법 제118조의 2에 토지, 건물,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도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로 납세자 범위를 국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귀국전 처분하거나 귀국 후 5년 이내에 양도하기만 하면 해외소재 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 3. 우리나라 외국환거래규정

〈표 4〉 외환자유화에 따른 부동산 취득 절차 완화

일 시	내 용
'05. 7월 이전	30만달러 이내 주거용 주택 (한은 신고수리)
'05. 7. 1	50만달러 이내 주거용 주택 (한은 신고수리)
'06. 1. 9	100만달러 이내 주거용 주택 (외국환은행 신고수리)
'06. 3. 2	주거용 주택 금액제한 폐지 (외국환은행 신고수리)
'06. 5. 22	100만달러 이내 투자용 부동산 (외국환은행 신고수리)

해외부동산은 외화자산으로서 구입, 처분, 현지금융 이용은 외국환의 매입, 매도를 수반하게 되므로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

10) 노영훈(2010.7) 참조

수리를 받아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 사후관리과정에서 국세청장에게 통보된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44조 제2항 제2호는 내국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해외에서 2년 이상 체재할 목적(신고 당시 2년 이상 해외에서 체재하고 있는 배우자가 체재할 목적을 포함)으로 주거용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거주자의 배우자 명의의 취득을 포함)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부터 신고 수리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는 취득후 3월 이내에, 처분(변경)보고서는 처분(변경)후 3월 이내에, 그리고 체제 사실, 계속보유 여부 및 임대 여부에 대한 수시보고서 모두 한은총재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자에게 제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006년 5월 투자목적의 100만달러 이하 해외부동산 취득을 허용한 후에는, 실거주목적으로 취득한 후 2년 이상 체재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귀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 주택을 처분해야하는 매각의무 규정이 존재해야 할 실익이 없어졌으나 외국환거래규정 제7-44조의 3으로 유지되고 있다. 귀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해야 할 매각의무기간과 귀국후 5년 연속 거주자에 대해서만 해외부동산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 무발생 기간규정 불일치로 인한 납세자의 혼란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부록 III 참조).

귀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해야 할 매각의무기간과 귀국후 5년 연속 거주자에 대해서만 해외부동산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발생 기간규정 불일치로 인한 납세자의 혼란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

## V. 맺음말

먼저, 향후 중국 부동산 투자시 고려해야 할 경제적 상황변화 요인들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자. 부동산보유세라고 할 수 있는 재산세 부과의 가능성 때문에 세후수익률은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국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위안화 절상 압력에 대한 대응으로 위안화의 기축통화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할 전망이고 이는 무역뿐 아니라 자본시장에서의 자유화와 외환규제를 국제적 기준으로 변화시켜야 할 숙제를 안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위안화 가치가 절상될 전망이어서 위안화표시 자산인 중국 부동산에 대한 수익률은 과거만큼은 아니더라도 나쁘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은 거래,登記, 대출, 외화송금 등 부동산 관련 행정업무 수행시 법 규정에 대한 정보 제공이 일반인들에게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 지방정부나 분사무소 수준에서의 공무원 업무처리 투명성도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높지 않다. 따라서 현지 법률사무소(Law Firm)를 통해 중개, 임대, 세무, 외환반출들의 업무를 대행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 감정평가, 중개, 대출, 세무, 컨설팅 등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제도 및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는  
기본틀을 바꾸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세법규정의 복잡성에 따른  
세부담 차등화와 납세자  
불복의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국제적인 수준의 한국계 부동산서비스 회사도 전무한 실정이라서 정보획득 및 거래비용은 다소 높다는 판단이다.

다음으로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한 우리나라 조세정책에의 시사점을 살펴보자. 우리나라에서는 다주택소유자를 투기꾼으로 보는 시각하에서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중과하는 기본구조를 채택했다가 현재는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실거주목적이든 투자목적이든 해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다주택자가 된 대한민국 국민들에 비해 중과하던 차등과세 제도를 유예하고 있는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2009~2010년 말까지 2년간은 기존의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 당시 2주택자는 일반세율, 3주택자는 45% 세율을 적용하며, 또 동 기간중 신규취득하여 다주택자가 되어 2011년 이후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하기로 한 한시적 규정<sup>11)</sup>에 대한 존폐 여부 및 다주택자에 대한 기본과세제도(baseline taxation) 입법안을 조속히 밝혀 세제의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주택구입은 자산투자행위이므로 양도시점 당시에 유효한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더라도 취득시점에서 양도소득세를 감안한 투자자의 세후 수익률을 기능할 수 있도록 세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2009년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에는 2009. 3. 16~ 2010. 12. 31일 기간 중 취득한 주택을 2010년 말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투기지역이면 일반세율이 적용되거나 투기지역이면 기본세율에 10%포인트 가산된 세율이 적용되며, 동 기간 중 취득 후 2011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투기지역 가산세율제도 연장 여부 및 투기지역 해당 여부에 따라 세부담이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의도하던 정책효과가 나타나기에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재개발이나 재건축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주택교체 과정에서 신주택이 재건축대상이 될 수도 있고, 구주택이 재건축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재건축기간 중 대체주택을 임차할 수도 있고 구입하여 거주할 수도 있는 등, 현실세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복잡한 상황들을 세법이 일일이 규정하기에 힘들어졌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제도 및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는 기본틀을 바꾸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세법규정의 복잡성에 따른 세부담 차등화와 납세자 불복의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sup>12)</sup>

해외부동산 매각에 따른 자본이득 계산방식과 해외주식형 투자펀드에 대한 자본이득 계산방식에 차이가 존재하는데, 기본적으로 외화자산에 대한 내국 거주인의 투자행위에 대해 수익을 구성하는 두 구성요소인 '외환손익' 과 '(해당 기초자산) 자본이득' 을 분리하건 통합하건 일관성 있는 과세정책 마련이 필요

11) 2008. 12. 26일 개정되어 2009. 1. 1일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제104조 신설조항에 따르면 일반세율은 2009년 경우 6%~35%, 2010년 경우 6%~33%이며, 1년 미만보유의 경우 50%, 1~2년 보유의 경우 2주택자는 40%, 3주택자는 45% 인.  
12) 주택소유채수의 다과에 따른 양도 소득세 차등과세정책의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는 노영훈(2010)을 참고 바람.

한 시점이다. 해외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118조의 2[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소득범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 5 제1항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즉, 원화(KRW)표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간 차액내에 포함된 환손익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반면 해외투자펀드에서 투자한 해외상장주식의 주식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의 환차손익계산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3항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만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으로 보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IF**

해외부동산 매각에 따른  
자본이득 계산방식과  
해외주식형 투자펀드에 대한  
자본이득 계산방식에  
차이가 존재한다.

### <참고문헌>

노영훈, 「우리나라 부동산세제에 있어서의 입법정책의 문제점」, 『사법』, 대법원 법원행정처, 2010. 3.  
 \_\_\_\_\_, 「주택가격지수를 이용한 국제적 주택시장 동향 분석의 가능성」, 『재정포럼』, 제162호, 한국조세연구원, 2009. 12.  
 人民元資産投資研究會, 『중국위안화와 부동산시장』, 부동산114, 2004. 7.  
 Eichholtz, P.M.A., Koedijk, C.G., and M. Schweitzer, "Global property investment and the costs of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Money and Finance* 20, (2001), pp.349~366.

〈부록 1〉

1. 해외부동산 실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

소득세법 제118조의 2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 ①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② 지상권·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③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등과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제외함)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④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로,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들고 있는데, 세대원 일부가 자녀교육 또는 해외취업 등으로 해외에 거주하게 될 때에는 오히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각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즉,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게 되면 '비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 의무를 지게 됨. (소법 §3)

한편,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되는 시기는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영 제2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

가 발생한 날, 그리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이며, 거꾸로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2. 영 제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에는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①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고 규정하여 매 과세기간 중 절반 이하를 해외에 체류하면서, 해외자산 양도시점에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가 아니면 해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지 않음.

## 2. 해외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시 원화환산 관련 규정

소득세법 제118조의4(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 1. 취득가액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 취득에 드는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78조의3(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 ①법 제118조의3제1항 단서 및 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자산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당해 자산의 시가로 한다. 다만, 제17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과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

한 자산중 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 및 이 영 제158조제1항제1호·제5호에 규정된 자산(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에 규정된 자산인 경우에는 동호에 규정된 주식등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 12. 30>

1.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평가가액
2.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6월 이내에 이루어진 실지거래가액
3.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6월 이내에 평가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
4.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6월 이내에 수용 등을 통하여 확정된 국외자산의 보상가액

② 법 제118조의3제1항 단서 및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 12. 31, 2005. 2. 19, 2010. 2. 18>

1.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동법 제62조·동법 제64조 및 동법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외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동법 제62조·동법 제64조 및 동법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외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유가증권가액의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 이 경우 동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중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 [본조신설 1998. 12.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4(국외자산의 필요경비) ①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삭제 <2003. 12. 30>

③ 법 제118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이

란 제16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0. 2. 18〉

- ④ 법 제118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란 제16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0. 2. 18〉[본조신설 1998. 12. 31]

제178조의5(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법 제1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개정 2001. 12. 31, 2005. 2. 19〉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 할부조건인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및 취득일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로 본다.〈신설 2001. 12. 31〉[본조신설 1998. 12. 31]

제118조의5(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118조의2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118조의2제3호에 따른 자산

가. 중소기업의 주식 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나. 그 밖의 주식 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104조제4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 12. 31]

제118조의6(외국 납부세액의 공제)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118조의5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이 그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② 제1항의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78조의6(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118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이란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가 과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1.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② 법 제118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공제받고자 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외자산양도소득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신청서를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포함한다)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1998. 12. 31]

제118조의7(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

특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1. 제118조의2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 제118조의2제3호에 따른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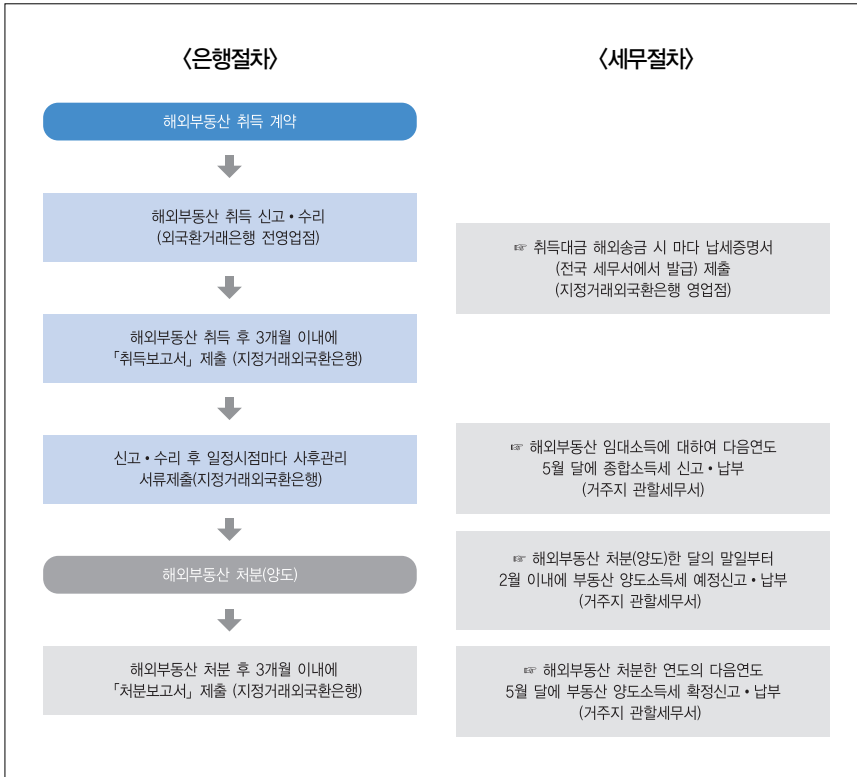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전문개정 2009. 12. 31]

제118조의8(준용규정)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는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3조, 제95조, 제97조제2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및 제114조부터 제1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9. 12. 31]

〈부록 II〉 상하이시 부동산 거래 센터 세금 우혜정책 명시표

주택성질	구입연도제한	유일주택여부	판 매					구 입		
			영업세	개인 소득세	토지 증치세	계약 인화세	거래 수수비	계세	계약 인화세	거래 수수비
보통주택	2년이내	구별 없음	5.55% (외국인 5.05%)	총액의 1% 또는 차액의 20%	잠정 면제	잠정 면제	잠정 면제	첫 구매 시, 90平方米이하 1%, 그 외에 1.5%	잠정 면제	잠정 면제
	2년이상 5년이하	Y	잠정면제	잠정면제	잠정 면제	잠정 면제	잠정 면제	첫 구매 시, 90平方米이하 1%, 그 외에 1.5%	잠정 면제	잠정 면제
		N	잠정면제	전액의 1% 또는 차액의 20%	잠정 면제	잠정 면제	잠정 면제	첫 구매 시, 90平方米이하 1%, 그 외에 1.5%	잠정 면제	잠정 면제
	5년이상	Y	잠정면제	면제	잠정 면제	잠정 면제	잠정 면제	첫 구매 시, 90平方米이하 1%, 그 외에 1.5%	잠정 면제	잠정 면제
		N	잠정면제	총액의 1% 또는 차액의 20%	잠정 면제	잠정 면제	잠정 면제	첫 구매 시, 90平方米이하 1%, 그 외에 1.5%	잠정 면제	잠정 면제
	비보통주택	2년이내	구별 없음	5.55% (외국인 5.05%)	전액의 1% 또는 차액의 20%	잠정 면제	잠정 면제	2.5원/平方米	3%	잠정 면제
2년이상 5년이하		Y	5.55% (외국인 5.05%)	잠정면제	잠정 면제	잠정 면제	2.5원/平方米	3%	잠정 면제	2.5원/平方米
		N	5.55% (외국인 5.05%)	총액의 1% 또는 차액의 20%	잠정 면제	잠정 면제	2.5원/平方米	3%	잠정 면제	2.5원/平方米
5년이상		Y	차액*5.55% (외국인 5.05%)	면제	잠정 면제	잠정 면제	2.5원/平方米	3%	잠정 면제	2.5원/平方米
		N	차액*5.55% (외국인 5.05%)	총액의 1% 또는 차액의 20%	잠정 면제	잠정 면제	2.5원/平方米	3%	잠정 면제	2.5원/平方米
1. 색글씨는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										
2. 기타 언급되지 않은 개정세금 비용(권리증인화세 5원/件, 권리증제작비 80원/件, 그림배합비 25원/件 및 권리등록비 등)은 본래 표준에 근거하여 집행하므로, 여기에서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음										

〈부록 Ⅲ〉 해외부동산취득 은행 및 세무절차



※ 구체적인 은행절차는 해당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2010 세제개편안

- 2010년 세제개편(안)의 기본방향 및 주요 내용  
안택순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 2010년 세제개편안 평가  
조명환 /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 '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0년도 세제개편안' 이 발표되었다. 『재정포럼』에서는 정책담당자의 2010년 세제개편안의 방향 및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평가를 전문가로부터 들어보는 특집을 마련하였다. <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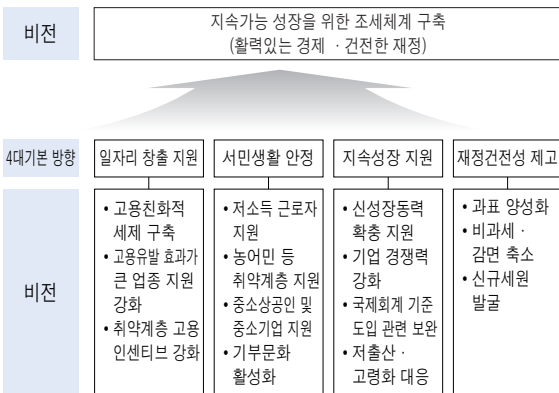
# 2010년 세제개편(안)의 기본방향 및 주요 내용



**안택순**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 I. 2010년 세제개편의 기본방향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을 통해 서민의 체감경기를 개선시키는 것이다. 금년도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및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충과 재정 건전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 활력있는 경제·건전한 재정을 목표로 하여, 일자리 창출 지원, 서민생활 안정, 지속성장 지원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4대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세부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 II. 2010년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 1. 일자리 창출 지원

#### 가. 고용창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신설

투자금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고 고용기준을 추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한다. 기업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현행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와 같이 7%를 세액공제하되, 「고용증가인원×일정금액<sup>1)</sup>」을 공제한도로 설정하여 신규고용창출인원에 비례하여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나.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고용 인센티브 신설

외투기업 · 지역특구 입주기업은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 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감면수혜 규모를 투자금액의 50%<sup>2)</sup>로 한정하고, 투자금액의

1) 고용증가인원 1인당 1,000만원, 청년 고용의 경우 1인당 1,500만원.

2) 감면기간 7년에 해당하는 외투기업은 투자금액의 70%를 한도로 함.

20%까지 고용 증가인원 1인당 1,000만원씩 추가로 감면하도록 하여 외투기업 및 지역특구內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다. 소기업의 기준을 고용친화적으로 변경**

현행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5~30%)를 적용함에 있어서 세제상 우대하는 소기업 규모 판정 시 업종별 인원기준 및 매출액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고 있으나, 인원기준이 소기업 고용증대를 저해하는 점을 감안하여 소기업 판정기준 중 업종별 인원기준은 폐지하고 업종별 매출액기준만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라. 고용유발효과가 큰 업종에 대한 세제지원**

청소업, 경비업, 시장·여론조사업, 인력공급업 등 고용유발효과가 큰 업종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5~30% 세액감면)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0%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추가하도록 하였다.

**마.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외투기업수준의 세제 지원**

해외고용이 국내고용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한 사업장을 폐쇄하고 해외사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국내(수도권 밖)에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외투기업수준인 3년간 소득세·법인세의 100%, 2년간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여건이 취약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지

원하기 위해 장애인표준사업장<sup>3)</sup>에 대해 4년간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하도록 하였다.

또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sup>4)</sup>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에 대해 최저한세율을 중소기업 수준인 7%로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사회적기업에 대한 4년간 50%의 세액감면제도의 일몰을 금년말에서 2013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2. 서민·중산층 지원**

**가. 저소득 근로자 지원**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을 8%에서 6%로 인하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인 대학생이 근로장학금을 수령하여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근로장학금을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나. 농·어민 등 취약계층 지원**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영농규모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3년 이상 자경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영농조합법인 등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100% 감면하는 제도의 일몰을 2012년말로 연장하기로 하였다.

또한, 농민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업용로우더, 동력제초기를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에 추가하는 한편,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추

3) ①장애인 수 10인 이상, ②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50% 이상 중증장애인) 고용, ③장애인 편의시설 완비, ④최저임금 이상 지급.

4) 저소득층·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비중이 30% 이상 또는 서비스 이용자 중 취약계층 비중이 30% 이상인 기업 등.

가하였다.

경차소유자에 대한 유류세(교통세, 개별소비세) 환급 제도(연 10만원 한도)의 일몰을 금년말에서 2012년말로 연장하기로 하였다.

#### 다. 중소기업 지원

중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음식·숙박업,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영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액세액공제우대제도<sup>5)</sup>의 일몰을 금년말에서 2012년말로 연장하고, 음식점 등이 매입하는 농·수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시 음식업에 대한 우대공제제도<sup>6)</sup>의 일몰도 금년말에서 2012년말로 연장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제 체납세액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폐업한 영세사업자(직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 2억원 이하)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사업소득세·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특례제도의 일몰을 금년말에서 2012년말로 2년 연장하기로 하였다.

#### 라. 중소기업 지원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유동성 애로에 빠진 중소기업에 저리로 대출해주기 위해 대기업과 은행 등이 보증기관에 출연하여 조성하는 상생보증펀드에 대해

그 출연금의 7%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마련하였고, 대기업이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받은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제도의 일몰을 금년말에서 2013년말로 연장하기로 하였다.

또한,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에 대해 현금성 결제를 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지급기한이 60일 이내인 환어음 등으로 결제한 금액의 일정비율<sup>7)</sup>을 소득·법인세에서 공제(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하는 제도의 일몰을 금년말에서 2013년말로 연장하기로 하였다.

중소기업 창업 및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창업자금을 증여(30억원 한도)받는 경우 5억원 공제 후 증여세를 저율(10%)로 과세하는 특례제도와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5억원 공제 후 증여세를 저율(10%)로 과세하는 특례제도의 일몰을 금년말에서 2013년말로 연장하기로 하였다.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졸업시 당기분 일반R&D 세액공제율이 급격히 축소<sup>8)</sup>되는 것을 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sup>9)</sup>하고, 최저한세율<sup>10)</sup>도 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sup>11)</sup>하도록 하였다.

#### 마. 기부문화 활성화

기부금 구분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기부금단체에 따라 3단계(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지정기부금)로 차등적용하고 있는 현행 기부금 소득공제한도를 2단계(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로 간소화하

5) ①부가가치세 공제율 : 음식·숙박업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2% → 2.6%, 기타 개인사업자 1% → 1.3%, ②공제한도 700만원

6) ①기준공제율 3/103 → ②우대공제율 : 유흥주점 4/104, 법인 6/106, 개인 8/108

7) 지급기한 30일 이내 0.5%(대기업 0.4%), 지급기한 30일~60일 0.15%

8) 중소기업 25% → 일반기업 3~6%

9) 1~4년차 25%, 5~7년차 15%, 8~9년차 10%

10) 중소기업 7%, 일반기업 10~14%

11) 1~4년차 7%, 5~7년차 8%, 8~9년차 9%

고,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한도를 개인 지정기부금은 소득의 20%에서 30%<sup>12)</sup>로, 법인 지정기부금은 소득의 5%에서 10%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III. 지속성장 지원

#### 가.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

현행 LED응용, 바이오제약·의료기기 등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투자에 대해서는 일반 R&D투자보다 대폭 우대하여 세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를테면 일반 R&D투자의 경우 투자금액의 3~6%(중소기업의 경우 25%)가 세액공제되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투자의 경우 투자금액의 20%(중소기업의 경우 30%)가 세액공제된다. 이러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R&D세액공제 대상에 최근 신성장기술로 부상하고 있는 3D기술, 풍력·지열에너지기술, 차세대 LCD기술, IT융합기술 등을 포함시켜 미래산업 육성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또한 녹색성장 등 신성장동력 산업 관련 주요 원자재·부품 등에 대해 기본관세율을 인하하고, 방송사업자가 수입하는 디지털 TV 방송장비에 대한 관세감면(50%) 제도의 일몰을 금년말에서 2012년 말로 연장하기로 하였다.

#### 나. 기업경쟁력 강화

민간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채무상환 목적으로 기업자산 매각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부실기업이 주식을 증여받아 소각시 증여받은 주식가액 법인세 면제 등

각종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일몰기한을 2012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2011년부터 상장사 및 금융회사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K-IFRS)의 적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IFRS 도입 전후 기업의 세부담 변동 및 세무조정 증가 등을 완화하기 위해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또한, 물류전문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 대비 증가한 제3자물류비용의 3%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의 일몰을 금년말에서 2012년 말로 연장하기로 하였다.

#### 다. 저출산·고령화 대응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자녀 추가공제의 소득공제액을 확대<sup>13)</sup>하기로 하였다.

또한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고자 하였다.

### IV. 재정건전성 제고

#### 가. 세무검증제도 도입

자영사업자의 소득세 성실신고율 유도하기 위해 의사·변호사·학원 등 전문직 및 현금수입이 많은 사업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소득세 신고시 세무사 등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도록 의무화하는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12) 종교단체 기부금은 10%로 현행 유지

13) 자녀 2명 50만원 → 100만원, 자녀 2인 초과시 1인당 100만원 → 200만원

**나. 비과세·감면 대폭 정비**

일자리창출·녹색성장 등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50개 항목의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기로 하였다. 일반적 설비투자 지원제도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고, 제도의 실효성이 낮거나 국제기준에 배치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정리하도록 하였다.

**다. 신규세원 발굴**

EU·OECD 국가 등은 질병치료 목적의 의료용역만 의료보건용역으로 면세하고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정상 과세하는 점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중 일부인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가슴성형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입술에 대해 2011년 7월 1일 공급분부터 과세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또한 인간의 질병치료를 위해 면세하는 국제기준에 맞추어 애완동물 진료용역은 2011년 7월 1일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단, 가축 및 수산동물 진료용역은 면세로 유지한다.

아울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 중 무도학원(舞蹈學院)과 자동차학원에 대해 2011년 7월 1일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V. 기타 과세제도 보완**

**가. 부동산세제 보완**

양도세 중과제도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왜곡 가능성과 침체상태에 있는 부동산시장 여건을 감안하여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제도의 일몰을 금년말에서

2012년말로 연장하기로 하였다.

기존 양도세 중과제도		양도세 중과 완화제도	
개인	2주택 : 50%	개인	다주택 및 비사업용토지 : 기본세율(6%~35%) 적용
	3주택 이상 : 60%		투기지역에 있는 3주택 이상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 : 10% 추가과세
	비사업용 토지 : 60%		
법인	비사업용부동산 : 법인세율(10·22%) +30% 추가과세	법인	비사업용부동산:기본세율(10·22%) 투기지역 비사업용부동산 : 10% 추가과세

**나. 공매제도 개선**

현행 공매절차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채납자 및 이해관계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고손실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공매개시 결정에 대한 등기제도를 새로이 마련하고, 배분요구 종기(終期)를 첫 입찰기간 개시 전으로 설정하여 채권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는 한편, 입찰에 참여자에게 공매물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적정가액 입찰을 유도하고, 배분에 대한 이의절차제도를 신설하여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III. 세제개편 효과 및 향후 추진일정**

**1. 세제개편 효과**

금년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는 1.9조원으로 증가 요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1.5조원), 지역특구·외국인 투자기업 세제지원 한도 신설(0.13조원) 등 2.9조원이고, 감소 요인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신설(△0.5조원), 다자녀 추가공제 확

대( $\Delta 0.18$ 조원) 등  $\Delta 1.0$ 조원이다. 세부담 귀착효과<sup>14)</sup>는 대기업·고소득자 귀착분이 1.3조원(90.2%)이며, 중소기업·서민중산층 귀착분이 0.14조원(9.8%)이다.

## 2. 향후 추진일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4개 세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9월중 입법예고, 부처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후 9월말 금년도 정기국회에 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금년말까지 공포하여 원칙적으로 내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KIPF**

14) OECD의 서민·중산층 기준(총 급여 5,000만원) 가정

# 2010년 세계개편안 평가



**조명환**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정부는 지난 8월 24일 일자리 창출을 적극 유도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 2010년 세계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일반적으로 세계개편안은 정부의 중장기 정책방향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해당연도의 경제적 상황이나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담겨 있어 매년 정부가 이를 발표할 때마다 사회 각층의 주목을 받아왔다. 본 소고는 금년도에 정부가 발표한 세계개편안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I. 2010년 세계개편안 개요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하여 2008년에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벗어나는 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내수와 수출도 호조를 보이면서 전년 동기 대비 올 상반기 성장률이 7.6%에 달하는 등 경제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고용창출

력이 저하되어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의 활성화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하여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하였고 저출산·고령화로 세입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반면 복지·통일비용 등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함에 따라 재정건전성의 확보가 국가 재정정책의 중요 이슈로 부각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24일 발표한 세계개편안에서 일자리 창출 지원, 서민생활 안정, 지속성장 지원, 재정건전성 제고를 4대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각각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각각의 기본 방향에 대한 추진전략과 주요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자리 창출 지원

일자리 창출 지원의 추진전략은 고용친화적인 세계를 구축하고, 고용유발효과가 큰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취약계층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주요 개편내용으로는 우선 투자금액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고 고용 기준을 추가한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기업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현행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와 마찬가지로 7%의 세액공제를 허용하되 “고용증가인원×1,000만원(예시)”을 공제한도로 설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청년 취업문제의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고용에 대해서는 공제한도를 1.5배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고용유발효과가 큰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소업, 경비업, 시장·여론조사업, 인력공급업 등 고용유발효과가 큰 업종을 세제지원대상 중소기업 업종에 추가하였으며, 국내 복귀기업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수준의 세제지원을 신설하였다. 또한,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세제지원을 신설하였고,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였다.

### 서민생활 안정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추진전략은 저소득 근로자 지원, 농어민 등 취약계층 지원, 중소기업 지원, 기부문화 활성화로 요약된다. 저소득 근로자 지원을 위한 개편 내용은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을 기존의 8%에서 6%로 인하하였으며, 근로장학금의 수령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학생의 근로장학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였다. 또한, 농·어민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제도의 일몰을 연장하였고,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중소기업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음식·숙박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제도의 일몰을 연장하였고, 중소기업 창업자금과 기업승계의 증여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을 연장하였다. 그리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소득공제한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고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였다.

### 지속성장 지원

지속성장 지원과 관련한 개편은 미래 신성장동력 확충, 기업경쟁력 강화, 저출산·고령화 대응으로 구분된다. 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과 관련한 주요 개편내용으로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대상 확대와 저탄소·녹색 성장과 관련된 신기술의 외국인 투자 감면대상 추가 등을 들 수 있다.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편 내용은 채무상환 목적의 기업자산 매각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부실기업의 증여주식에 대하여 이를 소각시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각종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일몰 기한을 연장한 것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장려를 위한 다자녀 추가공제를 확대하였고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인상하였다. 또한 고령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의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였다.

### 재정건전성 제고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과표양성화,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 신규세원 발굴 등이 있다. 과표양성화를 위하여 정부는 세무검

증제도의 도입을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시켰다. 이는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사업자들로 하여금 소득세 신고시 세무사 등에게 신고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도록 의무화하고 부실검증이 이루어졌을 경우 해당 세무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50개 비과세·감면 항목을 중심으로 단순 보조금 성격의 것, 지원목적이 이미 달성된 것, 이용실적이 미미한 것 등을 축소 또는 폐지하였고 일자리 창출 및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비하였다. 또한, 신규세원 발굴 측면에서 일부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애완동물 진료비, 무도학원, 자동차학원 등 성인 대상 영리학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하였고, 경마·경륜 및 경정장 장외발매소 입장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 세수증가 및 세부담 귀착 효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른 향후 5년간의 세수 증가효과는 1조 9천억원이다. 세수 증가요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종료(1.5조원), 지역특구 외국인 투자기업 세제지원 총액한도 신설(0.13조원) 등으로 총 2.9조원이며, 세수 감소요인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신설(△0.5조원),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0.18조원) 등으로 총 △1.0조원에 달한다. 또한,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부담 귀착분은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해 1.3조원(92.2%), 중소기업·서민중산층에 대해 0.14조원(9.8%)이다.

〈표 1〉 세제개편에 따른 연도별 세수효과

(단위: 조원)

	총계	'11년 발생	'12년 발생	'13년 발생	'14년 발생	'15년 발생
소득세	△0.2	△0.05	△0.15	-	-	-
법인세	1.4	0.3	0.55	0.05	0.2	0.3
부가가치세	0.05	-	0.05	-	-	-
개별소비세	0.4	0.3	0.1	-	-	-
기타	0.25	0.2	0.05	-	-	-
합계	1.9	0.75	0.6	0.05	0.2	0.3

자료: 기획재정부, 2010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

## II. 평가

최근의 우리나라의 경제는 2008년 말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의 회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고용률은 2010년 상반기 평균이 예년에 비해 낮은 40.4%로 고용이 부진하고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의 경제여건이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지난해 국가채무는 GDP 대비 33.8% 수준인 360조원에 이르렀고 올해 국가채무 전망도 407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건전성의 악화되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제 현실에 맞추어 금년도 세제개편안에서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재정건전성의 제고 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한 것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또한, 금년도 세제개편안의 기본방향은 현 정부 출범 이후의 세제개편안의 기본 방향들과 상충되지 않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기본방향 중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정책은 일반적으로 세수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며, 재정건전성의 확보

는 비과세·감면의 축소와 새로운 세원 확보를 통한 세수 증대 노력으로 서로 상반되는 측면이 있다. 이에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세제 지원은 세수 감소에 비해 실질적인 효과가 큰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며,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한 세수증대 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정책의 효과를 상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긍정적 변화

이러한 측면에서 금년도 세계개편안을 살펴보면 우선 재정건전성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변화가 주목을 받는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1982년 처음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8년을 제외하고 거의 상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고용창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한 것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그 이름에서 보듯이 임시적 성격을 지녀 경기 불황시 일시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를 앞당겨서 경기 회복을 촉진하려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동 제도가 거의 상시적으로 운영되어 투자시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9년을 기준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국제감면액은 약 1조 9,802억원으로 우리나라 국제 감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인한 조세감면 규모는 크지만 항시적 지원으로 경기조절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려해 보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쪽으로 방향을 돌려 지원 규모를 축소하고 향후 경제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번 세계개편안에서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여 고소득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사업자들로 하여금 소득세 신고에 앞서 세무검증을 받도록 하였다.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소득과약률은 50~80%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는 과거보다 개선된 수치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근로소득자의 소득과약률에 비해 낮아 과세공평성을 저해하고 있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파악함에 있어 수입측면에서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제도의 활성화 등을 통해 개선이 이루어진 것에 비해 비용 측면에 있어서는 그다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계개편안에 포함된 세무검증제도는 세무검증을 의무화하고 부실검증에 대하여 징계를 하도록 함으로써 수입뿐만 아니라 비용 측면에서도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를 하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세무대리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만큼, 향후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이를 보완하여 제도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세원 발굴의 측면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미용 목적 성형수술이나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 등을 포함하는 것도 재정건전화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사실, 새로운 세원의 발굴은 재정건전화 측면에서 보기보다는 효율성이나 형평성 등 조세원칙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과세대상을 무조건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조세원칙상 과세가 되는 것이 타당함에도 누락되어 있는 것에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지만 미용성형수술의 경우는 치료 목적의 필수적인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아 다른 의료행위와의 과세 형평성을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편에서는 미용성형수술의 심리적 치료 효과를 강조하기도 하지만, 이는 심리적 치료는 미용성형의 부차적인 것

이고 공연관람 등 심리적 치료효과가 있는 다른 것 들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 하지 않다. 즉,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보았을 때 치 료가 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치료가 목적이 아닌 성 형수술에 대한 과세는 EU 국가들이나 영국, 캐나 다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 효과성 측면에서의 평가

한편,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지속성장 지 원 등을 위한 금년도 세계개편안의 개편 내용은 효 과성 측면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몇 군데 발견된 다. 이번 세계개편안에서 정부는 저소득 일용직 근 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실질소득 지원을 위하여 일용직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8%에서 6% 로 인하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들의 소득이 낮음을 고려할 때, 2%포인트의 세율 인하로 인한 일용직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의 상승은 의도한 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들의 노동 공급 탄력성이 커서 세부담의 상당부분이 노 동 수요측에 귀착된다면 세율의 인하로 인한 혜택 이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기 보다는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 다. 따라서, 원천징수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에 비해 일용직 근로자들이 느끼는 실질소득의 증가 효과가 적은 것은 아닌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세계개편안에서 지방경제 활 성화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 및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면제제도를 2012년 말까지 연장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원래 동 제도는 2008년 도입당

시 해외 골프여행 수요를 국내로 돌리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하지만, 동 제도 시행 이후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이용자수가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해외 골프여행 수요의 국내 흡수로 인한 것이 라기보다는 국내 골프장들의 상대가격체계의 변화 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세계개편안의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일몰 연장의 주된 이유는 지 방 경제의 활성화라고 하였지만, 지방 회원제 골프 장의 수요가 지방 대중 골프장의 수요를 흡수하여 증가하는 것이라면 동 제도가 지방경제의 활성화에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못하면서 조세형평성을 저 해하고 세수의 감소만 가져올 우려가 있다.

끝으로 이번 세계개편안에서 정부는 저출산·고 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를 확 대하였다. 저출산 문제는 양육비용이나 교육비용 등 경제적 원인 이외에도 미혼율의 증가, 가족에 대 한 가치관의 변화,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따 라서 소득보존을 통한 출산율의 증가는 저출산 문 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 며, 더욱이 연간 100만원 안팎의 세금 절감효과 때 문에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자녀를 가지는 가구는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현행 다 자녀 추가공제제도는 소득이 높아 상대적으로 자녀 의 양육비용 등에 대해 크게 부담이 없는 계층에게 도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데, 선택 과 집중을 통하여 자녀양육비나 교육비로 인해 출 산을 기피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다른 정책수단과의 조화 필요

이상에서 금년도 세계개편안을 간략히 살펴보았

다. 본 소고를 마치기 전에 한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재정건전화나 저출산·고령화 등의 문제들은 세계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예로 금년도 세계개편안에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지만, 이로 인한 세수 증가분은 5년에 걸쳐 1조 9천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우리나라 국가채무 규모의 0.5%에 불과한 수준이다. 국제적으로 자본 이동이 활발하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정책기조 아래서 세입 측면만으로 재정건전화를 달성하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세입 측면뿐만 아니라 재정준칙의 도입이나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 등을 통한 세출 측면에서의 노력도 함께 경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서민 중 상당수는 면세자이고 세제지원 효과는 과세자에게 집중되므로 세계정책으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세계정책은 재정지출 정책 등 다른 정책수단들과 연계하여 함께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나 고용부진 등의 문제도 세제상 비과세·감면을 확대하는 것보다 효과성 측면에서 더 나은 정책 수단이 있는지 검토하고 효과성이 떨어지는 정책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효과성이 높은 정책들을 통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정부의 모든 정책들이 그러하듯이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세계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세계개편안도 지난 8월 발표된 이후 각각의 개편 내용에 대해 벌써부터 많은 찬반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어느 한쪽의 의견이 전적으로 옳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에 정부는 국회를 거쳐 이번 세계개편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세계개편에 직접

적으로 얽혀있는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고 미처 고려하지 못했거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하여 보완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KIPF

# 공공정책포럼



## ■ 제8회 공공정책포럼

### 공공정책포럼 소개

공공정책분야의 전문가, 공공기관 및 정책담당자로 구성된 본 포럼은 공공기관정책의 현안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을 통해 정책수요를 청취하고 연구와 관련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한다.





##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와 정부의 역할

### 제8회 공공정책포럼 개요

- 주 제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와 정부의 역할
- 일 시           2010년 8월 18일 07:30~09:30
- 장 소           서울 팔레스호텔 스카이볼룸
- 진행순서
  - 07:30~08:00   조찬
  - 08:00~08:05   인사 말씀  
                  송대희 KDI 초빙연구위원
  - 08:05~08:45   주제 발표  
                  김화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08:45~09:25   자유 토론
  - 09:25           폐회

\* 본 원고는 2010년 8월 18일 서울 팔레스호텔 스카이볼룸에서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와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공공기관정책 연구센터가 개최한 제8회 공공정책포럼의 주제 발표 및 토론 요약입니다. 주제 발표 및 토론의 내용이 소속기관이나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 ■ 인사 말씀

송대희/공공정책포럼 위원장

기업의 소유지배구조는 최근의 경제위기 이후 전 세계적인 이슈로 부상하였다. 금일 발표에서는 이에 대한 자료 및 분석을 통해 정부가 기업 소유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나아가 우리의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주제발표 요약

###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와 정부의 역할

김화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기업의 지배구조는 법체계에 의해 형성, 변화한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 등 법 이외의 장외요소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세무조사나 인·허가 등을 이용해 정부가 바람직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기업을 유도하기도 한다. 최근 KB지주 및 이미 민영화된 포스코, KT 등의 지배구조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단지 국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 흐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사례이다.

때로는 정부가 위법한 수단으로 기업의 지배구조에 개입하기도 하는데, 러시아의 국영 가스회사 Gazprom 민영화 사례가 그것이다. Gazprom의 민영화 초기에는 관료·정치·범죄세력 간 비리가 광범위하게 얽혀 있었다. 이후 푸틴이 총리로 취임하면서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오늘날의 거대 민영회사로 탈바꿈시켰다. 푸틴이 Gazprom의 지분을 확보한 것은

국가전략 차원의 에너지 확보 및 국내 정치안정 등을 위해서였다. 또한 Gazprom에 합병될 석유회사 Rosneft를 통해 러시아 내 유력한 석유회사인 Yukos의 핵심 자회사를 인수함으로써 푸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다. 이렇게 기업지배구조에 정부가 위법한 수단으로 개입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주주 등이 손실을 입었으며, 투자자들이 철수하는 등 러시아의 국가 이미지도 실추되었다.

러시아의 사례는 최근 형성되고 있는 민영화의 반대 조류를 보여준다. 1970년대 이후에 자금 및 개별 기업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민영화가 이루어졌었다면, 최근에는 국가전략 측면의 효율성을 강조하여 국유화가 시도되고 있다. 러시아의 푸틴은 가스회사 Gazprom과 석유회사 Rosneft 및 Yukos의 자회사를 국가전략 또는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중국도 자금확보를 위해 국영기업의 부분 기업공개를 하고는 있으나, 나머지 정부지분을 통해 남미의 에너지 자원을 수입하는 등 주주의 재무적 이익과 관계없는 국가적 사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지배구조의 형태는 신자유주의 이후의 주주자본주의와 종업원·임원·채권자·국가를 고려하는 이해관계자자본주의로 구분된다. 후자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주주 중심의 효율성보다 사회경제적 효율성을 우선으로 한다. 또한 종업원의 경영참여를 중시하는 한편, 외국자본을 배척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최근의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이해관계자자본주의가 주주자본주의를 대체하고 있는 듯하다. 월스트리트로 대표되는 미국의 자본시장에서도 대규모 국유화가 발생하였다. 이해관계자자본주의와 더불어 보호주의도 대두되고 있다. 이는 주로 유럽 등지의 에너지기업이나 사회간접자본 등 국가기간산업에 해당한다. 정부뿐만 아니라 국부펀드(SWF)가 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타국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도 하였다.

최근 독일의 포르쉐가 폭스바겐을 인수하려 했던 시도는 이러한 논점을 종합하고 있는 사례이다. 포르쉐는 월스트리트 기법을 통해 자신보다 훨씬 큰 기업인 폭스바겐의 지분을 50.76%까지 인수했었다. 그러나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대규모 차입을 실시하였던 포르쉐가 도리어 도산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정부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기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폭스바겐 노조가 니더작센 주지사과 독일 메르켈 총리를 움직여 구제금융을 저지하였고, 결국 포르쉐의 폭스바겐 인수는 성사되지 못하였다는 것이 사건의 개요이다. 이는 월스트리트적 사고방식으로 대표되는 포르쉐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며, 신자유주의적 주주 중심의 사고방식이 도리어 이해관계자자본주의를 촉발하였다는 사실을 보이는 것이다.

국가전략적 차원의 목적 이외에, 최근에는 시스템 리스크도 정부가 기업지배구조에 개입하는 한 원인으로 꼽힌다. 2008년 부채가 900조원이었던 리만 브라더스가 도산할 경우의 파장효과를 우려하여, 미국 정부가 직접 우선주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구제한 사례가 있다. AIG의 경우도 대마불사의 문제 때문에 구제된 경우이다. 이렇게 정부는 지배구조에 개입함으로써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려 한다. 그러나 정부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 개입하는 것을 무조건 관치금융으로 매도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금융산업의 경우 정부의 예금자보호제도 등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도산할 시에는 주주 수준을 넘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정부 개입을 용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외의 산업에 대해서도 투명성 확보, 법체계 활용 등을 전제로 한 개입은 세계적 조류에 따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최근의 기업지배구조와 정부의 역할을 보면, 주주 중심의 신자유주의적 사고방식보다 정부가 국부 증강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노력하는 신중상주의적 가치가

주목받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조류에 전향적인 태도를 가지되, 정부의 무조건적인 개입이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충족하는 발전적인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투명성 확보와 법치주의가 근간이 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세계 각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른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도 중요하다.

■ 자유 토론

박영범 /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이해관계자자본주의 모델이 뿌리내린 독일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는 시민단체·노조 등 이해관계자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해관계자자본주의가 주주자본주의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제 방안이 필요할 것인데,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다.

김화진 / 발표자

이해관계자자본주의는 주주자본주의가 효율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다. 사실 주주자본주의도 계약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장하려 하나, 그 시점 측면에서 이해관계자자본주의와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해관계자의 책임 확보에 관한 명확한 방안은 아직 없다. 그러나 기업의 결정권을 가진 주체는 경영자 뿐이라는 점에서 이해관계자의 책임을 규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합리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주주의 경우에도 보유주식에 대한 손해 외에 책임을 강제할 제

도가 없다. 법적 측면에서 경영자가 실제적인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매커니즘이 형성된 것이다.

#### 이영근/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

민영화의 근거로 효율성을 언급하셨다. 우리 인천공항도 지분매각 중인데, 세계공항평가 등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의 매각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 이에 대해 외국지분에 대한 제한, 민영화 이후 공항서비스 질의 확보, 정부승인에 따른 이용료 책정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IPO방식으로 국민에게 지분의 일부를 매각하려는 것은 인천공항이 거둔 서비스 측면의 성과를 넘어, 외국과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허브기능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 김화진/발표자

공항도 전략산업이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단 한 주의 주식만으로 무한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황금주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현재 공항산업의 공공성과 효율성 간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는 단계인 것 같다.

#### 이만우/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인천공항의 매각 한도 지분이 40% 수준에서 결정된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또한 민영화와 관련하여, 정부지분의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 그랜드코리아레저(GKL)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 최경규/동국대학교 경영학과

첫째, 유럽의 '황금주 제도'도 일부 소각되는 등 전략산업의 민영화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 인천공항의 매각 지분을 40%로 정한 것은 공항에 대한 정부의 개입 의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라 생각한다.

인천공항의 민영화는 선진화를 넘어 세계적 허브로 성장하려는 산업적 시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쌓아온 브랜드 경쟁력 외에 세계의 전략적 투자자들과의 제휴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주주들의 책임성 확보와 관련, 다양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파산으로 보유주식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 주주 역시 잔여이익을 위해 파산을 막으려 할 것이고 이는 대부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외의 각 경우에 따라 다른 양상이 나타날 것인데,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 김화진/발표자

각 경우마다 다를 것이다. 다만 발표에서는 법적인 차원에서의 책임성 확보가 어렵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다. 실제로 경우에 따라 주주 등 당사자들의 입장 및 행동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정택환/미래전략연구센터 소장

세계적으로 민영화가 효율화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오히려 국영기업에 대해 속박을 해제하고 민영기업과 같은 경영환경을 제공하면 정부투자하에서도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공기업 지배구조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김화진/발표자

중국의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 민영기업의 경영자를 움직이는 주체는 주주인데, 이 경우 기업이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기는 어렵다. 반면 국영기업의 경우에는 정부가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 때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민영화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러한 민영화와 국유화 간의 전환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다.

조성일/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기업재무 이론은 아직까지 주주자본주의가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이해관계자자본주의 대표국가인 독일도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주주자본주의를 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금융위기 이후 시스템리스크 및 자원확보 등과 관련하여 정부 개입의 정당성을 용인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하지만 주주와 정부에 앞서, 기업의 가장 큰 이해관계자는 경영자와 근로자일 것이다. 주주자본주의의 득세도 결국 경영진에 대한 감시 및 인센티브 부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주체가 주주라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공기업 민영화도 같은 맥락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각 공기업별로 경영진과 근로자에 대한 감시 및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기업의 성과 확보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김화진/발표자

그에 동감한다. 더불어 민영화 대상이 거대 공기업

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민영화를 통해 증권시장의 시가총액이 커지는 것은 거시경제와 관련된 큰 영향이고, 따라서 정책당국자에게 매력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박정수/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소장

포럼을 통해 공공기관의 지배구조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얻으셨으리라 생각한다. 9월 포럼에서는 경영평가단의 이창우 단장님께서 올해 평가에 대한 회고와 향후 발전방향에 관해 발제하실 예정이다. 10월에는 한국생산성본부의 최동규 회장을 모시고 고객만족도에 대한 논의를 하려 한다. 이제까지의 PCSI 모델을 점검하고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KIPF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효과적인 도입 방안

### 개요

#### ■ 제1차 교육

- 일시/장소 2010. 8. 20(금) 14:00~17:00, 본원 1층 교육장
- 참석현황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44개 기관 (81명)
- 강의순서
  - 문창오(공공센터) (실태조사)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효과적인 도입방안
  - 홍종원(수자원공사) (공공기관우수사례)역량과 성과중심의 K-Water 연봉제 및 평가체계
  - 정한규(한양대학교) (제도설계방안)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방안

#### ■ 제2차 교육

- 일시/장소 2010. 8. 31(화) 14:00~17:00, 본원 10층 대강당
- 참석현황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57개 기관 (100명)
- 강의순서
  - 문창오(공공센터) (실태조사)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효과적인 도입방안
  - 권오복(석유공사) (공공기관우수사례)한국석유공사 민간형 성과보상제도
  - 정한규(한양대학교) (제도설계방안)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방안

#### ■ 제3차 교육

- 일시/장소 2010. 9. 10(금) 14:00~17:10, 한국전력공사 1층 한빛홀
- 참석현황 기타공공기관 124개 기관 (209명)
- 강의순서
  - 문창오(공공센터) (실태조사)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효과적인 도입방안
  - 권오복(석유공사) (공공기관 우수사례)한국석유공사 민간형 성과보상제도
  - 허강희(오리온제과) (민간사례)
  - 이명환(BS컨설팅) (제도설계방안)

\* 본 원고는 2010년 8월 20일부터 2010년 9월 10일까지 3차에 걸쳐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효과적인 도입 방안」을 주제로 교육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 1.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 주요 내용

### ■ 연봉구조 설계

- 연봉구성 항목은 원칙적으로 기본연봉, 성과연봉, 기타 수당으로 구성
- 종전의 기본급 및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던 각종 수당 등의 임금 구성항목(통상임금 성격)은 원칙적으로 기본연봉으로 통폐합
- 성과상여금(경영평가성과급 포함) 등 평가결과에 따라 개인별 차등지급되는 성격의 임금 구성항목은 성과연봉으로 구성
- 연차휴가보상금 등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법정수당 등은 기타수당으로 구성

호봉제(과거)	호봉제(과거)	호봉제(과거)
기본급	기본연봉	호봉제(과거)
고정상여		
각종수당 (가족,근속,기술,직위)		
설날 귀향여비 김장보조, 기타	급여성 복리후생비	(직무급)
법정수당 (연월차, 시간외)	연봉외 수당	기타수당
기타수당	변동성과 상여	호봉제(과거)
성과상여		

### ■ 기존 수당 등의 처리시 고려사항

- 각종 수당은 가급적 성과연봉으로 통폐합하되 일부는 기본연봉으로 전환하고, 법정수당 등 불가피한 일부수당은 유지
- 직무관련 수당은 폐지 후 기본연봉(직무급)으로 전환 또는 성과연봉 재원으로 활용
- 다만, 국외근무수당 및 법으로 규정된 자격수당은 유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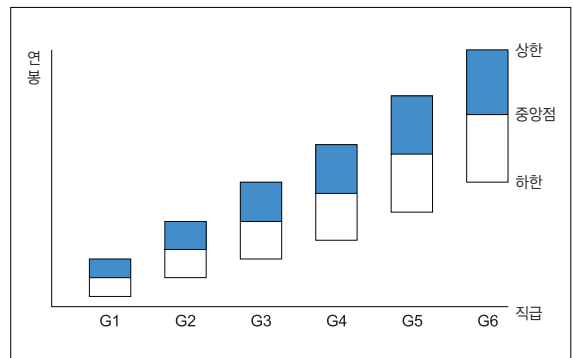
- 속인성수당은 폐지 후 기본연봉으로 전환

- 급여성 복리후생비 등 복리후생 관련 수당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성과연봉으로 전환
- 고정상여금, 자체성과급 등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성과연봉으로 전환

### ■ 기본연봉 체계 및 조정 방식

- **(기본연봉 체계)** 직급별 호봉 또는 연봉테이블은 폐지하고, 직급별 임금범위(pay-band)로 관리하는 방안 권장
- 임금범위는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직급별 임금폭(range)을 중첩형으로 설계하되 폭의 크기는 기관의 특성을 반영
- 상위직급으로 갈수록 임금폭이 확대되는 구조로 설계
- 도입 초기는 임금의 차등폭을 작게 설계하되, 점진적으로 확대
- **(기본연봉 조정방식)** 근속연수와 연동된 자동승급 등 기본연봉의 자동적인 인상을 지양하고, 평가를 통한 차등 인상

[그림 2] 직급별 pay-band 예시



주: 일반적으로 민간부분의 경우 직급별 임금의 폭(range)을 직급의 중간값(mid-point)에서  $\pm 20\sim 30\%$ 의 폭을 유지하고 있음

- 직무급제 도입 : 권장사항
  - (직무급적 요소 가미) 직무가치 또는 직무수행 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본연봉에 직무급제 도입 권장
  - 직무등급 또는 자격등급별로 직무급 수준을 차등하고, 직무평가에 따라 동일직급 내 3개 이상의 직무급 설치 권장
  - (직무급 비중) 직무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관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
- 성과연봉 비중 및 차등폭
  - (성과연봉 비중)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은 20~30% 이상(공기업은 30% 이상)으로 운영
  - (성과연봉 차등폭) 평가에 따라 개인·집단의 성과(업적)가 합리적으로 연동되도록 성과연봉의 차등폭을 설정하되, 최고-최저 등급간 최소 2배 이상이 되도록 차등폭 확대
- 임금 조정방식 및 차등폭
  - (임금 조정방식) 연봉의 인상은 '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상의 총인건비 인상률 범위 내에서 결정하되, 기본연봉은 개인인사 평가결과가 차년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누적식”으로 운영하고, 성과연봉은 평가결과가 당해연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비누적식(패자부활식)”으로 운영
  - (연봉 차등폭) 전체 연봉의 차등폭은 고성과자와 저성과자간 단계적으로 20~30% 이상 되도록 기본연봉(조정방식) 및 성과연봉(비중·차등폭)을 설계
- 권고안 적용대상
  - 간부직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우선 적용
  - 향후 연봉제 시행성과 등을 보아가며 적용대상

단계적 확대 검토

- 기타 고려사항
  - 충분한 공감대 형성
  - 체계적인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 법정기준임금 인상 금지 - 변동적이거나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각종 수당 등의 기본연봉화에 따른 통상임금 인상 금지
  - 연봉제 전환 이후 각종 수당 등 신설 금지
  - 편법적 임금인상으로 활용 금지 - 각종 수당이 기본연봉으로 통폐합시, 경영평가성과급 한도 인상이 없도록 조정
  -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보상금 등 개인별로 지급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당을 기본연봉화하는 포괄산정방식의 운영 금지

## II.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실태조사 결과

- 연봉제 실시 여부
  - 2010년 4월 현재 공공기관 284개(공기업 21개, 준정부기관 79개, 기타공공기관 18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실시하였으며, 설문에 응하지 아니한 기타공공기관 1개를 제외한 283개 기관을 분석
  - 연봉제 도입 기관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도입한 167개 기관(59%), 간부직만 대상으로 도입한 75개 기관(27%)으로 전체 공공기관 중 연봉제 도입 기관은 242개 기관(86%)
- (평균임금 수준)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상 2009년 공공기관의 평균임금은 59,208천원, 기관 유형별로 기타공공기관(61,002천원) > 공기업(59,810천원) > 준정부기관(55,723천원) 순

- 평균임금 구성항목 분석
  - 공공기관경영시스템상 2009년 공공기관의 평균 임금을 구성항목별로 분석
  - 평균임금은 구성항목별로 기본급(57.1%) > 기본수당(15.5%) > 실적수당 > 급여성복리후생비 > 경평성과급 > 기타성과급 순서로 나타남
  - 기관유형별로 보면, 기본급과 기본수당 비중은 공기업이 타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공기업(69.3%) < 기타공공기관(71.7%) < 준정부기관(78.5%)

- 변동성과급 및 연봉 차등현황 분석
  - (분석대상) 2010년 4월 현재 공기업 21개, 준정부기관 72개 총 93개 기관을 분석대상에 포함하고, 2009년 신설 또는 통합된 7개 기관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 ※ 신설·통합기관(7개) : 한국연론진흥재단, 한국연구재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분석방법) 기관의 직급 중 대표성 있는 3개 직급을 각각 최상직급, 중간직급 및 최하직급으로 구분한 후 해당 직급의 최고평가등급과 최저평가등급의 차등현황을 분석함
  - 변동성과급 차등현황
    - 기관별 최고평가등급과 최저평가등급의 변동성과급 차등폭을 산출한 후 이를 평균한 금액을 해당 직급의 평균연봉으로 나누어 변동성과급 차등률을 산출
    - 최상직급의 경우, 평균연봉을 기준으로 한 차등률은 공기업 6.2% 준정부기관 3.5%임
    - 중간직급의 경우, 평균연봉을 기준으로 한 차등률은 공기업 4.9%, 준정부기관 3.2%임
    - 최하직급의 경우, 평균연봉을 기준으로 한 차등률은 공기업 4.6%, 준정부기관 3.2%임
  - 연봉 차등현황

- 기관별 최고평가등급과 최저평가등급의 연봉 차등폭을 산출한 후 이를 평균한 금액을 해당 직급의 평균연봉으로 나누어 연봉 차등률을 산출
- 최상직급의 경우, 평균연봉을 기준으로 한 차등률은 공기업 8.32% 준정부기관 7.61%임
- 중간직급의 경우, 평균연봉을 기준으로 한 차등률은 공기업 3.57%, 준정부기관 7.78%임
- 최하직급의 경우, 평균연봉을 기준으로 한 차등률은 공기업 4.17%, 준정부기관 10.86%임

### III.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대한 기관의 질의사항 요약

-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 발표 이후 공공기관의 질의사항이 증가, 교육 전 기관으로부터 의견수렴 결과 약 140여개 정도 질의 사항 접수

권고안 항목	질의사항
연봉구조의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연봉' 및 '전체 연봉'의 범위 및 정의</li> <li>▶ 경영평가성과급, 자체성과급의 성과연봉 포함 여부</li> <li>▶ 직무제 도입시(기본급, 직무급, 직능급이 있는 경우)의 연봉구조 설계방향</li> <li>▶ 통합기관으로서 이원적인 보수체계를 가진 기관의 경우 적용방법</li> </ul>
기본수당 등의 처리시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수당(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금, 기술수당, 자격수당, 보직수당, 출납수당, 감사수당 등)의 구체적인 처리방법(기본연봉/성과연봉/기타연봉 구분)</li> <li>▶ 급여성복리후생비(학자금, 경조비, 행사지원비, 선택적복직, 기념품비, 문화여가비, 경로효친비 등)의 구체적인 처리방법</li> <li>▶ 비과세대상인 수당(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연구활동비)의 세무상 처리</li> <li>▶ 비과세대상인 급여성복리후생비의 세무상 처리</li> <li>▶ 급여성복리후생비 등을 성과연봉으로 전환시 복리후생비예산을 인건비로 전용할 수 있는 것인지</li> <li>▶ 고정상여급 또는 고정수당 등 기본수당을 성과연봉 재원으로 전환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 가능 여부</li> <li>▶ 고정상여급의 경우 일부는 성과연봉 재원으로 일부는 기본연봉으로 전환가능한지</li> <li>▶ 기타수당으로 편성가능한 구체적인 수당의 예</li> <li>▶ 성과연봉으로의 전환 재원 및 정부평가결과지급 재원의 운용기준</li> <li>▶ 성과급, 복리후생비 등을 성과연봉으로 전환하여 성과연봉 비중을 30%를 맞추고도 남는 경우 이를 기본연봉으로 전환가능한지</li> </ul>
기본연봉 체계 및 조정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연봉 차등인상은 의무사항인지</li> <li>▶ 직급별 임금범위(Pay-band)는 반드시 중첩되어야 하는지</li> <li>▶ 권고안에 따른 상하위등급간 차등폭 확대는 실질적인 임금감소를 가능하도록 하려는 의지가 내포된 것인지</li> <li>▶ 초봉 삭감된 신입직원의 경우 기존직원과 별도의 Pay-band 운영해야 하는지</li> <li>▶ 기본연봉 Pay-band 내 등급 설정을 통해 평가에 따라 연봉 등급 변경 가능한 연봉테이블 형식 가능 여부</li> <li>▶ 정부 임금인상을 변동에 불구하고 기본연봉 차등폭을 일정률로 고정시켜야 하는지</li> <li>▶ 연봉제 직원에 대해 베이스업 인정 여부</li> <li>▶ 기본연봉 평가등급간 인원비율적용의 탄력적 운용 가능 여부</li> <li>▶ 기본연봉 차등을 성과연봉 차등에 합산하여 성과연봉 차등을 산정 가능성 여부</li> </ul>

권고안 항목	질의사항
직무급제 도입 : 권장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급제도의 실시대상 직급은 어디까지인지</li> <li>▶ 직무급이 기준임금과 통상임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li> <li>▶ 직무급과 기본연봉과의 관계(누진적용가능성)</li> <li>▶ 직무급 수준을 차등적용시 성과연봉에 포함 가능 여부</li> <li>▶ 동일직급 내 3개 이상 직무급 설치 권장의 의미</li> <li>▶ 모든 직원의 직제가 동일한 경우 직무급 도입방안</li> <li>▶ 직무급 도입 재원은 복리후생비 또는 수당인지</li> <li>▶ 총연봉 대비 직무급 비중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li> </ul>
성과연봉 비중 및 차등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연봉 비중 및 차등폭 2배 이상 권고안의 실제 적용시기는</li> <li>▶ 현재 기타수당, 급여성복리후생비 및 성과급의 비중이 낮아 연봉제 도입시 성과연봉비중을 기존(20%, 30%)에 맞추지 못하는 어려움</li> <li>▶ 기타수당 등을 성과연봉 전환시 성과연봉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경우 성과연봉이 아닌 기본연봉 등으로 전환가능한지</li> <li>▶ 성과연봉 비중 확대에 의한 기준 월봉 하락의 경우 예산편성지침 위배 여부</li> <li>▶ 성과연봉비율(20%,30%)은 전 직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지</li> <li>▶ 경영평가성과급이 매년 상이하므로 성과연봉비율을 기존(20%,30%)에 맞게 설계하는 데 어려움</li> <li>▶ 총연봉의 범위 - 퇴직, 4대보험, 경평성과급의 포함 여부</li> <li>▶ 단계적 성과연봉 비중의 확대가능성</li> <li>▶ 경평성과급 이외에 별도의 차등성과급 도입 여부</li> </ul>
임금조정방식 및 차등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연봉 차등폭의 의미 : 동일 직급 내 vs 유사 근무연수 및 승진자</li> <li>▶ 준정부기관 차등폭 20% 미만 가능 여부</li> <li>▶ 총인건비 인상에 성과연봉 포함 여부</li> <li>▶ 직무급제 도입시 직급별 연봉차등폭 계산방법</li> <li>▶ 5등급제가 아닌 7등급 또는 9등급제의 경우에도 최고/최저 인원비율(10%)을 유지해야 하는지</li> <li>▶ 권고안보다 성과연봉 비중 확대하여 총연봉 차등폭을 운영하면 기본연봉 비차등 가능 여부</li> <li>▶ 기본연봉/성과연봉 구분없이 총연봉 차등 가능 여부</li> <li>▶ 단계적 총연봉 차등폭 확대를 위한 기준연한 기준 여부</li> </ul>
권고안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부직의 구체적인 적용범위</li> <li>▶ 보직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직급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li> <li>▶ 보직기준으로 적용시(예, 노조원인 3급이 보직을 받을 경우) 노조의 동의가 필요</li> <li>▶ 연봉제 추가 확대에 대한 추가적인 권고안 제시 가능성</li> <li>▶ 우선 적용 대상에 대해 연봉제 미시행시 경영평가상 불이익 여부</li> <li>▶ 계약직 보직자의 성과연봉제 적용 여부</li> </ul>

권고안 항목	질의사항
기타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의 관련 여부</li> <li>▶ 수당폐지로 인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변동을 없애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통상임금변동이 미미한 경우 용인할 수 있는지?</li> <li>▶ 성과연봉제의 제도정립과 실제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li> <li>▶ 근로기준법에 의해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할 경우 적용시한</li> <li>▶ 성과연봉 재원 부족으로 기본연봉의 일정비율을 성과연봉재원으로 사용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li> <li>▶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성과연봉 포함 여부</li> <li>▶ 연봉 총액 대비 통상임금 가이드라인 설정 여부</li> <li>▶ 추진일정 및 도입시기 연장 가능성 여부</li> <li>▶ 통폐합시 차이 나는 법정기준 일원화 후 차액을 기본연봉 산입시 포괄산정방식 운영금지 해당 여부</li> <li>▶ 연봉제 정착을 위한 성과평가시스템에 대한 합리적 가이드라인 제시</li> </ul>

# 주요국의 조세동향

\* 본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주요국의 조세동향」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동향 10-17

### 요약

- 미국은 2010년 8월 10일 ‘교원 및 건강보험 지원법(Educational Jobs and Medicare Assistance Act, H.R.1586; P.L. 111-226)’을 제정함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기업들이 납용하였던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허점을 보완하는 규정을 신설함
- 유럽 여러 국가에서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조세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핀란드 재무부는 2010년 7월 30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소비세를 중심으로 증세정책을 담은 2011 예산안을 발행함
  - 폴란드 각료회의는 2010년 8월 4일 부가가치세 인상(22%→23%) 등 증세를 통한 재정결손 회복에 초점을 둔 2011-2013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함
  - 헝가리 의회는 2010년 7월 22일 은행세 도입 등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증세조치와 아울러 경기회복을 위한 법인세율 인하(19% → 10%) 조치 등을 담은 세계개편안에 승인함

• 룩셈부르크 재무장관은 2010년 7월 27일 국가의 경제, 재정 및 사회 분위기 개선을 위한 세계개편안을 발행함

### 1. 미국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FTC) 개정

가. ‘교원 및 건강보험 지원법(Educational Jobs and Medicare Assistance Act, H.R.1586; P.L. 111-226)’ 개요

- 2010년 8월 10일 미국 의회는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FTC)와 그 밖의 국제조세조항의 개정내용이 포함된 ‘교원 및 건강보험 지원법(Educational Jobs and Medicare Assistance Act, H.R.1586; P.L. 111-226)’을 통과시켰고, 같은 날 대통령 서명함으로써 2010년 12월 31일 이후부터 본 법이 발효됨
  - 이 법은 교원과 건강보험을 위한 투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교원들을 위한 100억달러 규모의 펀드 조성 및 건강보험을 위한 161억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함으로써, 319,000개의 일자리가 유지 및 창출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기업들의 일자리들이 해외로 빠져 나가도록 직·간접적으로 유도했던 외국납부세액공제 남용 규정들을 폐지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음
- 미국에서의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제 가능한 외국납부세액의 신청을 관련 해외소득의 과세시기 이전에 청구하는 것을 금지시킴
- 의회에서는 이번 법률을 통하여 향후 10년 동안 14억달러의 적자를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나. 개정 배경

-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FTC)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하여 외국과 미국에서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미국 기업들은 이 제도를 남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과세부담을 미국 정부에 넘기도록 세무계획을 세우고 적용하는 사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
- 이러한 기업들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남용은 미국 정부나 외국 정부에 대하여 사실상 조세부담을 지지 않고 조세를 회피하는 부작용들을 초래하였음
- 이러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남용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미국 내의 일자리들이 미국에서의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이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러한 세법의 허점은 미국 국세청에서 대기업 납세자들에 대한 최대 해결과제로 논의되어 왔음
- 2004년에는 미국 글로벌기업들이 외국에서의 '능동적 소득(active income)' 7천억달러 중 실질적으로 2%만을 미국 세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고되었음
- 오바마 정부에서는 이러한 세법의 허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1년 예산안 발표에서 주요한 국제조세

개혁방안 내용들을 제시하였으며, 국회와 여러분야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하여 2010년 8월 10일 '교원 및 건강보험 지원법(Educational Jobs and Medicare Assistance Act, H.R.1586; P.L. 111-226)' 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된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2011년부터 본 법은 발효됨

- 이러한 국제 조세개혁은 1962년 케네디 행정부의 'subpart F' 규정 제정 이래 국제거래에 대한 소득세 과세의 가장 의미 있는 조치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음
- 국회에서는 이번 국제조세 개정을 통하여 약 98억 달러의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다. 주요 개정내용

- 공제 가능한 외국납부세액의 신청을 관련 해외소득의 과세시기 이전에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됨
- 이 규정은 이번 개정에서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 개정을 통하여 향후 10년 동안 42.5억달러의 조세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내국세법에서 규정하는 특정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미 외국의 소득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의무가 발생하였더라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음
- 이 규정이 적용되는 특정자산으로는 내국세법 §338(d)(3)의 적격주식구입의 경우 등을 들 수 있음
- 이 규정을 통하여 국회에서는 36억달러의 조세수입을 기대하고 있음
- 원천징수에 대한 특별규정인 '80/20 company 규칙'을 폐지함
- '80/20 company 규칙' 이란 80% 이상의 총소득이

적극적인 해외사업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미국 기업의 경우, 그 기업이 지불하는 이자와 배당금은 외국원천소득으로 간주하고 미국의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특별규정임

- 이 규칙을 폐지함으로써 1억 5,100만달러의 조세수입이 예측되고 있음
- 특정 외국 거래에 대하여 미국 국세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소멸시효 연장에 대한 제한규정을 신설함
  - 국경을 넘는 거래나 외국의 자산에 대한 신고를 하지 못한 이유가 정당하거나 고의가 아닌 경우 인정되었던 소멸시효 연장을 개별적으로 제한함
- 미국조세조약에 의하여 외국소득으로 간주되는 미국 원천소득들을 항목별로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한도 제한 규정을 둬므로써, 조세회피를 위하여 외국 지사나 외국 회사들에 해당소득들을 이전시키는 것을 방지함
  - 이 규정을 통하여 2억 5천만달러의 조세수입을 예상하고 있음
- 미국소득과 외국소득 간의 이자비용을 조정하는 행위를 제한함
  - 납세자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보다 많이 받기 위하여 해외에서의 이자비용을 조정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임
  - 이자비용 계산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외국 기업을 국내의 계열사기업으로 보아 외국 기업의 모든 자산과 이자비용을 같은 계열사 그룹의 이자비용 계산에 포함시킴
  - 이 규정을 통하여 3억 9천만달러의 조세수입을 예

상하고 있음

## 2. 유럽 국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조세정책 추진

### 가. 핀란드 2011 예산안 발표

-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2010년 7월 30일 2011 예산안(budget proposal for 2011)을 발표함
  - 2011 예산안은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이 경기활성화를 위한 감세정책에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증세 정책으로 전환되었음을 시사함
    - 이는 의회를 통과할 경우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 2011 예산안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되, 소비세 분야에서 세원 발굴 및 특정 항목에 대한 세율 인상을 계획하고 있음
  - 사탕류, 초콜릿 및 아이스크림에 대해 EUR 0.95/kg의 소비세를 도입함
  - 청량음료(soft drinks)에 대한 소비세를 현 EUR 0.045/ℓ에서 EUR 0.075/ℓ로 인상함
    - 이는 현재 면세되고 있는 광천수(mineral water)에도 적용될 예정임
- 친환경 자동차를 비롯하여 각종 친환경 제품 사용 촉진을 위하여 관련 세제를 개편하고 폐기물세 및 복권세의 세율을 인상함
  - 2011년 3월 1일부터 승용차 및 승합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motor vehicle tax)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기초하여 부과함
    - 현재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차량의 일반 소매 가격에 28%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되고 있음



- 전기, 석탄, 천연가스 및 석유에 대한 에너지세 (energy taxes)를 인상함
- 또한 에너지세를 에너지 함량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기초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전환함
- 친환경 제품 사용 촉진을 위한 에너지세 인상으로 약 EUR 750million의 추가 세수 확보를 기대하고 있음
- 폐기물세(waste tax)에 대한 과세베이스를 확대하고 세율을 현 EUR 30/ton에서 2011년 EUR 40/ton, 2013년 EUR 50/ton으로 인상함
- 복권의 상금에 대해 부과되는 복권세(lottery tax) 세율을 현 8.25% 또는 9.5%(복권사업 주최자에 따라 차등 세율을 적용)에서 10%로 인상함

나. 폴란드 2011-2013 연도 예산안 의회 제출

- 각료회의(Council of Ministers)는 2010년 8월 4일 2011-2013 연도에 대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함
  - 이는 증세를 통한 재정결손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음
  - 폴란드의 재정결손액은 2009년 기준으로 GDP의 7.1%에 달함
- 정부는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비롯하여 각종 소비세 인상 및 도입을 통해 세수를 확대할 계획임
  -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을 현 22%에서 23%로 1%p만큼 인상함
  - 우대세율(preferential rate)의 경우 현 7%에서 8%로 인상함
  - 기초 식료품에 대해서는 5%의 저세율을 도입함
  - 담배소비세(excise duties on cigarettes)를 2011, 2012 및 2013년 세 차례에 걸쳐 각각 4%씩 인상함
  - 석탄 및 코크스에 대해 소비세(excise duty)를 도입함

다. 헝가리 의회 세제개편안 승인

- 의회는 2010년 7월 22일 중도우파 Fidesz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승인함
  - 세제개편안은 금융기관에 대한 은행세 도입, 공공부문 과다 보너스에 대한 중과세 등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조치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또한 경기회복을 위해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음

1)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조치

-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은행세 (bank tax)를 도입함
  - 은행세는 대차대조표 총액을 기준으로 HUF 50billion을 초과하는 부분은 0.5%, 이하인 부분은 0.15%의 세율로 과세함
  - 한편,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조정소득(adjusted income)을 기준으로 6.2%의 세율로 과세함
  - 이는 9월 10일 및 10월 10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두 차례에 걸쳐 징수함
  - 정부는 은행세 부과로 약 HUF 200billion의 추가 세수 확보를 기대하고 있음

- HUF 2million을 초과하는 공공부문 보너스에 대해서는 98%의 세율로 과세함
  - 이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수취분에 한함

2) 경기활성화를 위한 조치

- 2010년 7월 1일부터 법인세에 2단계 누진세율 체계를 도입하여 10% 세율 구간을 추가함
  - HUF 500million 미만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현 19%에서 10%로 인하함
  - 10%의 세율은 유럽연합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 평가되고 있음
- HUF 500million 이상인 소득에 대해서는 현 19%의 세율을 그대로 유지함

라. 룩셈부르크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 재무장관 Frieden은 2010년 7월 27일 국가의 경제, 재정 및 사회 분위기 개선을 위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함
- 이는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1) 기업과세

- 요건을 갖춘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1,500의 최저단일소득세(minimum flat income tax)를 도입함
- 이는 영업허가(business license) 또는 감독기관의 승인이 필요 없는 사업 활동을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함
- 해당 기업의 금융자산, 양도성 증권, 은행예금, 당좌예금, 수표 및 현금 보유액 합계는 대차대조표 총액의 90%를 초과하여야 함
- 법인세에 부가되는 부가세(solidarity tax)<sup>1)</sup>를 현 4%에서 5%로 인상함
- 21%의 법인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나 부가세의 인상으로 총법인세 부담률은 21.84%에서 22.05%로 인상될 것임
- 한편, 과세소득이 EUR 15,000 이하인 법인에 대해서는 EUR 10,000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20%,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6%의 법인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 투자세액공제율을 현 12%에서 13%로 1%p만큼 인상함
- 이는 건물, 가축, 광물, 선박 등을 제외한 특정 감가상각 자산에 추가적인 투자를 하는 경우 적용됨

2) 개인과세

- 개인소득세에 부가되는 부가세(solidarity tax)를 1.5%p, 3.5%p 인상하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1%p 인상함
- 개인소득세에 부가되는 부가세를 현 2.5%에서 4%로 인상함
- 소득이 EUR 150,000(부부합산 신고의 경우 EUR 300,000)을 초과하는 경우 6%의 세율을 적용함
-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현 38%에서 39%로 인상함
- 이는 EUR 41,793(부부합산 신고의 경우 EUR 83,586)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됨
- 개인소득에 대한 추가징수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각종 공제금액을 일부 조정함
- 개인이 수취하는 모든 유형의 소득에 대해 2011년 및 2012년 동안 한시적으로 0.8%의 세액(temporary tax)을 징수함
- 단, 최저임금(social minimum wage) 이하인 급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여행경비에 대한 연간 공제액을 EUR 99/km에서 EUR 51/km로 인하함
-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이혼수당에 대한 최대 공제액을 현 EUR 23,400에서 EUR 24,000으로 인상함

1) 이는 개인소득세에 부가되는 부가세와 같이 실업기금에 대한 부담금(unemployment fund contribution)으로 사용됨



동향 10-18

요약

- 중국은 작년 10월에 환경세의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4개의 시범지구에 환경세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기 위한 도입안을 중국 국무원에 제출함
- 일본은 2010년 세제개정에서 그룹법인세제를 도입함
  - 그룹 내 법인 간 자산의 양도거래, 기부거래, 현물분배, 배당거래, 자기주식취득거래 등에 대한 과세관계를 정리함
- 아이슬란드 의회는 2010년 6월 15일, 16일 및 24일 세 차례에 걸쳐 법인 및 개인 지원을 목적으로 직접투자, 주된 거주지의 수리, 채무면제이익에 대해 한시적인 과세특례 혜택을 부여하는 세법개정안에 승인함

1. 중국의 환경세 도입 논의

가. 도입 배경

- 후진타오 중국 주석은 2009년 11월에 UN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탄소집약도”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발표할 바 있음
  - 중국은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수준 대비 45%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함
- 중국 재무부는 2009년 10월에 환경관련 세제의 도입

시기 등이 포함된 탄소세 보고서를 발표함

- 이 보고서에는 일반환경세, 탄소세, 연료세의 개정 일정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단기적으로는 연료세(연료와 천연자원에 대해 과세)를 과세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일반환경세와 탄소세를 과세하는 방안임
  - 탄소세는 2012년이나 2013년 이후, 일반 환경세는 2014년 이후에 도입할 예정임
- 탄소세의 과세대상은 이산화탄소이며, 납세의무자는 개인과 법인을 포함함
  - 과세대상은 사업활동 중에 화석연료를 연소하여 직접적으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 이산화탄소임
  - 납세의무자는 이산화탄소를 환경에 노출시킨 개인과 법인임
  - 세율은 과세표준이 방출량이므로 비율이 아니라 금액으로 결정될 것임
- 탄소세의 세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7:3의 비율로 배분하고 중앙정부는 탄소세 세수를 에너지 유지, 새로운 에너지의 개발, 재생자원, 새로운 에너지 기술의 개발 등에 배정할 계획임

나. 환경세 도입을 위한 조치

- 중국 정부는 4개의 시범지역에 환경세를 도입하기 위한 안을 중국 국무원(State Council)에 제출함
  - 환경세의 부과대상은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 오염된 물이 될 것임
  - 시범지역은 후베이(Hubei), 후난(Hunan), 장시(Jiangxi), 간쑤(Gansu)임
  - 도입안 중 세율, 과세면제, 과세범위 등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 2. 일본의 그룹법인세제

- 일본은 2010년 세제개정에서 다양화되는 법인의 조직 형태에 대응하고, 과세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룹법인세제”를 신설함
  - 2010년 세법개정안은 2010년 3월말에 확정되어 4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그룹법인세제와 관련된 규정은 대부분 10월 1일부터 시행됨
  - 100% 자본관계로 묶여진 그룹 내의 법인들은 단일 실체처럼 경영하게 되는데, 그룹법인세제는 이러한 경영실태를 반영하기 위한 세제임
  - 그룹 내의 거래에 대한 과세관계를 정리하고, 관련되는 연결납세제도, 조직재편성세제 및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도 정비함
- 연결납세제도는 선택제이지만, 그룹법인세제는 강제적으로 적용됨
  - 연결납세제도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적용되는 세제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선택하지 않는 경우 적용되지 않음
  - 그룹납세제도는 연결납세제도를 선택하지 않아서 개별실체가 납세주체가 되는 경우라도 완전지배관계를 가지는 그룹 내의 실체에 대해서는 하나의 실체로 보기 위한 세제임
- 주요 개정은 100%그룹 내 법인 간 자산의 양도거래, 기부거래, 현물분배, 배당거래, 자기주식취득거래 등에 대한 과세관계를 변경하는 내용임

### 가. 100%그룹 내 법인 간의 자산의 양도거래

- 내국법인이 양도손익조정자산을 완전지배관계의 내국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자산을 양도한 법인에 발생

하는 양도손익을 이연함

- 개정 전에는 자산을 양도한 법인에 발생한 양도손익을 양도된 사업연도의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였음
-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조직재편성세제 중 적격사후설립제도가 폐지됨
- 개정된 제도는 2010년 10월 1일 이후 양도손익조정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됨

- 이연된 양도손익은 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사유발생연도에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됨
  - 일정한 사유는 양도손익조정자산의 양도, 상각, 환매, 대손, 제거가 발생한 경우임
  - 해당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양수한 법인은 최초로 양도한 법인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가 있음

### 나. 100%그룹 내 법인 간의 기부거래

- 내국법인이 완전지배관계의 내국법인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한 법인의 기부금은 손금불산입되고 기부받은 법인의 수증이익은 익금불산입됨
  - 개정 전에는 기부한 법인은 기부금을 일정한도 내에서만 손금산입하였고, 기부받은 법인은 기부받은 금액을 전액 익금산입하였음
  - 개정된 제도는 2010년 10월 1일 이후 지출하는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됨

### 다. 100%그룹 내 법인 간의 현물분배

- 내국법인이 완전지배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 현물분배를 하는 경우, 현물분배의 직전 장부가액으로 피현물법인에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적격현물분배제도를



신설함

- 현물법인의 직전 장부가액과 현물분배 당시의 시가는 차이가 나므로 피현물법인에는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수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이익적립금에 가산함
- 개정 전에는 현물분배법인은 양도손익을 계상하였고, 피현물분배법인은 시가를 취득원가로 하였음
- 개정된 제도는 2010년 10월 1일 이후 현물분배하는 분부터 적용됨

라. 100%그룹 내 법인 간의 자기주식취득거래

- 모회사가 가진 자회사주식을 자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모회사는 의제배당은 계상하지만 양도손익은 계상하지 않음
- 개정 전에 모회사는 의제배당으로 계상하고 양도손익을 계상함
- 개정된 제도는 2010년 10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의제배당 사유에 의해 금전 기타 자산의 교부를 받은 분부터 적용됨

마. 청산소득과세 폐지

- 청산소득과세가 폐지되고, 관련 소득은 청산중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하게 됨
- 개정 전에는 내국법인이 청산하는 경우, 해산 직전까지는 통상의 소득과세를 하고 해산 이후부터 청산까지는 청산소득과세를 하였음
- 개정된 제도는 2010년 10월 1일 이후 해산하는 분부터 적용됨
- 변경되는 제도로 인하여 법인세 부담액이 증가되지 않도록 기한경과이월결손금도 공제하도록 함

3. 아이슬란드 법인 및 개인 지원 세법개정

- 의회는 2010년 6월 15일, 16일 및 24일 세 차례에 걸쳐 법인 및 개인 지원을 목적으로 직접투자, 주된 거주지의 수리, 채무면제이익에 대해 한시적인 과세특례 혜택을 부여하는 세법개정안에 승인함

가. 직접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의회는 2010년 6월 15일 아이슬란드 내에서의 직접투자에 대해 적용되는 한시적인 과세특례 법안에 승인함
- 아이슬란드에 직접 투자하는 법인은 산업, 에너지 및 관광부(Ministry of Industry, Energy and Tourism)를 통해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함 -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투자와 관련하여 단일소득세율 적용, 산업수수료(industrial charges) 면제, 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허용, 급여에 대한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인하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동 법안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것임

나. 주된 거주지의 수리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의회는 2010년 6월 16일 주된 거주지(primary residence)의 수리비용 등에 대해 일부 세액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승인함
- 납세자는 2010년 및 2011년 과세기간 중 발생한 주된 거주지의 건설, 개량 및 수리비용에 대해 그 50%를 국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함
- 총공제액은 연간 ISK 200,000(부부합산 신고시 ISK 300,000)을 한도로 함

다.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일부 과세면제

- 의회는 2010년 6월 24일 채무면제이익(income arising from forgiveness of debt)에 대해 일부 과세면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승인함
- 개정 전 채무면제이익은 일반적으로 채무자(debtor)의 과세소득으로 보아 과세되었음

- 또한 채무면제이익 중 과세되는 부분은 2년 동안 과세연이 가능하며, 5년에 걸쳐 분할 인식하는 것도 가능함

1) 법인의 경우

- 2009~2011년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사업과정(general business operations)에서 발생한 채무가 면제되는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 중 일부를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 채무면제이익 중 ISK 50million까지는 해당 면제이익의 50%를,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면제이익의 75%를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 또한 채무면제이익 중 과세되는 부분과 관련하여 해당 금액까지 감가(감모)상각대상 자산을 조기 상각하는 혜택을 부여함
- 감가(감모)상각대상 자산이 없는 기업은 과세되는 부분을 3년에 걸쳐 분할 인식하는 것이 가능함

2) 개인의 경우

- 자동차 대출금(car loans)을 2009-2011 과세연도 사이 면제받는 경우 해당 면제이익은 그 규모에 따라 일부 과세면제가 가능함

아이슬란드의 채무면제이익의 과세면제비율 :개인

채무면제액 (ISK) <sup>1)</sup>	과세면제비율 (%)
~ 15,000,000	100
15,000,000 ~ 30,000,000	50
30,000,000 ~	25

주: 1) 부부합산 신고시 두 배를 적용함



## | 정책 흐름 |

- 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0년 세제개편(안)
- OECD국가의 국가채무 건전성 비교분석 결과 발표
-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 한-파나마 조세조약 체결 협상 타결
- 태풍 “곤파스”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 악성 지방세 체납, 「전자공매시스템」 도입으로 징수 강화

# 일자리 창출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0년 세제개편(안)

\* 본 자료는 2010년 8월 24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에서 발표한 「일자리 창출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0년 세제개편(안)」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I. 기본 방향

### 1. 세제개편 여건

#### 1 국내외 경제여건

■ **(대의 경제여건)**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이다이나, 국제금융시장 및 주요국 경기 등 불안요인이 상존

• 개도국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국제기구들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

\* 2010년 세계경제 성장전망(%)

- IMF : ('09. 10)3.1 ('10. 1)3.9 ('10. 4)4.2 ('10. 7)4.6, OECD : ('09. 11)3.4 ('10. 5) 4.6

- 다만, 미국 · 중국의 성장세 둔화조짐,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우려,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소지 등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

• 하반기 국제유가는 상반기보다 소폭 상승할 수 있으나, 원유재고 · 유럽 재정위기 영향 등 감안시 급등 가능성은 제한적

\* 국제유가(Dubai油, \$/bbl) : ('10. 상반기) 77 → ('10. 하반기 전망) 80대 초반

• 국제금융시장은 국제공조 노력 등으로 점차 안정을 회복하고 있으나, 당분간 높은 변동성 지속 예상

- **(국내경제 동향)** 내수 · 수출 호조로 경기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서민생활 여건도 점차 나아질 전망
- **(성장)** 상반기 중 내수와 수출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전년 동기 대비 7.6% 성장
  - 하반기에도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연간으로 정부 전망치인 5.8% 성장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
- **(고용)** 경기회복이 고용창출로 연결되면서 금년에 30만명의 일자리 증가가 가능할 전망(7월 취업자 : 전년 동월 대비 +47.3만명)
- **(소비자물가)** 2%대의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경기회복, 곡물 등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향후 물가여건이 다소 어려워질 가능성(연간 3% 내외)

#### 2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저하되어 경제성장이 일자리 창출 및 서민의 체감경기 개선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일자리 창출 지원)**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 제고를 위해 세제를 고용친화적으로 전환하고, 성장잠재력 확충 등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 모멘텀을 강화할 필요

• **(서민생활 안정)** 경제성장의 성과가 서민생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등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을 안정적으로 개선할 필요

### 3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 최근 국제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중대한 문제로 부각되면서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재정건전화 노력 착수
  - \* (미국) 임기 내 재정적자 절반 축소('09년  $\Delta 9.9$  → '13년  $\Delta 4.2\%$ ), 신규 의무지출 증가, 세입감면시 Paygo 원칙 도입('10. 2)
  - \* (영국) '16년 균형재정달성('09년 재정적자  $\Delta 12.6\%$ )을 위한 재정책임법 제정('10. 2)
-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재정건전화 원칙 마련에 합의하고, 재정건전성 강화를 강조(6.5, 부산)
- 조세감면의 기득권화, 각종 정책 수립시 감면제도 신설 등으로 인해 국세감면 규모가 국가재정법상 법정한도를 2년 연속 초과하는 상황
- 저출산·고령화로 세입기반은 축소되나, 복지·통일비용 등 재정소요는 증가될 전망으로 비과세·감면 축소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 2. 세제개편 추진방향

### 2010년 세제개편 기조

- ◆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친화적 세제를 구축
- ◆ 경제회복의 성과가 취약계층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 추진
- ◆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정비, 세원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대 추진

비전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  
(활력 있는 경제 · 건전한 재정)

4대기본  
방향

일자리 창출  
지원

서민생활  
안정

지속성장  
지원

재정건전성  
제고

추진  
전략

- 고용친화적 세제 구축
- 고용유발 효과가 큰 업종 지원 강화
- 취약계층 고용 인센티브 강화

- 저소득 근로자 지원
- 농어민 등 취약계층 지원
-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
- 기부문화 활성화

- 신성장동력 확충 지원
- 기업 경쟁력 강화
- 국제회계 기준 도입 관련 보완
- 저출산·고령화 대응

- 과표 양성화
- 비과세·감면 축소
- 신규세원 발굴

## II. 주요 개편내용

### 1. 일자리 창출 지원

#### 1 고용친화적 세제 구축

##### 기본방향

◆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물적자본 중심의 투자지원제도에서 인적·지적자본 중심의 세제지원제도로 지원방향 전환

- ① 현행 투자금액 중심의 세제지원제도를 고용창출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고용창출투자 지원제도로 전환
- ② 고용유발효과가 큰 업종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① 고용창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신설

- 투자금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임투제도를 폐지하고, 고용기준을 추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로 전환

- 기업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현행 임투제도와 같이 7% 세액공제하되, 공제한도로 「고용증가인원 × 일정금액\*」을 설정

\* 예시) 고용증가인원 1인당 1,000만원

- ☞ 청년(15~29세) 취업문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 고용의 경우에는 공제한도를 1.5배 확대 적용

- ☞ 투자세액공제혜택을 신규고용창출 인원에 비례해서 받도록 함으로써 고용창출형 투자를 유도

※ 적용시한 : '12. 12. 31

#### ② 지역특구·외투기업 세제지원시 지원한도 및 고용인센티브 신설

- **(지원한도 신설)** 지역특구·외투기업에 대한 총세제지원 한도를 투자금액의 50~70% 이내로 설정
  - ※ EU의 경우 투자금액 대비 10~50% 정도 인센티브(현금·세제지원) 상한 설정
- **(고용인센티브 신설)** 지역특구·외투기업이 고용을 증대시키는 경우 투자금액의 20%까지 추가 지원
  - \* 예시) 고용증가인원 1인당 1,000만원씩 추가지원

#### ③ 소기업 판단시 인원기준을 폐지하고,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대체

- **(현행)**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5~30%)의 소기업 판단시 업종별 인원기준\* 및 매출액(100억원 미만, 공통요건) 기준 운영 중
  - \* (제조업) 100명, (축산업·건설업·여객운송업 등) 50명, (기타) 10명
- **(개정)** 소기업 인원기준이 고용증대에 대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인원기준을 폐지하고,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대체

#### ④ 중소기업 범위 산정시 인원기준을 고용친화적으로 개편

- 유연근무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범위 산정시 파트타임 근로자(週 15~40시간)에 대한 계산방법 변경(현행 “1인” → “0.5인”으로 계산)
  - ※ 既往종종인 제도 : 중소기업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 적용에 있어 파트타임 근로자 채용시 증가인원 1인당(0.5인으로 계산) 150만원 세액공제

#### ⑤ 기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 고용증대 및 기업상속 활성화를 위해 기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 기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 ☞ (현행) 중소기업 → (개정) 중소기업 + 매출액 2

천억원 이하 기업\*

\* 단, 상속 후 10년간 정규직근로자 수 평균이 상속연도의 1.2 배 유지 조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

- 최대주주 지분을 요건 완화 : 상장기업 지분율 40% 이상 → 30% 이상

**2 고용유발효과가 큰 업종 등에 대한 지원 강화**

**1** 고용유발효과가 큰 업종에 대한 세제지원

• 청소업(3,029개), 경비업(960개), 시장·여론조사업(413개), 인력공급업(8,296개) 등 고용유발효과가 큰 업종을 세제지원 대상 중소기업 업종에 추가  
- 지원내용

- ☞ (창업단계) 창업중소기업 감면(4년간 50%)
- ☞ (운영단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5~30% 감면), 최저한세율 우대(7%), 법인세 분납기한 우대(2개월),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 등

\* 취업유발계수('07, 명/10억원) : (제조업) 9.2, (건설업) 16.8, (서비스업) 18.1, (청소업·경비업 등 기타사업서비스) 24.2 (시장·여론조사업 등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13.9

**2**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의 세제 지원 신설

• 해외 사업장을 폐쇄하고 국내로 복귀하여 창업·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3년 100%, 2년 50% 소득세·법인세 감면  
- (지원요건) ①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한 사업장 폐쇄 ②해외사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수도권 밖에 신설 등

**3** 지방경제 활성화 지원

• 지방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지방 및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제도 일몰 연장('10년말 → '12년말)  
- 다만, 문턱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해 감면을 차등적

용(수도권 연접 시·군 지역 50%, 그 외의 지역 100%)

**3**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

**1**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4년간 50% 감면하여 고용여건이 취약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  
\* 장애인 10인 이상 고용 및 장애인 고용비율 30% 이상 등

**2**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취약계층(저소득층·장애인·고령자 등)을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수준의 최저한세율(7%) 적용  
\* 저소득층·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 또는 서비스 이용자 중 취약계층 비중이 30% 이상인 기업 등  
• 사회적 기업 세액감면제도(4년간 50%)의 일몰연장('10년말 → '13년말)

**2. 서민·중산층 지원**

**1** 저소득 근로자 지원

**1**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실질소득 지원을 위해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8% → 6%)

**2** 근로장학금 소득세 비과세

• 대학생이 받는 근로장학금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여 근로장학금 수령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문제 해소

## 2 농·어민 등 취약계층 지원

### 1 농민에 대한 양도세 부담 경감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제도의 일몰을 연장('10년말 → '12년말)하여 고령·은퇴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영농규모화 유도

\* 고령(65~70세)인 은퇴 농업인에 대해 75세에 달할 때까지 지급

### 2 농·어민 및 장애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

-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 범위 확대(중량 2톤 미만 농업용 로더 및 동력 제초기)
-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확대(양송이 재배용 복토, 어선용 유류 절감장치 및 고효율 축매기기)
- 시각장애인용 음성독서기를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보장구의 범위에 추가

### 3 다양한 종류의 탁·약주 제조 여건 마련

- 다양한 종류의 탁·약주가 출시될 수 있도록 탁·약주 제조시 과일·채소 등 원료 및 첨가재료의 범위 확대

### 4 경차소유자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 일몰연장

- 경차소유자에 대해 유류세(교통세, 개소세)를 환급(연 10만원 한도)하는 제도의 일몰연장('10년말 → '12년말)

## 3 중소기업 지원

### 1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연장

- 음식·숙박업자 등 중소기업인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시 우대\*하는 제도의 일몰연장('10년말 → '12년말)

\* 우대내용

구 분	기준공제		우대내용 ('10년말 일몰)	
	공제율	공제한도	공제율	공제한도
음식·숙박업 영위 간이과세자	결제금액의 2%	연 500만원	2.6%	연 700만원
이외 개인사업자	결제금액의 1%	연 500만원	1.3%	연 700만원

### 2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연장

- 음식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시 우대\*하는 제도의 일몰연장('10년말 → '12년말)

\* 우대내용

구 분	기준 공제율	우대내용('10년말 일몰)
음식업자	구입액의 3/103	• 유흥주점 4/104, 법인 6/106 • 개인 8/108
이외 사업자	구입액의 2/102	우대 없음

### 3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 지원제도 일몰연장

- 폐업한 영세사업자(직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 2억 원 이하)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 -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특례 제도의 일몰연장('10년말 → '12년말)

\* 납부의무 소멸로 사업재개를 위한 사업자 등록, 금융기관 이용 애로 해소

## 4 중소기업 지원

### 1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

-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상생보증펀드\*」(신·기보)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제도(7%) 신설

\* 대기업과 은행 등이 출연해 보증기관(신·기보)에 펀드를 조성하여, 유동성 애로에 빠진 중소기업에 저리(低利)로 보증

및 대출지원 시행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대기업이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받은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제도 일몰연장('10년말 → '13년말)
- 납품 중소기업의 현금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현금성 결제를 하는 경우 지원하는 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10년말 → '13년말)
  - \* 지급기한 30일 이내 : 0.5%(대기업 0.4%), 지급기한 30일 ~60일 : 0.15%

### ② 중소기업 창업 및 가업승계 지원

- 창업자금을 증여(30억원 한도)받는 경우 5억원 공제 후 증여세를 저율(10%)로 과세하는 특례의 일몰연장('10년말 → '13년말)
-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30억원 한도)받는 경우 5억원 공제 후 증여세를 저율(10%)로 과세하는 특례의 일몰연장('10년말 → '13년말)

### ③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적용배제

- 구조조정 및 가업승계시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을 위해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최대주주 할증평가\* 배제특례 일몰연장('10년말 → '13년말)
  - \* 최대주주 할증평가제도 : 최대주주 지분에 내포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여 주식평가액에 일정률을 가산하여 할증 (중소기업 10~15%, 일반기업 20~30%)

### ④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세부담 증가 완화

- 중소기업 졸업시 당기분 일반R&D 세액공제율\*이 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되도록 하여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
  - \* 당기분 일반R&D 세액공제율 : (중소기업) 25%, (일반기업) 3~6%
  - \*\* 졸업유예기간(1~4년차) 25%, 그 이후 3년간(5~7년차) 15%, 2년간(8~9년차) 10%
- 중소기업 졸업시 최저한세율\*도 9년에 걸쳐 단계

적으로 인상\*\*되도록 하여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

\* 최저한세율 : (중소기업) 7%, (일반기업) 10~14%

\*\* 졸업유예기간(1~4년차) 7%, 그 이후 3년간(5~7년차) 8%, 2년간(8~9년차) 9%

### ⑤ 주류제조면허 시설기준 대폭 완화

- 중규모사업자가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주류제조면허 시설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다양한 술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 희석식 소주 : 희석조 및 검정조 총용량을 증류식 소주 수준으로 완화(130kl → 25kl 이상)
  - \*\* 맥주 : 전발효조는 925kl 이상 → 50kl 이상, 후발효조는 1,850kl 이상 → 100kl 이상으로 완화

## 5 기부문화 활성화

### ① 기부금 제도 간소화 및 지원 확대

- 기부금단체별 기부금 소득공제한도를 간소화(3단계 → 2단계)하고, 기부금단체간 구분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형평성 제고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
  - 개인 기부금 : 현행 20% → 30%로 확대
  - 법인 기부금 : 현행 5% → 10%로 확대

### ② 주식 기부 활성화 지원

- 비영리법인을 통한 기업의 간접지배 목적이 없는 선의의 주식기부\*에 대해서는 동일기업 주식보유 한도(5%, 성실공익법인 10%) 초과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비과세
  - \* 기부대상을 성실공익법인으로 한정하고, 기부 후 3년 이내에 10%를 초과하는 주식은 처분토록 하는 등 기부대상 및 사후관리 요건을 엄격히 규정

### 3. 지속성장 지원

#### 1 미래 신성장동력 확충 지원

##### ①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 R&D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 현재 LED응용, 바이오제약 · 의료기기 등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 R&D투자에 대해서는 일반 R&D 투자보다 대폭 우대\*

\* 일반 R&D 투자는 투자금액의 3~6%(중소기업 25%) 세액공제되나,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 R&D 투자는 투자금액의 20%(중소기업 30%) 세액공제

- 최근 신성장기술로 부상하고 있는 3D기술, 녹색기술, 차세대 LCD기술, IT융합기술 등을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② 신성장동력 산업 관련 주요 원자재 · 부품 등에 대해 관세율 인하

- 기초원자재 · 신성장동력산업 관련 품목 등 46개 품목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인하하여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
- 방송사업자가 수입하는 디지털 TV 방송장비에 대한 관세감면(50%) 제도 일몰연장('10년말 → '12년말)

##### ③ 저탄소 · 녹색성장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탄소저감 및 친환경자동차 등 녹색성장 관련 신기술을 외투 조세감면 대상(고도기술수반사업,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에 추가
- 저탄소 ·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10년말 → '13년말)

##### ④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연장

- 산학협력사업 활성화 유도를 위해 대학 내 설치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연장('10년말 → '13년말)

##### ⑤ 해외자원개발투자 등 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

- 해외자원개발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3%) 일몰연장('10년말 → '13년말)
-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시 투자세액공제제도(7%) 일몰연장('10년말 → '13년말)

#### 2 기업 경쟁력 제고

##### ① 기업구조조정 지원

- 민간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일몰기한 2년 연장('10년말 → '12년말)

- \* ① 채무상환 목적으로 기업자산 매각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 ② 부실기업이 주식을 증여받아 소각시 증여받은 주식가액 법인세 면제
- ③ 기업채무 상환을 위해 주주가 기업에 자산 증여시 증여가액 과세이연 등
- ④ 부실기업 양도 · 청산을 전제로 주주가 채무 인수시 채무면제의 과세이연 등
- ⑤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간 주식교환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

##### ②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세법 보완

- '11년부터 상장사 및 금융회사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법인세법 보완
- 동일한 경제행위에 대해서는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K-IFRS 적용기업과 비적용기업간 세부담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제 보완
- 변경된 기업회계기준을 가급적 수용하여 세무조정 부담 최소화

\* 적용시기 : '10.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③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

- 물류전문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화주기업의

전년 대비 증가한 제3차물류비용을 세액공제(3%) 하는 제도 일몰연장('10년말 → '12년말)

### 3 대학재정 건전화 지원

#### 1 학교법인 자회사 출연시 손비인정 특례제도 일몰 연장

- 학교법인이 100% 출자한 법인이 이익금을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에 대한 비용 처리를 허용하는 특례제도 일몰연장('10년말 → '13년말)

#### 2 학교법인 수익용재산 대체취득시 법인세 과세이연제도 일몰연장

- 학교법인이 수익용재산을 양도하고, 고수익용 재산으로 대체취득하는 경우 기존재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하는 특례제도(3년 거치 3년 분할과세) 일몰연장('10년말 → '13년말)

#### 3 사립대학 민간자본 유치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 일몰연장

- 민자방식으로 건설하는 사립대학 시설(예: 기숙사 등) 관련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 일몰연장('10년말 → '12년말)

\* 학교가 사업자에 대해 공급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사업자가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

### 4 저출산·고령화 대응

#### 1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2자녀 50만원 → 100만원, 2자녀 초과시 1인당 100만원 → 200만원)

#### 2 직장보육시설 등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지원 확대

- 여성근로자의 보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7% → 10%)
- 근로자 복지 향상 지원을 위해 기숙사 등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7%)의 대상에 종업원 휴게실, 체력단련실을 추가

#### 3 퇴직급여 세제 보완

-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300만원 → 400만원)하여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 지원
- 근로자가 받는 퇴직일시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퇴직일시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축소(45% → 40%)

#### 4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에 대한 세제지원

- 노인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5~30%) 대상 업종에 추가

### 4. 재정건전성 제고

#### 1 과표 양성화

##### 1 세무검증제도 도입

- 의사·변호사·학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 \* 사업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소득세 신고시 세무사 등에게 장부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도록 의무화

\* 사업서비스업(변호사, 회계사 등), 보건업(병·의원, 한의원, 수의사 등), 기타업종(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 중개업, 유흥주점, 산후조리원)

- 검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가산세(산출세액의 10%)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우선선정대상에 포함

☞ 세무사에 대하여도 추후 부실검증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징계조치

- 검증받은 사업자에 대해 검증비용 일부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제공

\* 검증비용의 60% 세액공제, 성실사업자에 준하여 교육비 · 의료비 소득공제, 무작위추출방식 정기세무조사 배제, 신고 기간 연장(다음해 5월말 → 6월말) 등

**2** 자영사업자 세원 투명성 제고

• 신용카드 가맹 등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 대해 적용되는 교육비 · 의료비 소득공제의 일몰연장('10년말 → '12년말)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복식장부 기장 · 비치 및 신고, 사업용 계좌 개설 · 신고, 3년 평균 수입금액 초과

•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아 추계과세\*를 받는 경우 기타경비에 대한 비용 인정비율(기준경비율)을 1/2로 낮춰 세부담을 낮춤으로써 기장신고 를 유도

\*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과세

• 주요경비(인건비, 임차료 등) : 증빙자료로 산정, 기타경비 : 기준경비율로 산정

**3** 계산서 ·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확립

- 계산서불성실 가산세율 인상 및 적용대상 확대
- 계산서 미발급에 대해 가산세율 인상(공급가액의 1% → 2%)
- 가산세 적용대상에 가공 및 위장계산서 수수를 추가(2%)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1건당 100원 → 200원)

**4** 허위계약서 작성시 양도세 비과세 · 감면 제한

• 부동산 양도시 조세회피 목적으로 허위계약서 작성시 비과세 · 감면 적용을 제한\*하여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 유도(※적용시기 : '11. 7. 1 이후)

\* 실거래가액과의 차액만큼 비과세 · 감면받는 세액에서 차감

**2** 비과세 · 감면 정비

기본방향

◆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50개 항목을 중심으로 비과세 · 감면제도 대폭 축소 · 폐지

- ① 단순한 보조금 성격의 감면제도를 정비
- ② 지원목적 달성, 이용실적 미미, 조세원칙 위배 및 국제기준에 배치되는 비과세 · 감면제도를 우선 정비
- ③ 일자리 창출,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비

**1** 각종 세액공제제도 정비

비과세 · 감면 정비내용	정비사유
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로 전환 * 수도권과밀억제권 외의 지역에서 사업용 자산 취득금액의 7% 세액공제	• 제도의 상시적 운용으로 투자유인 효과가 미미한 점을 감안
②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3%, 중소기업 7%) 적용대상 축소 - 전자상거래설비, ERP설비를 적용대상에서 제외 - 공장자동화 시설에 대한 관세감면 축소(20 → 10%, 중소기업 40 → 30%)	• 지원목적이 달성된 범용화된 설비임을 감안
③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일몰종료 * 신용카드 등 수입금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50%(또는 당해 연도 수입금액의 5%)에 대해 소득세 감면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등 거래가 어느 정도 보편화된 점, 성실사업자 교육비 · 의료비 소득공제 등과 중복되는 점을 감안

## ② 개별소비세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비과세·감면 정비내용	정비사유
① 외국인 관광객 등의 유희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제도 폐지 * 주한 국제연합군·미군에게 제공하는 유희음식행위 개별소비세 면제제도는 유지	• 과도한 조세지원제도 정비
② 주한외국공관이 구입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대상 축소(난방용, 차량용 석유류 → 차량용 석유류)	• 대부분의 국가가 차량용 석유류에 대해서만 면세

## ③ 배당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비과세·감면 정비내용	정비사유
①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제도* 일몰 종료 * 3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으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해 액면가 3천만원 이하자 비과세, 1억원 이하자 5% 저율과세	•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점을 감안
② 선박펀드 배당소득 과세특례제도 축소*(3억원 → 1억원) 및 일몰연장('10년말 → '13년말) * 개인의 선박펀드 배당소득 중 액면가 3억원 이하분 5%, 3억원 초과분 14%로 분리과세 → 1억원 이하분 5%, 1억원 초과분 14%로 분리과세	•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일몰연장 하되, 제도의 실효성에 비해 과도한 감면을 축소
③ 창투조합 등 출자 소득공제제도* 일몰종료 *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10%(종합소득의 30% 한도) 소득공제	•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창투조합을 통한 주식 등 양도세 비과세와 중복되는 점을 감안
④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 과세특례제도* 일몰종료 * 이익을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중 일부(지정 기부금 등/집합투자기구 수익) 비과세	• 이용실적이 없는 점을 감안

## ④ 기타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비과세·감면 정비내용	정비사유
①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소득세 과세시 공제금액 축소(50% → 40%)	• 일반 근로자의 퇴직소득과의 형평을 감안
② 바이오디젤*에 대한 교통세 면제제도 축소 * 폐식용유, 대두유, 폐식용유, 유채유 등으로 만든 식물성 경우 : 폐식용유로 제조된 바이오디젤에 한해 2년간 면제('10년말 → '12년말)	• 수입농산물 원재료 비용을 면세로 보전해주는 결과를 초래하여 지원의 당위성이 낮음
③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전환	• 개인 및 기관투자자(공모·사모펀드, 연기금 등)와의 과세불형평 해소
④ 고용유지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종료	• 고용중대세액공제 등 각종 고용지원세제를 신설한 점을 감안
⑤ 방위산업용품·항공기 항행안전용품에 대한 관세감면(10~30%) 제도 폐지	• 장기간 지속된 특성산업 지원제도 단계적 축소('07년 기발표)

## 3 신규세원 발굴

### ① 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대

- 국제기준에 맞추어 ①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 ②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용역\*\*, ③ 성인 대상 영리학원(무도학원\*\*\*, 자동차학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 적용 시기: '11. 7. 1 이후)

\*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가슴성형술, 주름살제거술 및 지방흡입술”에 한해 과세

\*\* “가족 및 양식어류”를 제외한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한해 과세

\*\*\* “체육시설 설치·이용법상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에 한해 과세 (단, “평생교육시설·노인복지시설 및 학생 대상의 무용학원”은 면세유지)

### ② 경마·경륜 및 경정장 장외발매소 입장행위 개별소비세 과세

- 경마·경륜 및 경정장의 장외발매소도 사행행위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장외발매소 입장행위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

\* 경마장 : 1인 1회 500원, 경륜·경정장 : 1인 1회 200원

### 5. 기타 과세제도 보완

#### ① 「노동조합법」에 위반하여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시 비용 불인정

- Time-off 제도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된 노조전임자 급여는 위법하게 지급한 경비로서 비용 처리를 불인정

\* '10. 7. 1부터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은 원칙적으로 위법이나, 예외적으로 사용자와의 교섭, 노조 유지·관리 활동 등을 할 경우 일정(Time-off) 한도 내에서 급여지급 허용

#### ② 취약종목 운동팀에 대한 세제지원제도 신설

- (적용대상)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으로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종목(33개)
- (지원내용) 법인세·중부세 부담 경감
  - ① 창단시 인건비·운영비에 대해 창단 후 3년간 7% 법인세 세액공제
  - ② 종목별 체육시설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해 중부세 비과세

#### ③ 택시 LPG부탄 유류세 지원체계 합리화

- 택시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지원총액 규모(221원/ℓ)는 동일하게 유지하되, 면세 및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를 조정하여 지원체계를 합리화
- (현행) 유류세 면제(185원/ℓ)+유가보조금 (36원/ℓ)=지원규모(221원/ℓ)
- (개정) 유류세 면제 (23원/ℓ)+유가보조금(198원/ℓ)=지원규모(221원/ℓ)

#### ④ 공매제도 개선

- 현행 공매절차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채납자 및 이해관계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고손실을 방지

- ① '공매개시결정 등기제도'의 신설
- ② '배분요구 종기(終期)' 신설을 통한 조속한 채권관계 확정
- ③ 공매물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으로 적정가액 입찰유도
- ④ '배분에 대한 이의절차' 신설을 통한 이해관계인 보호 강화

### Ⅲ. 세제개편 효과

#### 1. 세수증대 효과 : 총 1.9조원

- 금년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는 1.9조원
- (증가 요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종료(1.5조원), 지역특구·외국인 투자기업 세제지원 총액한도 신설(0.13조원) 등 2.9조원
- (감소 요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신설(△0.5조원),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0.18조원) 등 △1.0조원

#### 세제개편에 따른 연도별 세수 효과

(단위: 조원)

	총계	'11년 발생	'12년 발생	'13년 발생	'14년 발생	'15년 발생
소득세	△0.2	△0.05	△0.15	-	-	-
법인세	1.4	0.3	0.55	0.05	0.2	0.3
부가가치세	0.05	-	0.05	-	-	-
개별소비세	0.4	0.3	0.1	-	-	-
기타	0.25	0.2	0.05	-	-	-
합계	1.9	0.75	0.6	0.05	0.2	0.3

## 2. 세부담 귀착효과

- 대기업·고소득자 귀착분은 1.3조원(90.2%)이며, 중소기업·서민중산층 귀착분은 0.14조원(9.8%)
- \* OECD의 서민·중산층 기준(총급여 5,000만원) 적용시 계층별 효과임
- \*\*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전환 등 귀착효과를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 IV. 향후 추진 일정

### 1. 개정대상 법률 : 총 14개

- 내국세 : 13개
  -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증권거래세법, 주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세무사법
- 관세 : 1개
  - 관세법

### 2. 추진 일정

- 8. 23일 당정협의, 세제발전심의회위원회를 거쳐 정 부안 발표
- 9월중 입법예고, 부처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
- 9월말 금년도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 제출

# OECD국가의 국가채무 건전성 비교분석 결과 발표

\* 본 자료는 2010년 9월 7일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에서 발표한 「OECD국가의 국가채무 건전성 비교분석 결과 발표」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한국조세연구원(원장 : 원윤희)은 9. 7(화) 계간지 『KIPF 재정동향』(제1권 제3호)을 통해 28개 OECD국가들(멕시코, 터키 제외)의 국가채무 건전성 비교분석 결과를 발표
  -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GDP 대비 비율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 이외에도
    -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 순채무, 성장률과 금리의 격차 등 3가지 방법으로 측정한 국가채무 건전성 지표들도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참고 OECD국가 국가채무 건전성 비교분석 결과의 주요 내용

- 28개 OECD국가들(멕시코, 터키 제외)의 국가채무 건전성 비교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GDP 대비 비율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이외에도 국가채무 건전성 지표들도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우리 정부의 총금융부채는 GDP 대비 36.2%로 28개 OECD국가 중 3번째로 작음
    - 이는 다른 OECD국가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된 국민계정상의 일반정부(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총금융부채 기준이며, 한국 정부가 발표한 2010년 예산상의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는 36.1%임

지표별 국가순위 및 종합순위 산출결과

국가	종합순위								IFS	FS gap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		순채무 비율(%)		성장률(%) - 국채 금리(%)		항목별 순위 합계					
	순위	순위	순위	순위	순위	순위	순위	순위				
한 국	1.0	5	-29.7	4	1.7	3	12	1	0.84	5	1.58	2
스 웨 덴	1.7	4	-19.6	5	1.2	5	14	2	1.12	12	2.39	1
핀 란 드	-0.4	8	-57.0	2	0.2	8	18	3	1.36	17	-0.32	7
호 주	-1.8	13	0.2	7	1.5	4	24	4	0.77	3	-1.46	10
스 위 스	-4.0	21	-153.4	1	1.8	2	24	4	0.01	1	-3.08	15
룩셈부르크	-2.2	15	-40.5	3	0.4	7	25	6	0.87	7	-2.13	12
캐 나 다	-1.4	12	30.3	13	2.0	1	26	7	0.79	4	0.11	5
노르웨이	0.3	7	6.2	10	-0.3	10	27	8	1.09	11	0.23	4
덴 마 크	-0.5	9	0.5	8	-0.6	14	31	9	1.01	9	-0.84	8
뉴질랜드	-3.1	19	-3.3	6	-0.4	12	37	10	0.90	8	-3.22	17
폴 란 드	-4.8	23	27.9	12	1.0	6	41	11	3.34	25	-4.17	19
체 코	-3.0	18	4.8	9	-0.6	15	42	12	0.86	6	-3.22	18
아이슬란드	-2.6	16	45.0	18	0.1	9	43	13	1.03	10	-2.49	14
오스트리아	-1.1	10	40.9	16	-1.0	18	44	14	1.32	15	-1.81	11
벨 기 에	1.9	2	83.3	25	-0.9	17	44	14	1.16	13	1.04	3
헝 가 리	2.1	1	60.1	22	-2.7	24	47	16	1.40	18	-0.15	6
슬 로 박	-6.4	27	18.4	11	-0.3	11	49	17	0.64	2	-6.58	24
네덜란드	-2.0	14	34.4	14	-1.4	22	50	18	1.55	22	-3.09	16
독 일	-1.2	11	52.7	19	-1.4	21	51	19	1.48	21	-2.35	13
이탈리아	1.8	3	104.1	27	-2.3	23	53	20	1.70	23	-1.22	9
그 리 스	1.0	6	97.8	26	-9.6	28	60	21	5.06	27	-11.82	28
프 랑 스	-3.2	20	57.2	21	-1.3	20	61	22	1.44	19	-4.43	20
아일랜드	-4.7	22	39.9	15	-5.3	27	64	23	6.59	28	-9.17	27
일 본	-2.8	17	64.3	23	-3.1	25	65	24	2.15	24	-5.68	21
영 국	-5.7	26	53.5	20	-1.0	19	65	24	1.47	20	-6.50	23
미 국	-7.1	28	66.6	24	-0.5	13	65	24	1.33	16	-7.48	25
포르투갈	-5.0	24	114.9	28	-0.6	16	68	27	1.32	14	-6.25	22
스 페 인	-5.2	25	44.3	17	-3.9	26	68	27	3.94	26	-7.99	26

- 향후 국가채무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응이 필요
  - 순채무비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 : 국가채무의 절대수준을 낮게 유지할 뿐 아니라, 채무증가 속도에 맞춰 국가 보유자산을 확대하고 관리를 강화할 필요
  - 국채이자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 : 국채발행 원활화 및 국채 수요기반 확충 등 제도개선 노력을 강화하여 국채발행 이자율 하락 유도
  - 국채 평균만기가 길어지도록 유도 : 장기물(10년·20년) 국채발행 비중을 점차 확대하여 보유국채의 평균 만기를 늘릴 필요
- 또한, 국가채무 건전성을 다각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기 지표들 이외에 대외채무 비중, 민간채무, 경상수지 등의 지표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 대외채무 비중 : 대외채무 비중이 높을수록 위기에 취약
    - 그리스, 포르투갈 등 PIGS국가들은 대외채무 비율이 높아 국가채무 리스크가 큰 반면, 일본은 국가채무 규모는 매우 크지만, 국내채무가 대부분이어서 단기간 내 위기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민간채무 비율 : 민간채무 규모가 커지면 금융기관이 부실화되어 정부부문으로 전이되고 재정건전성이 저해될 가능성 상존
    -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유럽국가는 국가채무뿐만 아니라, 민간채무 규모도 커서 국가채무 리스크가 더욱 상승
    -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우리나라 등은 국가채무 규모는 작지만 민간채무 규모가 커서 잠재적인 국가채무 리스크 상존
    - 경상수지 :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는 재정적자와 더불어 해당 국가가 잠재적인 성장 능력 이상으로 수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중기적으로 국

- 가채무 건전성을 저해
  - 그리스, 포르투갈 등 PIGS국가들과 미국, 영국 등은 재정수지 외에 경상수지도 만성적인 적자상태여서 국가채무 리스크가 더욱 상승
  - 일본은 재정수지는 적자상태지만, 경상수지는 지속적인 흑자를 유지하여 중기적으로 국가채무 리스크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독일, 스웨덴, 스위스, 우리나라 등은 재정수지와 함께 경상수지도 양호하여 중기적으로 국가채무 건전성도 양호
  - 또한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2010년 6월말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의 절대규모는 2,742억달러에 달하며, 금액기준으로 세계 6위 수준
- 또한 향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신성장 동력 확충 등에 대비한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의 건전성 유지에 유의할 필요

#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 본 자료는 2010년 8월 29일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1.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 1. 주택거래 및 가격 동향

- 아파트 거래가 수도권 중심으로 '09. 10월부터 위축되기 시작하여 감소폭이 확대 (다만, 지방은 예년 수준을 유지)
- 6~7월에는 수도권·서울 모두 예년 대비 50% 이상 감소하여 금융위기('09. 1월) 이후 최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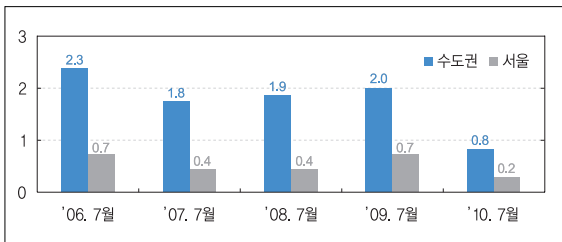
#### 아파트 거래량 증감률 추이

(%, '06~'09년 동월평균비)

구분	'10. 1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국	18.3	7.7	-0.6	-4.7	-29.2	-28.9	-20.2
수도권	-14.3	-26.2	-35.5	-46.2	-59.6	-60.7	-55.4
(서울)	(-1.9)	(-13.5)	(-35.5)	(-54.9)	(-66.7)	(-65.2)	(-58.8)
지방	41.5	34.4	30.1	33.6	0.4	-0.5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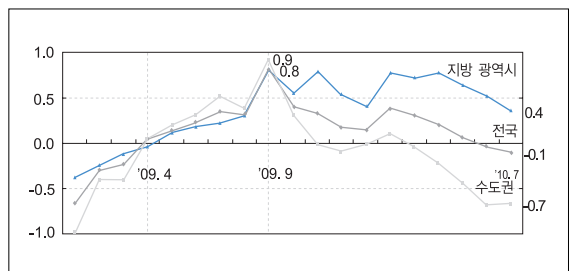
#### 아파트 거래 건수

(단위: 만건)



-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권(-54.4%)보다 강북권(-60.8%)이 큰 폭으로 감소('10. 1~7월)
- 경기도에서는 1기 신도시(-63.4%) 등 서울 인접지역의 거래가 크게 위축
  - \* 7월에 서울 25개구 중 20개, 경기 31개 시군 중 20개, 인천 8개구 중 6개 지역에서 50% 이상 감소
- 주택가격은 '09. 9월 이후 하향 안정세로 전환되었으며, 특히 수도권은 3월 중순 이후 25주 연속 하락세 지속
  - \* 지방의 경우 일부 광역시 중심으로 소폭 상승세

####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증감률



- '05~'06년중 크게 상승했던 과천·분당 등은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하여 체감하락률이 높은 상황
- 최근 신규입주가 집중된 고양·용인 등도 하락폭이 커지면서 분양당시 가격보다 시세가 낮은 단지도 발생

\* 중대형 아파트 중심으로 시세가 분양가보다 5천만~1억원 정도 하락

### 아파트 거래 건수

(단위: 만건)

구분	수도권	서울	강남	강북	강남3구 재건축	과천	분당	고양	용인
'10. 3~7월중	-2.0	-1.6	-1.6	-1.7	-6.5	-6.0	-3.5	-4.6	-3.2
고점 대비	-3.8	-1.5	-1.6	-2.5	-9.2	-11.4	-15.6	-8.3	-14.7

• 이에 따라 신규주택 시장도 위축되어 대부분 지역에서 청약경쟁률\*이 저조하고, 분양물량\*\*도 감소

\* 1~7월 민간분양 130개 단지 중 청약미달 94개(수도권 46, 지방 48)

\*\* 수도권 7월 공동주택 분양승인은 최근 5년 동월 평균 대비 39% 감소

•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

### 대법원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구분	'10. 1월	3월	5월	7월
서울	84.0	83.3	79.6	78.4
경기	82.2	81.1	75.8	74.1

■ 최근 주택가격 안정세는 그간 상승폭이 컸던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하향 조정되는 과정으로 평가

• 가격 안정은 금년 입주물량 증가, 집값 하락 기대 심리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 수급여건\*을 감안할 때, 안정세가 지속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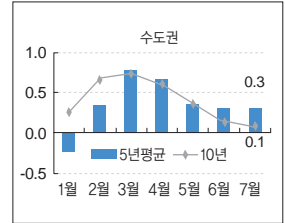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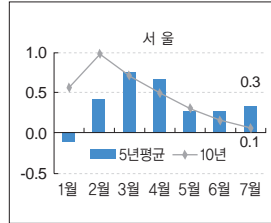
\* '10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예정물량(17.5만호)은 '07~'09년 평균의 116% 수준이며, 이 중 54%가 하반기에 입주 예정

■ 전셋값은 2~3월중 상승하다가 4월 이후 안정화되고 있음

•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예년보다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전세수요 증가 예상

\* 입주물량이 풍부한 은평(6~8월중 -2.6%), 파주(-2.3%), 고

양(-1.9%)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전셋값 하락현상도 발생



## 2. 주택건설 및 입주 동향

■ 주택건설(인허가)은 금융위기 이후 급감했던 작년보다는 증가했으나, 예년보다 저조한 수준

### 주택건설 인·허가 현황

(단위: 만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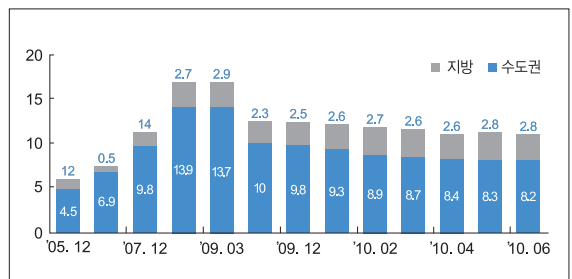
구분	'05~'09년 평균		'09년		'10년		
	연간	1~7월	연간	1~7월	1~7월	예년동기비	전년동기비
실적	44.9	18.2	38.2	12.2	12.7	-30.2%	4.2%

■ 미분양은 장기평균(7만~8만호)보다 많은 11만호로 적체 지속

• 특히, 준공 후(47%)와 중대형(60%) 비중이 높아 시장기능을 통한 해소에 한계

### 미분양 아파트 현황

(단위: 만호)



■ 신규아파트 입주율은 거래 위축에 따른 기존주택 매각 애로 등으로 평균 40% 수준에 불과

- 특히, 지방과 중소기업 아파트의 입주율이 더욱 낮은 상황

### 입주실태 조사결과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건설협회, 건설사)

구분	단지	총세대	분양세대(A)	입주세대(B)	입주율(B/A)
계	76	31,525	25,755	10,451	40.6%
지역별	수도권	43	15,268	5,941	43.7%
	지방	33	16,257	4,510	37.1%
업체 규모별	대형업체	23	13,123	6,956	63.4%
	중소업체	53	18,402	3,495	23.7%

[입주지정 종료일 기준]

- 업체들은 선입주-잔금납부 유예, 입주기간 연장(2→6개월), 연체이자 감면 등 입주촉진을 위한 자구노력 시행중

### 3. 평가

- 집값 안정에 따라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 실수요 중심의 시장재편 등 긍정적 효과 발생
- 그러나, 거래위축이 장기화되면서 입주예정자와 기존주택 처분희망자를 중심으로 입주·거래불편이 심화
-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도 거래가 안 되어 이사 곤란
- 신규 분양주택 입주예정자들도 기존주택 거래 위축으로 인한 자금조달 애로로 입주지연 증가
- 대출을 받아 신규 분양주택에 입주한 가구도 기존주택 매도가 안 되어 상당한 금융비용 부담 발생
- 거래침체에 따른 미입주 증가 등으로 주택업체의 어려움 가중
- 이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하도급·자재업체 등도 동반 위축되고 있으며,

- \* '10. 상반기 경기도 폐업 중개업소는 3,833개(경기 전체 등록업소의 15%)
- \* '10. 6월말 서울 이삿짐업체는 969개로 전년 동월비 6% 감소
- \* '10. 5월 기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건수 전년 동월비 25% 감소

⇒ 최근의 주택시장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 마련이 시급

## II. 대응방안

- ▷ 현재의 집값 안정 기조는 확고히 유지
- ▷ 실수요자의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보완적·한시적 대책 마련
- ▷ 전세자금 지원 확대 등 서민 주거안정 강화

### 1. 서민·중산층의 실수요 주택거래 지원

#### ① 주택기금을 통한 자금지원 확대(총 1조원)

- ① 신규주택 분양을 받은 자가 소유한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자에 대해 구입자금 지원요건 완화(4.23 대책 보완)
  - (적용대상 기존주택)
    - 신규주택 입주일 경과자 소유주택 → 입주 예정자(입주 6개월 전~입주일)의 소유주택도 포함
    - 85㎡ 이하, 6억원 이하 → 85㎡ 이하(금액제한 폐지)
  - (구입자 소득)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 (시행기간) '10년말까지 → '11. 3월말까지
  - \* 지원조건은 현행 유지(호당 2억원 한도, 연 5.2%, 20년 상환, 투기지역 제외)
  - ☞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10. 9)
- ②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에 대해 주택 기금에서 구입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신설)

- (지원대상)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 가구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대상주택) 85㎡ 이하, 6억원 이하(투기지역 제외)
- (지원조건) 호당 2억원 한도 내에서 연 5.2% 금리 적용
- (지원시기) '11. 3월말까지 한시 지원
- ☞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10. 9)

**2 주택 실수요자의 거래 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 ① 실수요자가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DII(총부채상환비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금융회사가 자율 심사·결정(투기지역 제외)
- (지원대상)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
- \* 주택취득 후 2년 이내 매도조건 부과
- (대상주택) 9억원 이하(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 (적용기한) '11. 3월말까지
- \* LTV(담보인정비율)는 현행 유지
- ☞ 금융회사 내규 개정('10. 9)
- ② 저소득층의 주택담보대출 애로 해소를 위해 대출 금액 1억원까지 소득증빙을 면제(현재 5천만원까지 면제)
- ☞ 감독규정 개정, 금융회사 내규 개정('10. 9~10)

**3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 ① 다주택자 양도세 증과\* 완화제도(일반세율 6~35%)의 일몰 시한('10년말 종료)을 2년 연장
- \* 다주택자 증과세율 : 2주택 50%, 3주택 60%
- ※ 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증과완화제도의 일몰시한도 2년 연장
- ② 수도권(서울제외)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증과완화, 종부세 비과세 및 법인세 추가과세 면제요건 완화

**수도권(서울제외) 매입임대 사업자 세제지원 요건 완화**

구분	현행	확대
임대호수	5호 이상	3호 이상
임대기간	10년 이상	7년 이상
취득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6억원 이하

\* 주택면적 기준 85㎡ 이하는 현행 유지

- ③ 취·등록세 50% 감면 시한('10년말 종료)을 1년 연장 추진
- 세부적인 감면대상 주택 등에 대해서는 9월중 별도방안 마련 예정(행안부)
- \* '06. 9~'10. 12월까지 취득세 2→1%, 등록세 2→1%로 감면중

**2. 주거비 경감 등 서민 주거지원 확대**

**1 주택기금의 서민·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 확대**

- 전세값이 높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저소득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4,900 만 → 5,600만원)
- 3자녀 이상 세대에 대해서는 추가지원(5,600 만 → 6,300만원)
- \* (대상) 60㎡ 이하, 보증금 8천만원 이하,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
- 서민들의 전세자금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기간 연장시 가산금리 인하(0.5 → 0.25%p)
- \* (대상) 85㎡ 이하,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대출한도 6천만원
- ☞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10. 9)

**2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지원 확대**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세대에 대한 보증한도 확대
- \* (현행)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등 소득증빙자료로 확인
- (개선)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환산한 방식 등 추가
- 보증시 소득입증이 어려운 서민층의 소득입증방법

다양화

\* (현행)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등 소득증빙자료로 확인

(개선)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환산한 방식 등 추가

⇒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등('10. 10)

- 주신보 보증분에 대해서는 신용가산금리 부과를 금지하고, 보증부 대출의 금리실태 점검 등 감독 강화

☞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약관 개정 등('10. 9~10)

③ 전세금 반환자금 대출보증 지원

- 임차인의 이사 등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기간 만료시 임대인이 반환할 전세금 부족자금 대출에 주신보가 보증

\* (보증대상) 9억원 이하 주택 임대인, (보증한도) 주택당 5천만원, (보증기한) 2년, 연장시 최장 4년

☞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등('10. 10)

3.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일부 조정

- 보금자리주택은 서민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당초 계획('12년까지 수도권 60만호, 지방 14만호)대로 사업승인 등 추진

- 다만, 금년 하반기 지정예정인 4차 지구는 3차지구(광명 시흥) 이월물량 등을 감안하여 지구수 축소 검토

\* (1~3차) 각 4~6개 지구 지정 → (4차) 2~3개 지구수준 지정

- 현재 주택시장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사전예약 물량을 줄이고, 사전예약 시기도 탄력 조정

- 3차 지구 사전예약('10. 11) 물량은 80 → 50% 이하로 축소하고, 4차 지구 사전예약('11. 상) 물량·시기는 추후 조정

- 보금자리지구 내 민영주택 공급비율(현행 25%)은 지구별 특성을 감안하여 상향 조정

- 민영주택도 수요·지구여건 등을 감안, 85㎡ 이하

건설 허용

4. P-CBO 등을 통한 건설사 유동성 지원

① P-CBO(또는 CLO)를 통한 건설사 유동성 지원

- 총 3조원 규모의 P-CBO·CLO\*(건설업 비중 50%\*\*) 발행 추진

- '10년 하반기부터 발행하되 1차로 5천억원 규모를 발행하고, 수요를 보아 가며 추가발행 추진

\* Primary Collateralized Bond·Loan Obligations : 건설사 및 기타 업종의 회사채 또는 대출채권을 기초로 유동화자산을 구성하여 신보 보증을 통해 최우량등급으로 상향된 증권을 시장에 매각

\*\* 건설업 외에 비건설업을 50% 편입하여 업종편중에 따른 위험 완화

- 후순위증권은 발행기업, 건설관련 기관·단체, 신용보증기금이 순차적으로 부담

② 미분양주택 매입조건 완화(4·23 대책 보완)

-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대상과 업체별 매입한도 확대

- 매입대상 : 공정률 50 → 30% 이상(지방 미분양주택)

\* 하반기 매입실적을 보아가며 수도권(서울 제외)으로 확대여부 검토

- 매입한도 : 업체당 1,500억 → 2,000억원

⇒ 대한주택보증 내규 개정을 거쳐 차기 매입시부터 적용

- 미분양 리츠·펀드 매입대상을 현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한정하고 있으나 금년 말까지 준공예정인 미분양까지 확대하고, 추가적인 활성화 방안을 지속 강구

### Ⅲ. 추진계획

#### ① 서민·중산층의 실수요 주택거래 지원

추진과제	조치사항	추진일정	소관기관
• 기존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기금 융자요건 완화 (4.23 보완)	기금운용계획 변경	'10. 9	국토부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기금운용계획 변경	'10. 9	국토부
• 주택 실수요자 거래 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감독규정, 금융회사 내규개정 등	'10. 9~10	금융위 금감원
• 다주택자 양도세 증과배제 시한 연장	소득세법 개정	'10. 하	재정부
•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관련세법 시행령 개정	'10. 10	재정부
• 취득특세 감면 시한 연장	지방세법 개정	'10. 하	행안부

#### ② 주거비 경감 등 서민 주거지원 확대

추진과제	조치사항	추진일정	소관기관
• 주택기금 전세자금 지원 확대	기금운용계획 변경	'10. 9	국토부
• 주신보 전세자금 대출 보증 지원 확대	주택금융공사 내규 등 개정	'10. 9~10	금융위 금감원
• 전세금 반환자금 대출 보증 지원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등	'10.10	금융위

#### ③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일부 조정

추진과제	조치사항	추진일정	소관기관
• 사전예약 물량·시기 조정 등 공급 보완		'10. 하~	국토부

#### ④ P-CBO 등을 통한 건설사 유동성 지원

추진과제	조치사항	추진일정	소관기관
• P-CBO 발행 지원	금융위지침 통보	'10. 9~	금융위
• 환매조건부 매입대상 및 업체별 매입한도 확대 (4.23 보완)	대한주택보증 내규 개정	'10. 9~	국토부
• 미분양 리츠·펀드 매입대상 확대(4.23 보완)		'10. 9~	국토부

# 한-파나마 조세조약 체결 협상 타결

\* 본 자료는 2010년 8월 19일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에서 발표한 「한-파나마 조세조약 체결 협상 타결」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기획재정부는 8. 16(월)~18(수)간 서울에서 한-파나마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교섭회담(제1차)을 개최, 전체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하였음 (수석대표 : 주영섭 세계실장/Frank de Lima 파나마 재경부 차관)

\*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자원에너지협력 외교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지역으로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확대 중

- 파나마는 우리나라의 대 중남미 시장 진출의 중요한 거점지역으로서, 무역, 투자, 건설, 자원개발 등 측면에서 협력 잠재력이 큰 국가로,
- 금번 조세조약 타결로 우리 기업이 파나마에 진출 시 조세부담이 경감됨에 따라 대 파나마 투자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금번 조약은 향후 정식 서명·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

## 참고 1 파나마 개황

- 일반사항
  - 국 명 : 파나마공화국(Republic of Panama)
  - 수 도 : 파나마 시티(인구 120만)
  - 인 구 : 350만명(2009)
  - 면 적 : 78,200km<sup>2</sup>(남한의 3/4)
  - 언 어 : 서반아어(공용어), 영어
  - 인 종 : 메스티조, 물라토 60%, 흑인 13%, 백인

11%, 인디언 10%, 중국계 5%, 기타

- 화 폐 : 미 달러화를 발보아(Balboa)란 이름으로 통용
- 종 교 : 카톨릭(93%)

### ■ 정치현황

- 국 체 : 공화국
- 정 체 : 대통령 중심제(5년 단임제)
  - 대통령 : Ricardo Martinelli Berroca (2009. 7. 취임)
  - 외교장관 : Juan Carlos Varela (2009. 7. 취임)
- 의회제도 : 단원제(71석, 임기 5년)
- 독립 일 : 1903. 11. 3(콜롬비아로부터 독립)
  - ※ 1821. 11. 28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 ■ 경제현황(2009)

- GDP(실질) : 247억달러
- 1인당 GDP(실질) : 7,132달러
- 수출 : 109억달러(바나나, 설탕, 새우 등)
- 수입 : 129.3억달러
- 물가상승률 : 2.4%
- 실업률 : 6.6%
- 외 채(공공부문) : 127.3억달러
- 주요 자원 : 구리, 마호가니, 새우, 수력 등

■ 우리와의 관계

• 외교관계

- 62. 9. 30 수교
- 73. 5 주파나마대사관 개설
- 79. 3 주한파나마대사관 개설

• 최근 주요인사 교류

(방 문)

- 00. 12 반기문 외교부 차관
- 02. 6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 03. 11 한명숙 대통령 특사
- 04. 9 정찬용 대통령 특사
- 07. 1 국회정보위(단장:신기남 의원)
- 08. 3 세계여성법관회의(김영란대법관)
- 10. 1 이윤성 국회부의장
- 10. 4 신각수 외교차관

(방 한)

- 01. 7 Aleman 외교장관
- 02. 3 Arias 외교차관
- 05. 5 Tante 정부혁신위원장
- 05. 11 Lewis 제1부통령 겸 외교장관
- 06. 9 Graciela Dixon 대법원장
- 06. 11 Ricardo Duran 외교차관
- 06. 11 Gustavo Garcia 파나마대학총장
- 07. 5 Tarte 정부혁신위원장
- 07. 9 Zubieta 파나마운하청장
- 10. 5 Duboy 주택부장관(한·중남미고위급포럼)

• 협정체결현황 :

- 문화협정(74. 6 체결)
- 항공협정(79. 12 체결)
- 투자보장협정(01. 7 체결)
- 사증면제협정(01. 7 체결)
- 봉사단파견협정(06. 4 체결)

• 수출입현황 및 주요 품목(2009)

- 수출 : 44.77억달러  
(선박, 자동차, 전자제품, 섬유, 철강, 기계류 등)

- 수입 : 10.91억달러  
(선박해양구조물, 원유, 석유제품)

• 경제협력

- (1991-2009년간 무상원조 지원실적)
- 연수생 초청 : 101명(56만달러)
- 전문가 파견 : 6명(8만달러)
- 봉사단 파견 : 70명(176만달러)
- 물자공여 : 16건(106만달러)
- 프로젝트 : 4건(347만달러)
- 개발조사 : 1건(25만달러)
- 재난구호 : 36.3천달러  
(2010년)
- 연수생 초청사업 : 3명(예정)  
(유상원조)
- 1998년 의료-보건 현대화사업(2천만달러)

• 교민현황(2010. 2)

- 교민 : 81명
- 체류자 : 225명

• 주한 파나마 명예영사 : 주명희(주부산)

■ 북한·파나마와의 관계

- 외교관계 없음

참고 2 우리나라 조세조약 체결 현황(2010. 8월 현재)

시행국(77)

국 가	체 결 일	국 가	체 결 일
그 리 스	('98. 07. 10)	남아프리카공화국	('96. 01. 07)
네 덜 란 드	('81. 04. 17)	네 팔	('03. 05. 29)
노 르 웨 이	('84. 03. 01)	뉴 질 란 드	('83. 04. 22)
덴 마 크	('78. 01. 07)	독 일	('78. 05. 04)
라 오 스	('06. 02. 09)	라 트 비 아	('09. 12. 26)
러 시 아	('95. 08. 24)	루 마 니 아	('94. 10. 06)
룩셈부르크	('86. 12. 26)	리투아니아	('07. 07. 14)
말레이시아	('83. 01. 02)	멕시코	('95. 02. 11)

국 가	체 결 일	국 가	체 결 일
모 로 코	(’00. 07. 01)	몰 타	(’98. 03. 21)
몽 골	(’93. 06. 06)	미 국	(’79. 10. 20)
미 얀 마	(’03. 08. 04)	방글라데시	(’84. 08. 22)
베 네 수 엘 라	(’07. 01. 15)	베 트 남	(’94. 09. 09)
벨 기 에	(’79. 09. 19)	벨 라 루 스	(’03. 06. 17)
불 가 리 아	(’95. 06. 22)	브 라 질	(’91. 11. 21)
사우디아라비아	(’08. 12. 01)	스 리 랑 카	(’86. 06. 20)
스 웨 덴	(’82. 09. 09)	스 위 스	(’81. 04. 22)
스 페 인	(’94. 11. 21)	슬 로 바 크	(’03. 07. 08)
슬로베니아	(’06. 03. 02)	싱 가 폴	(’81. 02. 11)
아랍에미리트	(’05. 03. 02)	아이슬란드	(’08. 10. 23)
아 일 랜 드	(’91. 12. 27)	아제르바이젠	(’08. 11. 25)
알 바 니 아	(’07. 01. 13)	알 제 리	(’06. 08. 31)
에 스토 니 아	(’10. 05. 25)	영 국	(’78. 05. 13)
오 만	(’06. 02. 13)	오 스트 리 아	(’87. 12. 01)
요 르 단	(’05. 03. 28)	우즈베키스탄	(’98. 12. 25)
우 크 라 이 나	(’02. 03. 19)	이 란	(’09. 12. 08)
이 스 라 엘	(’97. 12. 13)	이 집 트	(’94. 02. 05)
이 태 리	(’92. 07. 14)	인 도	(’86. 08. 31)
인 도 네 시 아	(’89. 05. 03)	일 본	(’70. 10. 29)
중 국	(’94. 09. 28)	체 코	(’95. 03. 03)
칠 레	(’03. 07. 25)	카 자 흐 스 탄	(’99. 04. 09)
카 타 르	(’09. 04. 15)	캐 나 다	(’80. 12. 19)
쿠 웨 이 트	(’00. 06. 13)	크 로 아 티 아	(’06. 09. 15)
태 국	(’07. 06. 29)	터 키	(’86. 03. 27)
튀 니 시 아	(’89. 11. 25)	파 키 스 탄	(’87. 10. 20)
파푸아뉴기니	(’98. 03. 21)	포 르 투 갈	(’97. 12. 21)
폴 란 드	(’92. 02. 21)	프 랑 스	(’81. 02. 01)
핀 란 드	(’81. 12. 23)	필 리 핀	(’86. 11. 09)
형 가 리	(’90. 04. 01)	호 주	(’84. 01. 01)
휘 지	(’95. 02. 17)		

### 서명국(3)

국 가	체 결 일	국 가	체 결 일
나 이 지 리 아	(’06. 11. 06)	수 단	(’04. 09. 09)
콜 롬 비 아	(’10. 07. 27)		

### 가서명국(12)

국 가	체 결 일	국 가	체 결 일
리 비 아	(’09. 08. 14)	우 루 과 이	(’10. 01. 20)
키르기즈스탄	(’08. 11. 18)	타 지 키 스 탄	(’09. 10. 28)
탄 자 니 아	(’99. 04. 01)	투르크메니스탄	(’09. 11. 03)
바 레 인	(’10. 03. 16)	가 봉	(’10. 04. 09)
가 나	(’10. 04. 21)	스 위 스	(’10. 04. 29)
예 멘	(’10. 07. 07)	파 나 마	(’10. 08. 18)

### 개 정(13)

국 가	체 결 일
영 국	(’96. 12. 29-발효)
프 랑 스	(’92. 03. 01-발효)
뉴 질 랜 드	(’97. 10. 10-발효)
벨 기 에	(’96. 12. 31-발효)
일 본	(’99. 11. 22-발효)
네 덜 란 드	(’99. 04. 02-발효)
독 일	(’02. 10. 31-발효)
오 스 트 리 아	(’02. 03. 30-발효)
캐 나 다	(’06. 12. 18-발효)
태 국	(’07. 06. 29-발효)
벨 기 에	(’10. 03. 08-서명)
쿠 웨 이 트	(’07. 10. 02-서명)
싱 가 폴	(’09. 07. 30-가서명)

## 태풍 “곤팍스”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 본 자료는 2010년 9월 2일 국세청 징세과에서 발표한 「태풍 “곤팍스”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국세청은 한반도를 통과한 제7호 태풍 “곤팍스” 로 인하여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가
  - 경제적 피해로부터 신속한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세법에서 정하는 최대한의 범위 안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할 계획임
- 세정지원 주요 내용
  -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하고
  - 자진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에 대해서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것임
    - \*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장 18개월까지 징수유예
  -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여 주기로 하였음
  - 또한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하여 피해복구에 전념하도록 지원하고
  - 태풍 등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게 됨
  - 아울러 피해 납세자에게 근로장려금 및 부가가치

세 등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서 지급할 예정임

### ■ 세정지원 신청방법

- 납세자가 직접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한 신청 및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가능

#### ※ 홈택스를 이용한 납세유예 신청방법

- ① 홈택스 로그인 → ② 세무서류 신고·신청 → ③ 일반 세무서류 → ④ 납부기한연장신청(징수유예신청) → ⑤ 신청서입력 → ⑥ 신청하기

- 특히, 집단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정신적 여유가 없을 것이므로
- 관할 세무서장이 재해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납기연장 등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 납세자도 찾아서 적극 세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것임

**참고**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사유

## ■ 납기연장 사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 납세자가 화재·전화, 그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재해의 범위 : 화약류·가스류 등의 폭발사고, 광해, 교통사고, 건물의 도괴 기타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재해(다만, 조세 포탈 목적의 고의적인 행동에 의한 재해는 제외)

\*\* 사업에 심한 손해의 정도 : 물리적 또는 법률적 요인으로 사업의 경영이 곤란할 정도의 현저한 손해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판매의 격감, 재고의 누적, 거액매출채권의 회수곤란, 거액의 대손발생,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조업중단 또는 일반적인 자금경색으로 인한 부도발생이나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 징수유예 사유(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중상해로 장기 치료를 요하는 때
-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

하여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때

## ■ 징수유예기간 확대 내용(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 일정기간\*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한하여 징수유예기간을 최대 9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

\*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분에 한하여 적용

\*\* 소규모 성실사업자 기준

-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6억원 이하
- 최근 5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1년간 3회 이상 국세를 체납, 현재 국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 최근 3년간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제외
- 복식부기의무, 사업용계좌 개설·사용의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 사업자는 세법에 따른 기장·개설·가입 의무를 이행할 것

## 악성 지방세 체납, 「전자공매시스템」 도입으로 징수 강화

\* 본 자료는 2010년 8월 30일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에서 발표한 「악성 지방세 체납, 「전자공매시스템」 도입으로 징수 강화」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행정안전부는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악성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해 8월 31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매사전실익분석정보』 온라인 공유를 통한 「전자공매시스템」을 도입한다.

■ 행안부는 이미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대금 배분정보』를 활용하여 전국적으로 7천 5백만원의 지방세 체납을 징수한 바 있고,

• 이번 『공매사전실익분석정보』 공유를 통해 앞으로 더욱 체계적인 지방세 체납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 공매 대금 배분 수령자 중 지방세 체납자가 있을 경우 공매 대금을 자치단체에서 압류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26개기관, 253건: 7천 5백만원)

■ 행안부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매사전실익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6월 7일부터 8월 중순까지 경기도 6개 자치단체에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공매사전실익분석정보』 활용 및 『공매의뢰』 등을 시범운영했다. 이에 따라

① 악성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차량에 대해 공매 실익을 신속 판단, 실익이 있는 재산은 공매 처

분해 체납처분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공매중지에 따른 “공매대행 수수료”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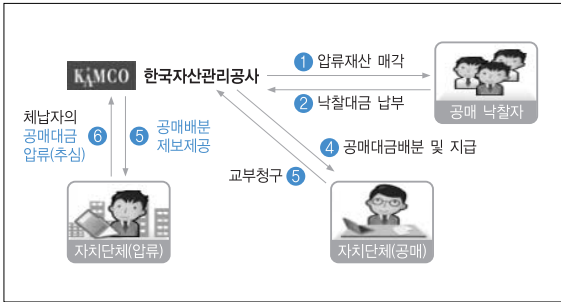
② Off-Line(우편) 및 수작업으로 관리하는 공매업무를 전산화함으로써 행정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가져왔다.

■ 행안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매대금 배분정보』, 『공매사전실익분석정보』, 『공매의뢰』 등의 On-line처리로 연간 15억원의 예산절감 효과 및 80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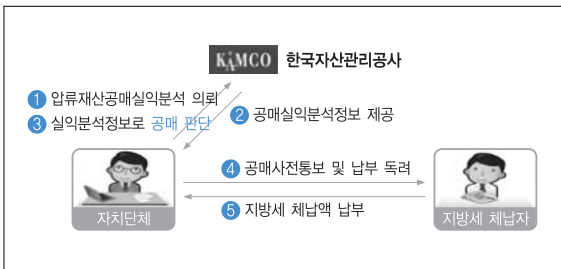
■ 송영철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내년 1월부터는 공매의뢰부터 공매종료까지 모든 공매과정을 온라인으로 전산처리(전자공매)하여 업무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조세정의를 실현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지방세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1** 행정안전부 ↔ 한국자산관리공사 정보공유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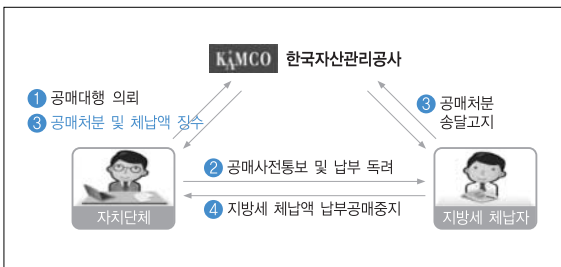
① 공매대금배분정보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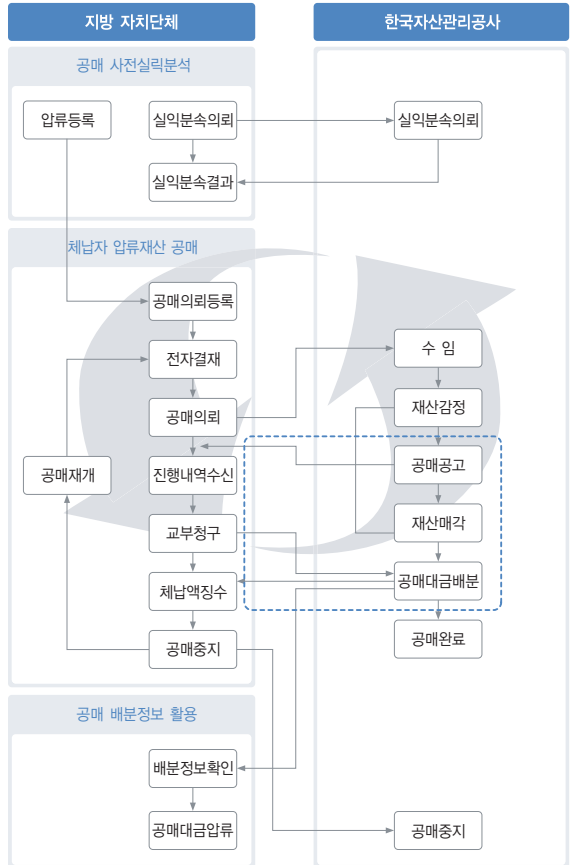
② 공매 사전실익분석정보 활용



③ Off-Line업무, 지방세 공매업무 전산화



**참고 2** 공매 업무처리 흐름도



※ 점선은 2011. 1월 온라인 연계 시행(현재 개발중) 예정

**참고 3** 예산절감 및 체납징수액 등 기대효과(예상)

**예산 절감**

• '10. 8. 31 적용시 (연간 15.12억원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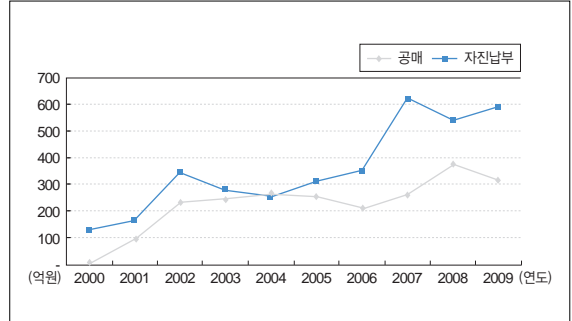
업무구분	내 용
합 계	15.12억원
공매대금배분정보 활용	• 0.75억원 - 체납자 공매대금을 압류하여 징수
공매 사전실익분석정보 활용	• 7.84억원 - 우편발송료: 1.08억원 - 등기부등본 발급: 0.31억원 - 공매중지(실익無) 수수료: 5.85억원 - 공무원 인건비(2명): 0.6억원
공매의뢰 등 공매업무 전산화 1차	• 6.53억원 - 우편발송료: 2.93억원 - 공무원 인건비(12명): 3.6억원

• '11. 1월 적용시 (연간 17.73억원 효과)

업무구분	내 용
합 계	15.12억원
공매대금배분정보 활용	• 0.75억원 - 체납자 공매대금을 압류하여 징수
공매 사전실익분석정보 활용	• 7.84억원 - 우편발송료: 1.08억원 - 등기부등본 발급: 0.31억원 - 공매중지(실익無) 수수료: 5.85억원 - 공무원 인건비(2명): 0.6억원
공매업무(전체) 전산화	• 9.14억원 - 우편발송료: 3.74억원 - 공무원 인건비(18명): 5.4억원

**체납 징수액**

- 사전실익분석 활용, 공매업무 활성화로 체납액 80억원 추가 징수 예상
- '09년 공매 및 자진납부 실적의 10%(공매 30억원, 자진납부 50억원)



(단위: 억원)

연 도	공매로 인한 체납징수액	공매중 체납자 자진납부	비고
2000년	11	126	
2001년	96	161	
2002년	234	349	
2003년	242	280	
2004년	265	254	
2005년	253	311	
2006년	211	348	
2007년	255	622	
2008년	374	539	
2009년	315 (30억)	586 (50억)	

※ 전자공매를 통한 공매활성화로 체납징수액 연간10%(80억원) 증가 예상

**참고 4** 공매 대금 배분정보 활용현황

- 자치단체 → 한국자산관리공사 압류요청 및 체납액 징수 현황

(기간: '09. 8. 7~'10. 8. 23, 단위: 건/원)

시도	수신 기관	정보 활용 자치단체(압류요청)			체납액 징수	비 고
		기관수	건수	금액		
계	181	26	253	172,626,790	74,948,060	
부산	16	4	25	6,479,080	6,479,080	동구, 진구, 동래구, 해운대구
대구	8	1	7	8,814,120	3,395,620	남구
인천	9	4	32	2,563,820	2,563,820	중구, 남구, 남동구, 부평구
광주	5	3	9	1,693,160	1,693,160	동구, 서구, 북구
대전	5	1	2	1,297,680	1,297,680	서구
울산	5	-	-	-	-	
경기	31	4	18	86,627,180	3,468,830	수원, 부천, 고양, 용인
강원	16	2	84	29,434,330	29,324,400	춘천, 원주
충북	11	2	24	11,076,560	11,076,560	청주, 충주
충남	11	1	6	20,745,490	12,000,000	아산
전북	12	2	26	1,725,010	1,478,550	전주, 군산
전남	17	1	17	1,946,430	1,946,430	순천
경북	18	-	-	-	-	
경남	15	1	3	223,930	223,930	창원시(진해구)
제주	2	-	-	-	-	

**참고 5** 공매 사전실익분석정보 등 활용효과

- 추진일정별 비용절감 효과

2010. 8월(1,437백만원)		2011.1월(1,698백만원)	
추진업무	절감액	추진업무	절감액
사전실익분석 활용	724백만원	사전실익분석 활용	724백만원
공매의뢰, 교부청구 등 1차	293백만원	공매업무 전체(1차 포함)	374백만원
공무원 인건비(14명)	420백만원	공무원 인건비(20명)	600백만원

■ 상세 비용절감 효과

- ① 사전실익분석 활용에 따른 체납처분비용 절감 (724백만원)

업무구분	내 용	산출방법	금액 (백만원)
사전실익분석	의뢰서 우편발송	61,922건 X 1,750원	108
	등기부등본 발급	61,922건 X 500원	31
	실익없는 공매중지	해제수수료, 감정료 등	585

〈산출근거〉

- 1) 우편발송 : 실익분석 의뢰건수(61,922건) × 등기우편료(1,750원) = 108백만원  
 ※ 사전실익분석 의뢰건수는 압류 12개월 경과, 300백만원 이상 체납액 기준 (참고7)
- 2) 등본발급 : 사전실익분석 의뢰건수(61,922건) × 발급비(500원) = 31백만원
- 3) 공매중지 : 해제수수료, 감정료 등 공매중지 자치단체 지급비용 = 585백만원  
 ※ 2009년 실익 없는 사유 등으로 자치단체에서 2,655건 공매중지처리 (참고6)

- ② 공매의뢰, 교부청구 등 공매전산화 1차 비용 절감 (293백만원)

업무구분	내 용	산출방법	금액 (백만원)
공매의뢰	의뢰서 우편발송	10,777건 × 1,750원	19
공매중지	요구서 우편발송	3,356건 × 1,750원	6
교부청구	공매대행통지 우편발송	39,316건 × 1,750원	69
	공매통지 우편발송	56,917건 × 1,750원	100
	배분기일지정 우편발송	10,566건 × 1,750원	18
점유관계 확인	주민등록·세대주 우편발송	46,438건 × 1,750원	81

(단위: 건수, 일수)

〈산출근거 : 2009년 자치단체 공매실적 기준〉

- 1) 공매의뢰 : 공매 의뢰건수(10,777건) × 등기우편료(1,750원) = 19백만원
- 2) 공매중지 : 공매중지 요구건수(3,356건) × 등기우편료(1,750원) = 6백만원
- 3) 교부청구 : 총 3회 교부청구건수(106,799건) × 등기우편료(1,750원) = 187백만원
- 4) 점유관계 확인 : 전입세대주 조회 회신건수(46,438건) × 등기우편료(1,750원) = 81백만원

③ 업무협의를, 배분 등 공매전산화 2차 비용 절감(81백만원)

업무구분	내 용	산출방법	금액 (백만원)
업무협의	협의회신 우편발송	34,486건 X 1,750원	60
배분계산서	배분(안)의견 우편발송	2,752건 X 1,750원	5
	교부신청 우편발송	8,913건 X 1,750원	16

〈산출근거 : 2009년 자치단체 공매실적 기준〉

- 1) 업무협의 : 총 22회 업무협의 건수(34,486건) × 등기우편료(1,750원) = 60백만원
- 2) 배분계산 : 배분(안)의견 제출건수(2,752건) × 등기우편료(1,750원) = 5백만원  
교부신청 건수(8,913건) × 등기우편료(1,750원) = 16백만원

④ 업무처리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절감(600백만원)

단축일수(a)	연간 근무일수(b)	투입인원(c=a/b)	인건비
5,053일	251일	20명	600백만원

업무구분	처리건수	건당(분)	소요시간	소요일수
계	231,719		40,423	5,053
의뢰물건 실익분석 등	10,777	20	3,592	449
공매 예고통지	10,777	5	898	112
공매대행의뢰	10,777	10	1,796	224
교부청구	106,799	10	17,800	2,225
주민등록 회신	46,438	5	3,870	484
업무협의	34,486	20	11,495	1,437
배분(안)에 대한 의견	2,752	5	229	29
배분계산서 교부신청	8,913	5	743	93

〈산출근거〉

- 1) 2009년 자치단체 지방세 공매실적의 오프라인 업무처리 건수를 기준으로 전산화에 따라 단축되는 업무별 처리 시간을 측정
- 2) 측정된 업무처리 시간은 2006년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조세정리업무시스템 구축에 따른 BPM과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으로 업무개선 및 업무처리 시간 감축 효과를 적용하여 산정(문서 기안·결재, 우편물 발송·관리, 문서관리 등 생략, 감축 등)
- 3) 1일 평균근무시간은 취업규칙에 명시된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 4) 1인당 평균인건비를 연 3천만원으로 감안하여 비용 산정(7급 공무원 상당)
  - 실익분석~주민등록 회신(투입인원14명, 420백만원)
  - 업무협의~교부신청(투입인원 6명, 180백만원)

**참고 6** 공매중지에 따른 자치단체 지출비용

- 실익 없는 재산 공매중지에 따른 자치단체, 체납처분비용 현황
- 체납자 기준 : 07년 2,282건, 08년 1,981건, 09년 2,655건

(단위: 백만원)

비용구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2,122	744	793	585
해제수수료	694	243	211	240
감정료	1,151	407	480	264
송달료	119	38	43	38
공고료	155	55	58	42
기타	3	1	1	1

**〈비용 설명〉**

- 1) 해제수수료 : 공매해제시 발생하며 해제금액의 0.5%이며, 최저 12만원
- 2) 감정료 : 공매입찰을 위한 매각예정가격 결정 및 현황조사를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발생
- 3) 송달료 : 체납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공매진행 사실을 통지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우편비용(매각 전 체납세액 자진납부 유도하고 있음)
- 3) 공고료 : 압류재산 매각을 위하여 신문에 공고하는 비용으로 실제 신문사에 지급되는 비용

〈공매대행수수료 종류 및 산정기준〉

(단위: 만원)

구분	요율	대상금액	수수료		비고
			최저	최고	
자납수수료	0.5%	체납세액	12	600	
해제수수료	0.5%	해제금액	12	600	
매각수수료	2.8%	매각금액	12	3,360	

\* 수임일로부터 10일 이내는 수수료 면제하며, 매각예정가격이 없는 경우 해제수수료는 최저수수료 적용

\* 해제수수료는 체납세액과 매각예정가격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함

**참고 7** 공매사전실익분석 서비스 대상 자치단체의 체납액 현황

- 현재부터 12개월 이내 압류된 3백만원 이상 체납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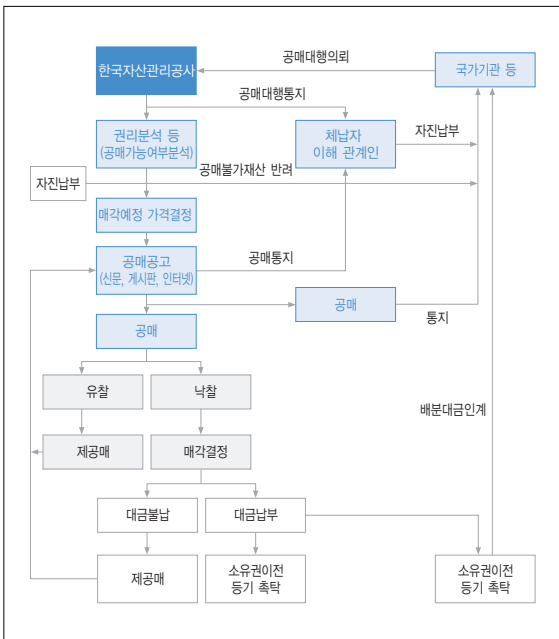
(2010. 8. 10 현재, 단위: 건, 백만원)

시도	건수	체납액	비고
합계	61,922	879,026	
부산	4,020	53,772	
대구	3,973	47,453	
인천	3,447	50,759	
광주	1,716	26,919	
대전	1,530	33,193	
울산	2,204	32,479	
경기	24,415	360,082	
강원	2,454	36,559	
충북	1,414	20,134	
충남	4,142	62,653	
전북	2,039	24,434	
전남	1,672	28,938	
경북	4,486	46,469	
경남	4,037	52,975	
제주	373	2,207	

참고 8

공매 개요(한국자산관리공사 - 공매 전문 처리 기관)

- ① 정부 위탁재산 관리 · 매각(채납자 압류재산 공매처분)
  - 국세징수법 61조(공매) 등에 따라 채납징수에 공매 활용
  - 세금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채납하고 있는 불량 채납자들의 압류재산을 공매처리하여, 경쟁입찰을 통해 처분하여 채납을 징수할 수 있도록 대행하는 업무
- ② 지방세 압류재산 공매대행 업무 흐름도



※ 매각조건 결정 : (1차) 감정가격 100%, (2차 이후 50%까지) 매회 10%씩 체감 (50% 이하) 협의 결정  
 ※ 공고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공고  
 ※ 송 달 : 우편송달, 교부송달, 공시송달, 유치송달  
 ※ 공매방법 : 일반경쟁입찰  
 ※ 대금납부기한 : (1천만원 미만)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1천만원 이상) 매각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참고 9

공매 사전실익분석 서비스 개요

- ① 지방세 체납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의뢰 전 실익분석
  - 지방세 체납 압류재산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기 전에 사전실익분석을 통하여
  - 압류재산에 대한 법률적 제한사항 등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권리분석, 공매진행 가능 여부, 공매진행 시 지방세 추당 가능 금액 등을 산출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 ② 실익분석 방법
  - 자치단체가 사전 실익분석을 의뢰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압류재산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관련 공부를 징구하여 추정가격 산정
  -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을 조사하여 공매 실익 여부와 지방세 추당가능 금액을 산출하고 압류 전 가처분, 가등기, 말소예고등기 등 처분에 제한이 있는 권리와 공매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를 조사하여 최종 공매진행 가능 여부 판단
  - 사전실익분석은 부동산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채납처분 전문기관의 권리분석이 필요한 6개의 용도를 대상으로 하며, 약식감정 의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음
- ③ 비용부담 등
  - 사전실익분석은 공매진행 가능한 재산의 공매대행 의뢰를 위하여 무상으로 제공 받는 서비스로
  - 공매와는 달리 별도의 수수료 없이 제반 비용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불필요한 공매행정비 등을 절감

# | 재정통계 |



■ GDP 대비 총조세 비중

0%

1. GDP 대비 총조세 비중

구분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Australia	21.0	20.3	20.8	20.8	21.1	21.5	22.3	21.8	22.9	25.1
Austria	33.9	34.6	34.5	34.5	35.0	33.8	34.5	34.9	35.1	36.1
Belgium	31.1	33.3	33.9	34.8	34.9	33.9	35.0	34.9	36.0	36.9
Canada	25.7	26.8	27.8	28.6	30.8	30.9	30.4	30.9	30.4	32.7
Czech Republic	-	-	-	-	-	-	-	-	-	-
Denmark	30.0	30.8	31.3	34.1	33.8	38.4	41.4	40.9	40.3	42.1
Finland	30.4	31.6	32.4	32.8	31.4	31.5	33.1	33.6	34.4	33.7
France	34.1	33.8	34.1	34.3	34.9	34.1	33.5	33.9	33.8	34.0
Germany	31.6	32.2	32.2	32.2	33.9	31.5	32.0	33.5	35.0	34.9
Greece	17.8	19.1	20.0	20.7	20.5	20.0	19.8	19.7	18.1	19.0
Hungary	-	-	-	-	-	-	-	-	-	-
Iceland	26.2	-	-	-	-	27.4	-	-	-	-
Ireland	24.9	26.9	27.5	27.9	28.6	28.5	29.5	28.3	28.4	28.9
Italy	25.5	25.3	26.2	27.0	26.4	25.7	26.3	26.3	23.9	25.1
Japan	18.2	17.6	18.1	18.4	18.7	19.6	19.9	20.6	22.3	22.9
Korea	-	-	-	-	-	-	-	12.0	11.6	12.7
Luxembourg	27.7	27.4	28.1	27.2	27.3	23.5	25.7	26.2	26.6	27.5
Mexico	-	-	-	-	-	-	-	-	-	-
Netherlands	32.8	34.2	35.2	35.9	34.7	35.6	37.1	38.2	39.3	39.7
New Zealand	24.1	24.9	26.9	23.4	24.4	26.1	25.0	26.7	27.3	30.6
Norway	29.6	30.8	32.6	33.5	34.8	34.5	37.0	38.9	39.3	39.0
Poland	-	-	-	-	-	-	-	-	-	-
Portugal	15.9	16.3	17.0	17.0	17.7	18.4	18.1	17.9	17.5	17.9
Slovak Republic	-	-	-	-	-	-	-	-	-	-
Spain	14.7	13.6	16.9	16.1	16.4	15.9	16.2	17.1	17.7	17.1
Sweden	33.3	34.0	34.9	36.9	37.9	37.8	38.6	39.9	39.1	40.3
Switzerland	17.5	18.1	18.1	18.9	19.9	19.3	19.0	19.4	21.3	22.2
Turkey	10.6	10.7	11.4	11.3	12.2	9.3	10.7	10.8	11.3	10.5
United Kingdom	30.4	31.2	33.1	34.3	36.0	36.7	34.8	33.1	31.2	34.2
United States	24.7	25.0	26.1	25.5	27.9	27.0	25.0	25.6	25.5	26.2
EU 19개국	27.6	28.3	29.2	29.7	30.0	29.7	30.4	30.6	30.4	31.1
EU 15개국	27.6	28.3	29.2	29.7	30.0	29.7	30.4	30.6	30.4	31.1
OECD - Europe	26.2	26.9	27.7	28.3	28.7	28.2	29.0	29.3	29.4	29.9
OECD - Total	25.5	26.0	26.9	27.2	27.8	27.5	28.0	27.7	27.9	28.7
OECD - America	25.2	25.9	26.9	27.0	29.4	28.9	27.7	28.2	27.9	29.5
OECD Pacific	21.1	20.9	21.9	20.8	21.4	22.4	22.4	20.3	21.0	22.8

(단위: %)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25.9	26.1	25.9	25.0	25.6	26.7	26.9	27.4	26.6	28.2	28.3	29.2
36.6	36.5	36.8	39.0	38.4	38.9	39.9	38.7	38.4	40.1	40.8	40.7
39.5	39.7	41.6	42.2	43.0	41.3	41.6	42.8	43.5	44.3	44.4	44.1
32.0	31.5	30.7	30.4	30.1	31.0	33.2	33.0	32.5	32.6	32.5	33.2
-	-	-	-	-	-	-	-	-	-	-	-
38.4	39.4	39.8	41.0	42.1	43.0	42.8	41.6	43.6	44.7	46.1	48.2
36.5	40.1	40.1	36.8	35.5	35.7	37.7	36.8	36.5	38.0	39.7	40.8
35.4	37.2	37.2	37.2	38.7	40.1	40.4	41.2	41.8	42.8	42.8	42.3
34.3	35.3	36.7	36.7	36.4	36.4	35.9	35.5	35.6	35.7	36.1	35.8
19.4	21.1	21.4	21.4	22.2	21.6	21.7	24.5	24.9	25.5	25.5	26.8
-	-	-	-	-	-	-	-	-	-	-	-
30.0	-	-	-	-	29.6	30.7	31.0	28.3	29.6	28.2	28.4
28.8	31.9	30.4	28.8	28.4	31.1	32.1	33.5	35.0	35.7	34.7	35.4
25.4	26.3	26.8	27.0	26.1	29.7	30.9	33.0	35.0	34.1	33.6	35.2
20.8	21.7	22.2	23.9	24.3	25.4	26.1	26.4	27.0	27.0	27.4	28.1
14.5	15.7	15.6	16.1	16.4	16.5	16.3	16.6	17.0	16.1	15.7	15.3
32.8	32.9	36.5	37.2	34.8	35.6	36.5	37.8	39.8	38.3	39.4	37.3
-	-	-	-	-	14.8	14.4	14.6	16.3	15.9	15.5	14.8
40.7	40.6	41.5	42.2	42.6	42.9	42.3	42.7	43.7	42.3	42.4	43.1
28.7	29.4	32.5	30.3	31.0	30.8	32.3	33.3	30.6	30.2	31.3	32.0
39.2	40.6	41.4	40.9	40.8	42.4	43.9	43.1	41.9	41.2	42.6	44.5
-	-	-	-	-	-	-	-	-	-	-	-
19.7	21.4	21.8	21.1	20.8	22.9	24.2	24.8	26.3	25.7	25.2	26.6
-	-	-	-	-	-	-	-	-	-	-	-
18.4	18.4	20.2	21.5	22.0	22.6	23.8	24.1	26.0	26.4	27.6	29.0
41.2	45.3	47.4	47.8	46.6	46.4	47.7	46.7	47.4	47.0	47.4	49.6
23.9	25.2	25.4	25.4	24.9	24.7	24.8	25.2	25.8	29.3	25.5	26.6
11.9	12.1	12.7	12.4	11.7	13.3	14.1	13.7	12.8	10.7	11.5	13.0
34.9	34.8	34.3	32.7	31.9	34.8	36.2	38.5	36.9	37.0	37.0	37.4
25.6	24.9	26.1	25.8	26.0	26.4	26.8	27.0	24.9	24.9	25.6	25.5
32.1	33.4	34.2	34.2	34.0	34.9	35.6	36.2	37.0	37.2	37.5	38.2
32.1	33.4	34.2	34.2	34.0	34.9	35.6	36.2	37.0	37.2	37.5	38.2
30.9	32.2	32.9	32.8	32.6	33.3	34.1	34.5	34.9	35.2	35.3	36.0
29.4	30.3	31.1	30.9	30.8	30.9	31.7	32.1	32.2	32.4	32.6	33.2
28.8	28.2	28.4	28.1	28.1	24.0	24.8	24.9	24.6	24.5	24.5	24.5
22.5	23.2	24.1	23.8	24.3	24.8	25.4	25.9	25.3	25.4	25.7	26.2

1. GDP 대비 총조세 비중 <계속>

구분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Australia	29.1	28.7	28.5	28.5	27.0	26.5	27.0	28.0	28.8	29.4
Austria	40.3	40.3	39.3	39.7	40.1	41.7	42.2	42.2	41.4	42.9
Belgium	44.7	43.4	41.6	42.0	42.2	41.8	43.3	43.6	43.6	44.0
Canada	34.2	33.7	34.8	35.9	36.4	36.0	35.4	35.2	35.6	35.9
Czech Republic	-	-	-	-	-	-	40.4	38.9	37.5	36.0
Denmark	48.9	49.4	48.3	46.5	45.9	46.3	47.7	48.7	48.8	49.2
Finland	39.3	42.5	42.1	43.5	45.1	44.9	44.4	46.9	45.7	47.0
France	42.8	42.1	41.9	42.0	42.4	42.0	42.4	42.8	42.9	44.1
Germany	36.3	35.9	36.2	34.8	36.0	37.0	37.0	37.2	37.2	36.5
Greece	27.3	24.6	23.8	26.2	26.3	27.1	27.6	27.9	28.9	35.9
Hungary	-	-	-	-	45.2	45.0	45.8	43.3	41.3	39.7
Iceland	28.7	31.3	31.4	30.9	31.3	32.1	31.1	30.6	31.2	32.3
Ireland	35.6	36.8	33.5	33.1	33.7	34.0	34.0	35.1	32.5	32.5
Italy	35.3	35.8	36.8	37.8	38.2	40.6	42.2	40.2	40.1	41.8
Japan	29.2	29.5	29.8	29.1	28.7	27.0	27.1	26.3	26.8	26.8
Korea	15.7	15.7	16.6	18.1	17.8	17.7	18.2	18.6	18.6	19.2
Luxembourg	37.5	36.1	35.3	35.7	33.4	34.1	36.5	36.8	37.1	37.6
Mexico	15.7	15.1	15.7	15.8	15.7	16.1	16.1	15.7	15.2	15.3
Netherlands	45.5	45.5	42.9	42.9	45.1	44.8	45.0	43.0	41.5	40.9
New Zealand	35.5	34.7	38.0	37.4	35.6	35.9	36.0	36.5	36.6	34.8
Norway	42.7	42.2	40.5	41.0	41.1	40.3	39.4	40.8	40.9	40.8
Poland	-	-	-	-	34.0	34.9	38.8	36.9	36.2	37.4
Portugal	25.1	26.8	27.5	27.7	28.8	30.8	29.3	30.1	32.1	32.7
Slovak Republic	-	-	-	-	-	-	-	-	-	-
Spain	30.8	30.9	32.7	32.5	32.8	33.8	32.8	32.9	32.1	31.9
Sweden	52.1	51.4	51.9	52.2	49.8	47.3	46.1	46.3	47.5	49.4
Switzerland	26.4	26.7	26.0	25.8	25.6	26.0	26.5	27.0	27.7	28.1
Turkey	14.0	13.2	13.9	14.9	15.6	16.7	16.9	16.5	16.8	18.9
United Kingdom	36.1	36.2	35.6	35.5	34.3	33.4	32.4	33.0	34.0	33.8
United States	26.5	26.3	26.6	27.3	27.1	26.9	27.1	27.5	27.9	28.3
EU 19개국	38.5	38.5	38.0	38.1	38.4	38.8	39.3	39.2	38.9	39.6
EU 15개국	38.5	38.5	38.0	38.1	38.3	38.6	38.9	39.1	39.0	40.0
OECD - Europe	36.3	36.4	35.8	36.0	36.5	36.9	37.3	37.3	37.1	37.9
OECD - Total	33.7	33.7	33.5	33.7	34.1	34.3	34.8	34.8	34.7	35.3
OECD - America	25.5	25.0	25.7	26.3	26.4	26.3	26.2	26.2	26.2	26.5
OECD Pacific	27.4	27.2	28.2	28.3	27.3	26.8	27.1	27.3	27.7	27.6

주 : EU 및 OECD 그룹은 권역별 단순평균수치임.  
 자료 : OECD, OECD, Stat(2010, 9).

(단위: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9.2	30.0	30.5	31.1	29.6	30.5	30.6	31.1	30.8	30.6	30.8	-
44.4	44.4	44.0	43.2	45.3	44.0	43.8	43.4	42.3	41.8	42.3	42.9
44.5	45.2	45.2	44.9	44.9	45.0	44.6	44.8	44.7	44.4	43.9	44.3
36.7	36.7	36.4	35.6	34.8	33.7	33.7	33.6	33.4	33.5	33.3	32.2
36.3	34.9	35.8	35.3	35.6	36.3	37.3	37.8	37.6	37.1	37.4	36.6
48.9	49.3	50.1	49.4	48.4	47.8	48.0	49.0	50.8	49.6	48.7	48.3
46.3	46.1	45.8	47.2	44.6	44.6	44.0	43.5	44.0	43.5	43.0	42.8
44.4	44.2	45.1	44.4	44.0	43.4	43.2	43.5	43.9	44.0	43.5	43.1
36.2	36.4	37.1	37.2	36.1	35.4	35.5	34.8	34.8	35.6	36.2	36.4
30.3	32.0	32.9	34.0	32.9	33.6	32.2	31.1	31.4	31.2	32.0	31.3
38.1	37.8	38.1	38.0	38.1	37.9	37.6	37.6	37.3	37.1	39.5	40.1
32.2	34.5	36.9	37.2	35.4	35.3	36.7	38.0	40.6	41.5	40.9	36.0
31.8	31.3	31.5	31.3	29.1	28.0	28.5	29.9	30.4	31.7	30.8	28.3
43.2	41.7	42.5	42.3	42.0	41.4	41.8	41.0	40.8	42.3	43.5	43.2
27.2	26.8	26.3	27.0	27.3	26.2	25.7	26.3	27.4	28.0	28.3	-
20.1	20.2	20.6	22.6	23.0	23.2	23.9	23.2	23.9	25.0	26.5	26.6
39.3	39.4	38.3	39.1	39.7	39.3	38.1	37.2	37.6	35.8	36.5	38.3
15.9	15.1	15.8	16.9	17.1	16.5	17.4	17.1	18.1	18.3	18.0	20.4
40.9	39.1	40.1	39.7	38.2	37.5	36.9	37.3	38.5	38.9	37.5	-
35.0	33.4	33.4	33.6	33.0	34.4	34.2	35.3	37.4	36.6	35.7	34.5
41.5	42.4	42.7	42.6	42.9	43.1	42.3	43.3	43.5	44.0	43.6	42.1
36.6	35.6	35.1	32.8	32.6	33.1	32.6	31.7	33.0	34.0	34.9	-
32.8	33.0	33.9	34.1	33.8	34.5	34.7	33.9	34.7	35.5	36.4	36.5
-	36.7	35.4	34.1	33.2	33.2	33.1	31.6	31.4	29.4	29.4	29.3
32.9	33.2	34.1	34.2	33.8	34.2	34.2	34.6	35.7	36.7	37.2	33.0
50.6	51.0	51.4	51.8	49.8	47.9	48.3	48.7	49.5	49.0	48.3	47.1
27.6	28.5	28.7	30.0	29.5	29.9	29.2	28.8	29.2	29.3	28.9	29.4
20.7	21.1	23.1	24.2	26.1	24.6	25.9	24.1	24.3	24.5	23.7	23.5
34.3	35.5	35.7	36.4	36.1	34.6	34.3	34.9	35.8	36.6	36.1	35.7
28.7	29.3	29.4	29.9	28.8	26.5	25.9	26.1	27.5	28.2	28.3	26.9
39.5	39.3	39.6	39.4	38.9	38.5	38.4	38.2	38.7	38.6	38.8	-
40.1	40.1	40.5	40.6	39.9	39.4	39.2	39.2	39.7	39.8	39.7	-
37.9	38.0	38.4	38.4	37.9	37.6	37.5	37.4	37.9	38.0	38.0	-
35.4	35.5	35.9	36.0	35.5	35.2	35.1	35.1	35.7	35.8	35.8	-
27.1	27.0	27.2	27.5	26.9	25.6	25.7	25.6	26.3	26.7	26.5	26.5
27.9	27.6	27.7	28.6	28.2	28.5	28.6	29.0	29.9	30.0	30.4	-



각 언론매체에 보도된 한국조세연구원 관련 주요 기사내용입니다.

- 편집자 주 -

### 조세연구원 “복지지출 적정수준으로 억제해야”

“공기업 부채, 국민부담 될 가능성 높아”

조세연구원은 12일 재정 건전성 문제와 관련, “남유럽 재정 위기를 거울삼아 복지 지출을 경제력에 상응한 적정 수준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연구원 박형수 재정분석센터장은 이날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정책세미나에서 “우리나라는 이번 경제 위기로 인한 재정 부담보다 향후 인구 고령화로 인해 추가로 발생할 재정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선진국은 1960~80년대에 복지 지출이 크게 늘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 재정 건전화에 따라 정체 또는 감소했지만 남유럽 국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재정 위기를 맞았다”고 평가했다.

박 센터장은 “우리도 2005~2010년 연평균 복지 지출 증가율이 9.8%나 된다”며 “외환위기 이후 주요 복지제도 도입으로 제도상 선진국 수준의 틀이 마련됐지만 단기간의 급속한 복지 재정 확대 속에서 비효율성이 누적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복지 지출은 현행 제도만으로도 크게 증가하는 만큼 조세부담률 상향과 세출 구조조정 없이는 복지 재정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복지 등 법정 지출에 대해 페이그(Pay-as-you-go)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출산 고령화, 잠재성장률 하락, 73조~2천300조원으로 추정되는 통일비용 부담 등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방채무에 대해서도 언급, “잔액이 25조6천억원으로 지방세수의 절반 수준이고 지자체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도 2009년 12.8%에 그쳐 절대 수준이 위기상태라고 보기 힘들다”면서도 “다만 재정책임성 약화와 관리시스템이 취약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센터장은 그러나 공공기관 채무에 대해선 “LH, SH 공사 등 공기업의 부채 급증은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고 가격인상이나 사업축소 등 직접적인 형태로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정부 산하 22개 공기업 부채는 작년말 212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9.9% 수준으로 증가한 상황이다.

그는 “우리나라와 스위스, 덴마크, 벨기에 등은 국가채무는 작지만 민간채무 규모가 커 잠재적 국가채무 위험이 상존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향후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과 재정 건전성 강화를 동시에 추구해야겠지만 당분간 재정 건전성에 치중해야 할 것”이라며 “총지출 증가율을 경성성장률 또는 세입증가율보다 일정 정도 낮게 제한하는 ‘한시적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0-09-12일자〉

## “1주택자 양도세 폐지해야”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다주택자 중과 완화 같은 조치들은 수요진작이 아닌 자본이득세의 정상화 및 기준과세제도 정비차원에서 지금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주택산업선진화(세제분야)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노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의 주택시장 침체는 조세제도가 아니라 추가 가격하락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부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양도세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주택자산에 대한 종합적 세제개편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도소득세의 기본틀은 자본이득도 소득으로 봐 정상적인 소득과세기반에 포함시키되 최고세율 상한 규정을 두는 주요 선진국들의 세제개편 방향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오히려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어렵게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교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가 이뤄진 1999년 이후 자가거주율은 57%로 지속적으로 상승해 2003년 60%에 도달했다”며 “그러나 양도세 중과가 강화된 2003년 이후에는 오히려 자가거주율이 미세한 하락세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는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및 대출규제는 소형아파트의 가격을 급등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해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힘들어졌다”고 분석했다.

이교수는 또 “다주택자가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1차 투자자라는 순기능도 존재한다”며 “이들을 규제하기보다는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연계된 임대소득 과세제도를 정비해 순기능을 강화하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더 효율

적”이라고 제안했다.

(매일경제신문 2010-09-11일자)

## 한국 재정건전성 OECD 중 최고

조세연구원, 3가지 지표 분석  
국가채무 급등 가능성 낮아  
IMF도 “위기대응 여력 충분”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조사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낮고, 부채에서 자산을 뺀 순채무가 적고, 경제성장률과 금리 격차를 감안한 재정 건전성도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국제 만기가 짧고 민간 채무가 많은 것은 위험 요인으로 지적됐다.

조세연구원은 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8개국(멕시코 터키 제외)의 재정을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 △순채무 △경제성장률과 금리 격차 등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한 결과 한국의 재정이 가장 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올해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는 GDP 대비 1.0% 흑자로 조사 대상국 중 다섯 번째로 흑자비율이 높았다.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는 경기 변동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과 정부가 보유한 금융자산 및 부채의 이자를 제외하고 계산한 재정

### 주요국 국가채무 비율

(단위: 단위 GDP 대비, %)

	2009년	2015년(추정치)
호주	15.5	20.9
뉴질랜드	26.1	36.1
한국	32.6	26.2
덴마크	47.3	49.8
노르웨이	53.6	53.6
영국	68.2	90.6
독일	72.5	81.5
프랑스	77.4	94.8
미국	83.2	109.7
일본	21.7	250.0

자료: 국제통화기금(IMF)

수지를 말한다. 정부가 보유한 부채에서 자산을 뺀 순채무 비율은 GDP 대비 -29.7%로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건전했다. GDP 대비 순채무 비율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자산이 채무보다 많다는 의미다.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금리 격차는 1.7%포인트로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았다. 경제성장률이 국채 이자율보다 높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급등할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조세연구원은 이상의 세 가지 지표를 합산하면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OECD 회원국 중 1위라고 설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의 재정 건전성을 높게 평가했다. IMF는 이날 주요 국가의 재정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갑작스런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여력을 갖췄다고 밝혔다.

IMF는 “한국은 불시에 닥친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최상의 재정 여력을 갖췄다”며 “모든 상황에 대처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IMF는 한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2009년 32.6%에서 2015년에는 26.1%로 하락, 호주에 이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조세연구원은 그러나 한국의 국채 만기가 짧고 민간 채무 규모가 커 잠재적인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7년 기준 한국의 국채 평균 만기는 4.2년으로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짧았다. 채권의 만기가 짧으면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신용경색이 일어났을 때 채권 차환 발행이 어려워지면서 채무 구조가 악화될 위험이 있다.

조세연구원은 국가채무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보유자산을 늘리고 관리를 강화해 순채무를 낮출 수 수준으로 유지하고, 10년물 20년물 등 장기채 발행을 확대해 국채의 평균 만기를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GDP 대비 국가부채 외에 대외채무 비중과 민간채무 비율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2010-09-08일자)

## “시혜 위주 중소기업 정책 다시 짜야”

### 예산안 · 세계개편안 공청회

“중소기업을 ‘지원’이나 ‘시혜’의 대상으로만 볼 게 아닙니다. 기존 기업에 대한 지원에 상당히 치우쳐 있는 현재 중소기업 정책을 창업과 벤처 등 신규 진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재편해야 한다.”

박정수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소장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1년도 경제 · 재정 운용 방향’ 공청회에서 이런 논지를 폈다.

이날 공청회에선 최근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세계개편안도 도마에 올랐다. 이재은(경제학) 경계대 교수는 “솔직히 별로 논평할 만한 내용이 없는 개편안”이라며 “그저 정기국회에 예산안과 함께 뭔가 세계개편안을 마련해야 하니까 준비한 듯한 인상”이라고 혹평했다.

황성현(경제학) 인천대 교수는 “현재까지 이명박 정부의 조세 · 재정정책의 기본방향은 여전히 감세와 작은 정부”라며 “이와 동시에 친서민-중도 실용을 표방하고 있는데 ‘감세-작은 정부’와 ‘친서민-중도실용’은 근본적으로 양립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 ◆ 중소기업 정책 새로 설계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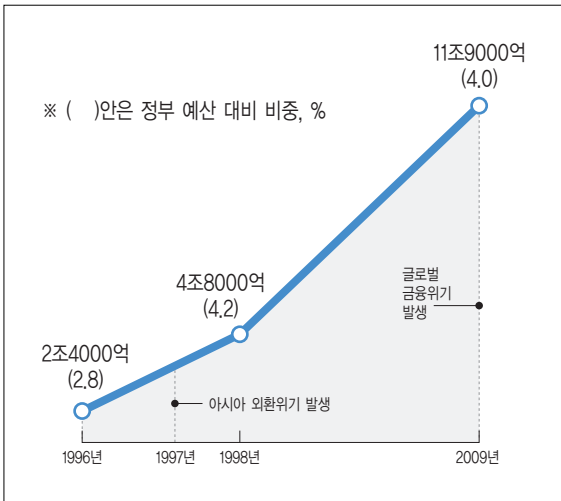
박정수 한국조세연구원 소장은 “기존 중소기업 관련 정책은 중소기업이 경제적 약자라는 인식으로 인해 ‘지원’을 중심으로 정책이 설계돼 왔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 기조는 1998년 외환위기 발생 이후 중소기업 도산이 급증하자 크게 강화됐고, 그 이후 거의 축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1996년 2조4000억원(정부 예산 대비 2.8%) 수준이던 중소기업 지원예산은 1998년 4조8000억원(정부 예산 대비 4.2%)으로 확대된 뒤 규모가 크게 조정되지 못했다. 최근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2009년에는 11조 900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박 소장은 “이런 지원 조치로

중소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둔화됐다”며 “특히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금융 지원이 장기화·거액화되면서 부실기업 퇴출이 지연됐다”고 비판했다. 부실 중소기업이 우량기업의 성장을 막고, 이는 결국 한정된 자원을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박 소장은 “중소기업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는 경제주체로 바라보고 정책을 새롭게 설계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한정된 정부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창업과 벤처 등 신규 진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중소기업 지원예산 급증세

(단위: 원)



자료: 박정수 한국조세연구원 소장

#### ◆ 세계개편안 효과 있을까

최근 발표된 정부의 세계개편안은 ▶일자리 창출 지원 ▶서민·중산층 지원 ▶지속성장 지원 ▶재정건전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종규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이 같은 세계개편안의 정책 효과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우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고 했다. 투자와 고용 증대를 통한 세계 혜택(고용 1인당 1000만~1500만원)이 인력을 채용하고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박 실장은 “결국 이 제도가 없는 경우에도 투자와 고용을 함께 증대시킬 여력이 있는 흑자·성장 기업들에 상당수 조세지원 혜택이 귀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취약 계층에 대한 세제지원 효과도 의문시됐다. 과세미달자 비중이 높아 일용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세제지원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거다. 예를 들어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현행 8%→6%)했지만 실제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 상당수가 환급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중앙일보 2010-09-07일자)

### “세무조사, 부동산 투기억제에 효과”

투기억제책으로 세무조사, 세제강화, 대출규제順 꼽혀

부동산 투기에 대한 세무조사가 아파트 거래 및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27일 분석됐다.

또 국민들도 부동산 투기 억제책으로 세무조사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이 최근 정부에 제출한 ‘부동산 관련 조세행정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투기 세무조사가 1건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의 아파트 매매 가격지수가 100을 기준으로 0.492만큼 하락했다.

또한 부동산투기 세무조사가 1건 늘면 아파트 거래량이 63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세무조사를 강화할수록 아파트 값은 내려가고 거래

량 또한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셈이다.

조세연구원은 이같은 부동산투기 세무조사가 부동산가 격 및 가격상승률이 높은 곳을 대상으로 이뤄져 변수가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이 정책이 본래의 목적인 아파트 투기수요 억제에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조세연구원은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투기에 대해 일관성 있게 효율적인 세무감시시스템을 구축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6개 시도별 경제활동인구 및 실업자 2천2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투기 세무조사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 76%가 부동산투기 수요 억제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2%는 가격 급등지역의 아파트 취득자 중 다주택 보유자 및 자금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자 등 세금누락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동의했다.

또 아파트의 부당 취득 또는 반복적 취득 등 세금누락 혐의자 세무조사에 대해 응답자의 93.99%가 찬성했으며, 부동산투기 조장 혐의가 있는 부동산중개업소 세무조사에 대해 응답자의 94%가 동의했다.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은 세무조사 실시(21.6%),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20.3%), 대출억제 등 금융규제(18.2%), 분양가 인하정책 등 거래 규제(14.1%), 부동산 공급 확대(13.0%) 순으로 꼽혔다.

조세연구원은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부동산 투기 지정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조세 및 금융 수단을 통한 규제와 더불어 조세행정 측면에서도 보통의 경우보다 많은 개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10-08-27일자)

[시론]

‘세금 피난민’ 만든 유럽의 부유세

노영훈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또다시 정치권 일각에서 부유세(富裕稅)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부자(富者)가 되고 싶기도 하고, 부자가 밋게도 보이는 것은 인간의 본성일까? 속성으로 부자가 되는 비법을 알려준다는 책들이 서점가에 넘쳐나지만 동시에 ‘부자에게 세금을’이라는 구호도 언제 어디서나 환영받는 다.

남이 많이 낸 세금이 나를 위해 쓰이는 조세 정책을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게다가 떼뺏기지 못한 부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부유세라는 세금이 매력적인 이유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부유세라는 이름 때문인지 이에 대해 큰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유럽에서 부유세를 시행했던 나라들은 부유세를 ‘부자 때려잡는 세금’으로 도입하지 않았다. 다양한 경제 활동과 재산 보유, 복잡한 소득 체계 등으로 아무리 누진세율을 높인다 하더라도 소득세나 재산세만으로는 제대로 된 과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완책으로 만들어진 과세 방안이다. 부자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도록 하는 것이지, 부자니까 무조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부유세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큰 부자들에게만 과세되지 않았다. 유럽 내 부유세 부과국들의 경우, 4인가족 평균가구 소득보다 그리 높지 않은 모든 소득계층 가구들을 대상으로 과세했다.

저축예금·주식 등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자동차 등도 포함시켜 총자산가액을 계산한 후 관련된 부채액을 뺀 순자산액에 대해 1% 이하의 낮은 세율로 매년 자진 신고 납부토록 했다.

유럽의 부유세는 실제 시행 과정에서 더 큰 불공평을 낳기도 했다. 스웨덴 H&M 백화점 재벌가(家)의 사례가 대

표적이다. 큰 부자들에게 대해서는 외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는 조건으로 부유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특혜를 줘서 부유세가 세금 불공평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기도 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파리 집값이 올라 집 한 채 달랑 가져도 부유세가 과세되는 반면, 까르푸(Carrefour)나 오상(Auchan) 같은 대형 슈퍼마켓을 소유한 가문(家門)들은 세금을 피해 벨기에로 '세금 피난민(fiscal refugees)'으로 떠나 버렸다. 프랑스 정부는 이들을 다시 불러오기 위해 고심했다. "다시 프랑스로 이사를 오면 조세를 사면한다"는 등의 소식이 프랑스 신문을 장식하기도 했다.

통합된 유럽에서는 역내(域內) 자본이동이 용이해 이런 '세금 피난민'이 더 늘어났다. 오스트리아·네덜란드·덴마크·아일랜드·독일 등이 1990년대 중반 부유세를 폐지했고, 현재 프랑스·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스위스 정도가 유지하고 있다.

부유세를 도입 운영했던 나라들은 기존 조세체계를 그냥 놔두고 부유세만 추가로 만든 것도 아니다. 부유세를 도입한 국가들은 소득세·지방재산세·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의 세(稅)부담을 조정하고 보완하는 개정 작업을 동시에 추진했다.

조세 제도를 바꾸려면 전반적이고 심층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 가장 적절한 과세 시스템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기존의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을 모두 손질하는 조세 개혁의 일환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런 계획 없이 단순히 "부자니까 세금을 더 내도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것은 큰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

(조선일보 2010-08-24일자)

## 고향세 지방재정 확충 도움 안돼

조세연구원 검토 결과.... 논란만 많고 효과는 적어

한나라당이 마음먹고 내놓았던 고향세(故鄉稅). 그러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환영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하순, 한나라당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주민세의 최대 30%까지 본인의 고향 등 5년 이상 거주한 곳에 분할해 낼 수 있는 '고향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07년 대선 때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고향세를 자신의 대선 공약으로 내놓기도 했다. 일본의 경우 이미 2008년 '고향납세제'가 도입됐다. 출신지나 원하는 곳에 5,000엔 이상을 기부하면 소득세나 주민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조세연구원이 검토에 나섰다. 결론은 지방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으나 실질적인 지방재원을 늘리는 효과는 적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르면 고향세 도입으로 세금의 분할과 지방자치 원칙이 충돌할 수 있다. 즉 거주하지 않는 지자체에 과세권을 인정하면 고향세를 선택하는 사람이 체납할 경우 징수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중앙정부가 지자체 고유 권한인 주민세 과세권에 대해 입법을 통해 다른 지방에 재원을 배분하려는 것도 가능한지 의심스럽다.

또 고향세처럼 납세자의 의사에 따라 조세를 납부하는 곳을 임의로 선택하게 하는 구조는 상제성을 본질로 하는 조세와 모순된다. 주민세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지자체에 납세할 경우 고향세를 선택한 사람과 주소지의 지자체에 전액 납세한 사람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특히 특정 지역의 조세가 다른 지역의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 원칙과 상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중앙일보 2010-08-23일자)

# 재정포럼

2010년 9월호 통권 제171호

-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발행인 /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김승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김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원종학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전병힐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조명환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허경선 (한국조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장)  
최윤용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원)

## ■ 월간 재정포럼

2010년 9월 15일 발행 / 제15권 제9호(통권 제171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송파라00035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죽말길 28  
TEL : 02)2186-2130 · 3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선 디자인 02)2269-2234
- 인쇄 / 고려문화사 02)2277-1509

##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시 두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해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 (02)2186-2133
- FAX : (02)2186-2139
- E-mail : pub@kipf.re.kr
- 주소 :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죽말길 28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

###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 441-05-000011  
· 예금주 : 한국조세연구원